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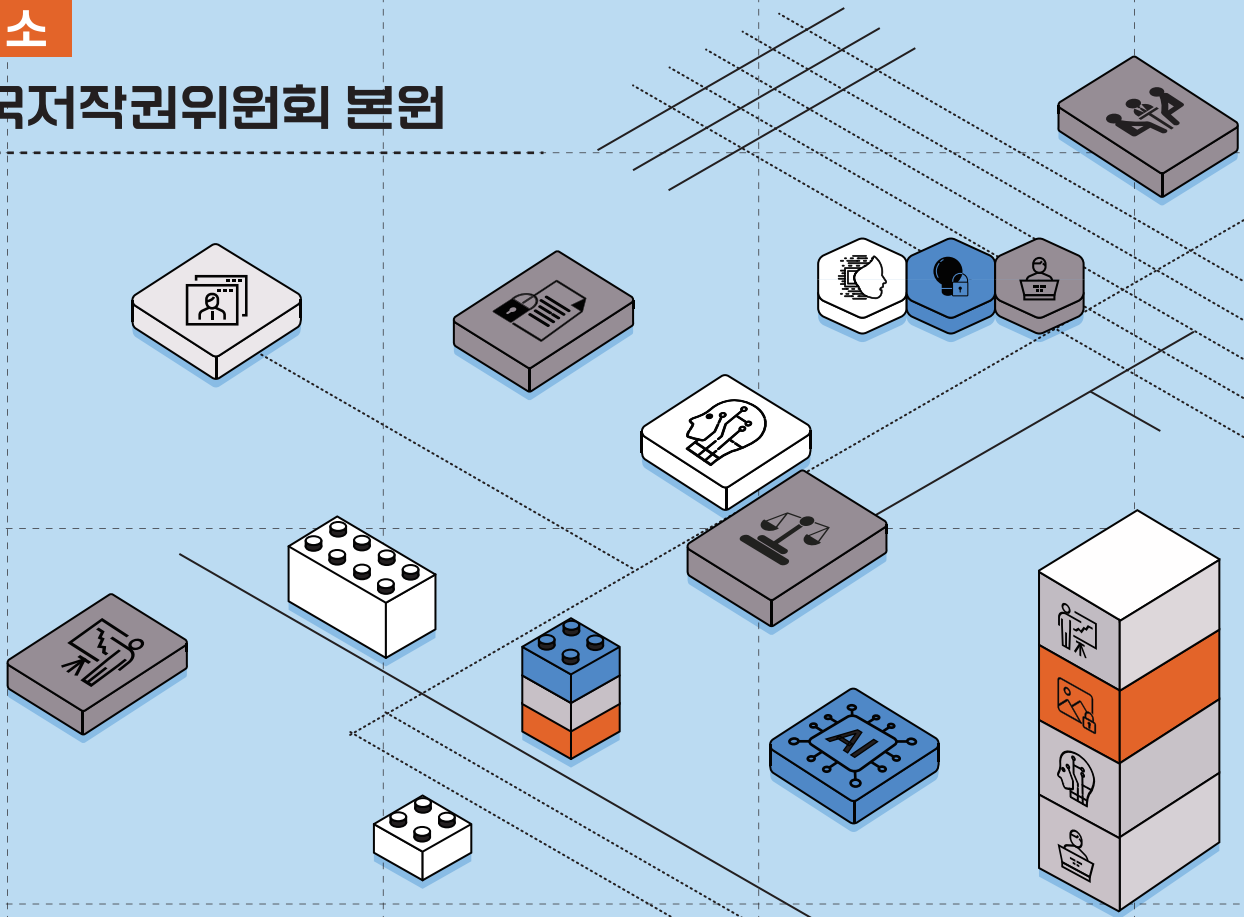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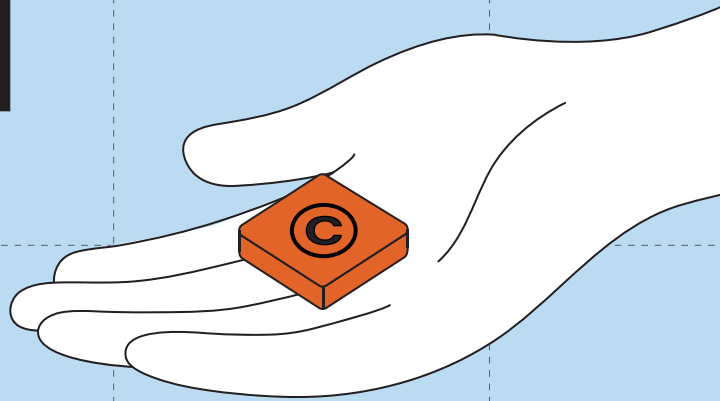
일자

2026

8.27.목 - 8.28.금

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PROGRAM

개요

◇일 자 : 2026년 8월 27일(목) ~ 8월 28일(금)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 본원 6층 대강당(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세부 일정

[1일차] 8월 27일 (목)	14:00-14:20	개회사 : 강석원 위원장(한국저작권위원회)
		축사 : 최영진 저작권정책관(문화체육관광부)
		기념촬영
	14:20-14:30	AI 영상 및 음악 제작 시연
	14:30-14:50	기조연설 : 박성호 명예교수(한양대학교)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14:50-16:10	◆지정 토론 [좌장]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16:10-16:30	중간 휴식
[2일차] 8월 28일 (금)	16:30-17:40	종합 토론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09:30-10:50	◆지정 토론 [좌장] 홍승기 변호사 · 초빙교수(인하대학교)
	10:50-11:10	중간 휴식
	11:10-12:20	종합 토론

CONTENTS

[제1주제]

A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좌장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토론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김광남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형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호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박유선 교수(강원대학교)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이유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이일호 연구교수(연세대학교)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좌장

홍승기 변호사 · 초빙교수(인하대학교)

토론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신재호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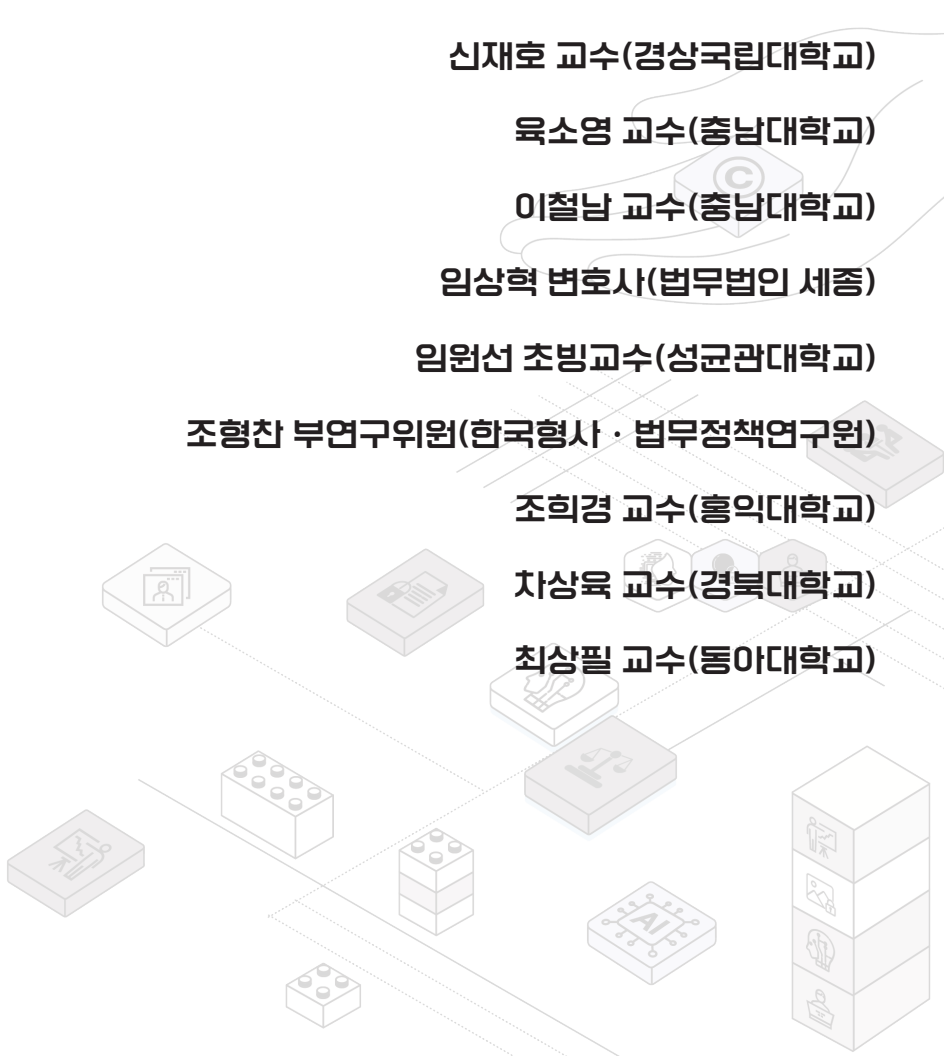
임원선 초빙교수(성균관대학교)

조형찬 부연구위원(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조희경 교수(홍익대학교)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최상필 교수(동아대학교)



기조연설

**AX 시대에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

박성호 명예교수(한양대학교)

I. 처음에

2026년 저작권 법학자 대회的主題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AI 전환 시대에 저작권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이다. 둘째는 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이다. 모두 크고 무거운 주제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주제에서 논의의 단서(端緒),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기로 하였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창작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기존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쌍다음표 속 문장은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운영사무국이 첫째 주제와 관련하여 보낸 사전 질의서 내용의 일부이다. AI가 창작의 도구, 그것도 보편적 도구가 되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AI는 창작의 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둘째 주제인 전문 인력 양성 문제는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이라는 관점을 추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AX 시대 저작권에 관한 법규범 담론 전개의 바람직한 방향

1. 논의의 단서

AI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¹⁾ ‘창작’이란 무엇이고 ‘도구’란 무엇인가? 더구나 ‘창작의 도구’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종 사전에서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 법학에서 그간 논의되어온 ‘창작’과 창작의 ‘도구’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비교·법제사적 방법론의 관점에서²⁾ 저작권법에서 창작성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그 변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창작성이란 무엇인가? — 과학기술 발전이 저작권법의 창작성 개념의 등장과 그 변천/변화에 미치는 영향

1839년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화가들은 당혹하였다. 인간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피사체 이미지가 기록매체에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그 이미지가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창작적 역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연히 ‘사진으로 재현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의 이미지 재현 과정을 분석·연구하는 가운데 점차 사진 기술의 기계적·객관적 측면보다는 인간이 사진 기술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촬영자)의 창작적 역할이 부각되었고 카메라는 창작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인식되었다.

1) AI 미래에 관한 통찰을 보여주는 글로는, 홍성욱,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 제국주의 팽창 다툼은 끝...AI 미래, 우리 선택은?”[홍성욱의 과학기술과 사회·연재(1)], 『문화일보』 2026. 6. 5., 21면. AI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책으로는, 김명철/곽승우, 『AI의 과거, 현재,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참조.

2)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비교법적·比較法制史的 해석방법론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III. 2.에서 후술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에 나타난 것을 말한다.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된 것 또는 저작자의 지적 활동의 성과라고 창작성을 정의하기도 한다.³⁾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작권법의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남의 것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일 필요가 없다.⁴⁾ 객관적으로 남의 것과 다른 것은 독창성을,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은 신규성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에 표현되어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한다.⁵⁾ 이를 공식(formula)으로 만들면 “저작권법의 창작성 = 독자적 작성(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음) + 최소한의 창작성(개성의 표현)”이 된다. 우리 판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공식은 국내 여러 문헌에서도 언급하듯이 1991년 미국 Feist 판결⁶⁾의 영향일 것이다. 유의할 점은 Feist 판결은 전화번호부라는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저작물과 관련된 사건이기에 최소한의 창작(창조)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문학·음악·미술저작물과 같은 전통적 예술작품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성하면 개성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경우는 새삼스럽게 최소한의 창작성(개성의 표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⁷⁾

그런데 저작권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저작자 개성의 표현, 즉 창작성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사진으로 재현된 이미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면서부터이다. 이전에도 창작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문학·음악·미술저작물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작품은 창작성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조건이었기에 따질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사진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진저작물은 그렇지 않다. 우리 판례도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한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① 촬영대상, ② 촬영방법, ③ 현상 및 인화라는 세 가지 표현 요소별로 창작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다.⁸⁾

사진의 창작성에 관한 세부 판단요소는 비교·법제사적 관점에서도 확인된다. 1860년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진으로 재현된 이미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면에서 창작성 개념이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새삼’ 호명(呼名)되었다. 인간이 사진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 즉 ① 피사체를 선정하여 ② 촬영 방법을 선택하고 ③ 현상·인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⁹⁾

3) 유럽에서도 창작성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지적 자질(intellectual qualities)이 발휘된 것(exercised)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창작성을 ‘(정신적) 노동, 기술 또는 노력(labour, skill or effort)’이 발휘된 것으로, 유럽연합에서는 저작자의 ‘지적 성과(intellectual creation)’로 이해한다. L. Bently/B. Sherman/D. Gangjee/P. Johnson, Intellectual Property Law,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p.100.

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6) Feist Publication,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

7)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39, 41면 각 참조.

8)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9) 예컨대, 프랑스 혁명기에 제정된 1793년 저작권법은 그 조문 속에 당연히 사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기술 등장 이후 1860년대에 이르러 조문의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해석상 사진의 보호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간에 판단이 나뉘었다. 그래서 1862년 11월 프랑스 파기원은 1856년 촬영된 카보우르 백작 초상사진 사건에서 피사체의 포즈나 배경, 빛과 그림자의 정도 등 촬영자의 선택으로

사진에 저작자의 개성이 부여되었다고 실시하여 해당 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다니엘 지라르탱/크리스티앙 피르케르 지음, 정진국 옮김,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 미메시스, 2011, 28~31면. 오스카 와일드 초상사진 사건(1882년)보다 20년 앞선 것일 뿐만 아니라 오스카 와일드 초상사진의 창작성에 관한 세부 판단요소가 카보우르 백작 초상사진 사건에서도 거의 전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사진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862년 영국 미술저작권법(Fine Arts Copyright Act)이 처음이다. 1862년 미술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original 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법의 보호대상은 “창작성 있는 회화, 드로잉, 사진(original painting, drawing and photograph)”이었는데, 특히 사진을 둘러싼 논쟁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는 요건의 등장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입력(인간의 지시)으로 생성된 AI 산출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도 ‘창작성’ 요건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프롬프트 입력으로 생성한 AI 산출물은, 인간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재현한 이미지와 관련 지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¹¹⁾ 여기서 한 발 나아가 AI 산출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기술과 결합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학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관점에서 AI 기술을 다루는 ‘인간 행위자’와 AI 기술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연결된 집합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법적 쟁점으로 부각된 창작성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해석해 보자는 것이다.¹²⁾ 저작권법에서 창작성 개념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2022년 11월 생성형 AI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도, 고성능 창작 프로그램¹³⁾의 등장으로 창작 환경이 변화한 것에 주목하여 논의된 바 있다.¹⁴⁾ 예를 들면, 디지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빠른 처리 능력과 높은 그래픽 성능을 갖춘 컴퓨터와 포토샵,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 같은 편집 프로그램이 없이는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 이처럼 구체적 표현에 있어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흐름을 고려할 때 인간중심의 창작성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¹⁵⁾

문제는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법률 체계는 인간중심주의 법학을 토대로 한다는 점이다.¹⁶⁾ 현행 법률 체계 아래에서는 ‘창작’이라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것, 즉 ‘AI 기계’를 ‘창작’ 행위의 주체로 상정(想定)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인간을 그 행위주체로 하여 형성된 창작성 개념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는 법률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다.¹⁷⁾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그에 관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인간의 창작 도구로서 AI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 윤권순, “사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초기 담론: 영국 미술저작권법(1862)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통권 제14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가호, 126면.

11) 예컨대, 임원선, “챗지피티가 생성한 자료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도서관이야기』 통권 제165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3. 5/6., 33면; 박성호, “카메라 ‘셔터’ 누르기, 혹은 AI ‘프롬프트’에 텍스트 입력하기[박성호의 지재공방-연재(16)]”, 『법률신문』 2023. 3. 23.자.

12) 홍성욱/조은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도전과 문제들: 과학기술학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와이론』 통권 제46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11., 24~25, 29, 36~37면 각 참조.

13) 신재호 교수는 아래 각주 논문 305면에서,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로직 프로(Logix Pro), 큐베이스(Cubase) 등, 웹툰 작가나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포토샵(Photoshop) 등의 프로그램을 고성능 창작 프로그램의 예로 든다.

14) 신재호,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산업재산권』 제54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12., 305면 이하 참조.

15) 위의 논문, 308~310, 332면.

16) 현대 인간중심주의 법학은 로마법의 유산에 기초하고 있다. 로마법은 로마 시민법(ius civile)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외국인과 속방 주민들을 위해 만민법(ius gentium)이 만들어졌다. 두 법이 융합하여 서구 법체계의 공통기원이 되었다. 그런데 서구 법체계가 전제로 하는 ‘평균적 인간’이나 ‘합리적 인간’은 백인 남성 기독교인을 가리켰다. 비법학, 페미니즘 법학이 대두된 배경이다. 형식적이거나 성별과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아직 채 백 년도 지나지 않았다.

17) 물론 인간이 자연 세계와 별개이며 그보다 우월하다는 ‘인간중심주의 법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기되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 안드레아스 뵘/안드레아스 자이들러 지음, 이상훈/황승환 옮김, 『매체의 역사 읽기』, 문학과지성사, 2020, 164면.

3. AI는 창작의 도구인가? — 카메라 등 다른 창작 도구와의 비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법의 역사에서 사진은 기술에 근거를 둔 최초의 이미지 매체이다. 그 이전의 모든 이미지 제작 방식은 기술적인 보조 수단의 도움을 받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였다.¹⁸⁾ 예를 들면, 미술의 역사는 물감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물감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15세기에 발명된 유화 물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물감이 존재하더라도 창작의 주체로서 이미지를 모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은 화가 자신이다.

그런데 사진기의 경우는 기계를 통해 정지해 있는 이미지를 모사하거나 재현한다. 더구나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는 최초의 매체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상황으로 인해 사진이 예술인지 아니면 기술인지 하는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바꿔 말해 사진사는 카메라를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가인지 아니면 카메라라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술자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¹⁹⁾ 예술 영역과 법률 분야에서의 논의가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²⁰⁾ 저작권법 차원에서의 결말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AI는 인간의 창작을 도와주는 도구인가? AI가 등장하기 이전의 컴퓨터는 카메라나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창작의 도구로서 인간이 작동시켜야만 비로소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작동이 되면 지시한 대로만 수행할 수 있다.²¹⁾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로직 프로(Logic Pro), 큐베이스(Cubase) 등의 작곡 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웹툰 작가나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포토샵(Photoshop)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창작의 도구라고 보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이러한 창작 도구들을 활용하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이라는 문턱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해당 분야의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물리적 문턱이 크게 낮아져서 보다 쉽게 창작을 할 수 있다. 아마추어 화가가 AI의 도움을 받아(AI-assisted) 자신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손쉽게 창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의 AI는 창작의 도구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창작성 문턱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물리적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프롬프트에 무언가를 입력하면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generated autonomously by AI)' 산출물에 대해서도 AI를 창작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예컨대,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AI의 경우이다.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상업용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척 복잡하고 긴 프롬프트를 만들어 넣어야 한다. 이런 프롬프트 외에도 미드저니 커뮤니티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프롬프트 변환자(modifier)를 얻고 배워야 한다.

19) 위의 책, 163~164면.

20) 모든 예술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역(逆)도 마찬가지이다.

21) 최경수 옮김,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CONTU)」,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101면. 미국에서 1978년 발행한 CONTU의 최종보고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저작물' 등에 관한 연구 성과물이다.

그 밖에도 이미지 생성을 도와주고 생성된 이미지를 변형하는 여러 창작의 도구²²⁾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CLIP 같은 머신러닝의 기초를 알면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²³⁾ 이러한 작업은 붓을 가지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회화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디자인 작업과 매우 다르다.²⁴⁾ 더구나 AI 성능 향상으로 복잡한 조건문과 기법을 나열하던 프롬프트 입력 방식이 점차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해,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2년 9월 이루어진 저작권 등록을 취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인간이 직접 쓴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을 선택·배열(편집)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미 저작권청은 위 결정에서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입력(지시)한 이용자는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지시)은 미드저니가 생성하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지시가 특정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는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충분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특정한 이미지의 편집방법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이미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지만, 미드저니 이용자는 최초 및 최종 이미지에 대해 그와 같은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²⁶⁾

정리하면, 인간의 창작을 AI가 도와주는(AI-assisted) 경우는 창작의 도구에 해당하지만, 인간의 프롬프트 입력(지시)으로 AI가 생성하는(AI-generated) 경우, 즉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하는(generated autonomously by AI) 경우는 창작의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²⁷⁾ 결국 창작의 도구인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AI 산출물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AI 산출물의 권리귀속을 둘러싼 쟁점

가. ‘저작자의 인정’ 기준 — ‘창작 의도’ vs ‘창작적 기여’

인간이 AI를 창작 도구로 이용한 경우 AI 산출물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해당 산출물의 저작자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AI 산출물의 권리귀속을 둘러싼 쟁점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저작자의 인정’ 문제로 수렴된다. ‘저작자의 인정’이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22) 예컨대, 아트브리더(Artbreeder), 나이트카페(NightCafe), 폴리네이션(Pollination), 카오스비전(Visions of Chaos), 스타리 아트(Starry Art) 같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23) Jonas Oppenlaender, “The Creativity of Text-to-image Generation”, 25th International Academic Mindtrek conference (Academic Mindtrek 2022), November 16–18, 2022, Tampere, Finland. <<https://dl.acm.org/doi/pdf/10.1145/3569219.3569352>>

24) 홍성욱/조은서, 앞의 논문, 37면.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텍스트-이미지 변환 AI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작가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위의 논문, 37면).

25) 손희용, “[미국]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저작권 동향』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 22. 참조.

26) U.S. Copyright Office, “Re: Zarya of the Dawn (Registration # VAU001480196)”, Feb. 21, 2023, pp.8~9.

27) WIPO/IP/AI/2/GE/20/1 REV., “Revised Issues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ay 21. 2020, p.4 para.12.

(1)창작의 동인(motif) 제공, (2)창작의 보조, (3)감수·교열, (4)저작물 창작의 위탁, (5)계약에 의한 저작자 지위 부여 등이다.²⁸⁾

인간이 AI를 창작 도구로 이용한 경우 AI는 '(2)창작의 보조'에 해당한다. 창작을 보조하는 전형적인 예는 학자가 논문을 쓸 때 관련 자료를 검색해 주는 사람, 원고지로 작성된 논문을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사람이다. 조금 어려운 예로는 조각가가 진흙으로 모형을 빚어 주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돌을 깨 조각을 완성하는 석수(石手)가 창작의 보조자이다. 석수는 조각가의 수족(手足)에 불과하다.²⁹⁾

창작행위는 인간이 정신적·신체적 활동으로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민법상의 사실행위이다. 민법상 사실행위라 함은 법률이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사실적인 결과에 향하여진 행위이다. 창작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의 목적적 의욕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여기서 법률효과란 바로 저작권의 발생이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인간만이³⁰⁾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창작행위의 핵심은 '행위자의 의사'나 '행위자의 목적적 의욕'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활동의 '결과', 즉 창작행위의 '결과'이다. 그러한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 낸 인간이 저작자로 인정받는다. 판례도 '저작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³¹⁾

정리하면, AI 산출물에 대해 누가 저작자인지를 정하는 '저작자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의사'나 '행위자의 목적적 의욕'('창작 의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판례가 실시하였듯이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대한 기여'('창작적 기여')이다.

따라서 AI 산출물에 대해서 인간을 그 저작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작 의도'가 아닌 '창작적 기여'를 핵심 기준으로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³²⁾ 결국 AI가 창작 도구로서 생성한 산출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산출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앞서 본 '저작자의 인정'이 다루어지는 쟁점 중에서 AI가 '(2)창작의 보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저작자의 인정'이 다루어지는 쟁점 중에서, 마치 인간이 AI에게 '(4)저작물의 창작을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로인 경우이다.³³⁾

28) 예컨대, 박성호, 앞의 책, 194~197면 참조.

29) 예컨대, 이문열의 단편소설 "김씨의 개인전"('세계의 문학' 통권 제101호, 2001 가을호)에 등장하는

조각가 '황 선생'은 진흙으로 모형을 빚은 창작자이고 그 모형에 따라 돌을 깨뜨리는 석수장이 '김씨'가 바로 창작의 보조자이다. 김씨는 황 선생의 수족에 불과하다.

30) 물론 우리 저작권법상 그에 관한 유일한 예외가 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이다.

3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시간강사인 A는 대학 전임교수인 B에게서 공저 집필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단독 저서로 출간할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A가 작성한 단독 저서 편집 원고 중 제3장에 B가 임의로 학습 단위 하나를 추가한 다음 A 물래 공저로 출간하였다. 이에 A는 저작권 침해로 B를 고소하였고 B는 공저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B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AI가 창작 도구로서 생성한 산출물 vs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AI가 창작 도구로서 생성한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인간이 저작자가 된다. 그러나 인간이 프롬프트에 무언가를 입력(지시)하여 생성된 AI 산출물, 즉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산출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산출물의 저작자로 인간(또는 법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아래와 같다.

첫째,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 산출물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또는 편집·배열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³⁴⁾ 예컨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영화 'AI 수로부인' 중에서 AI 산출물(이미지)들을 소재로 선택·배열 등을 한 부분에 대해 편집저작물 등록을 인정한 바 있다.³⁵⁾

둘째, 2024년 3월 15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가 발표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견해>는 ① 인간의 지시·입력의 분량·내용, ② 생성의 시행 횟수, 즉 산출물을 확인하여 지시·입력을 수정하면서 시행을 되풀이하였는지, ③ 여러 개의 산출물에서 선택을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간이 AI 산출물에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필·수정을 가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한다.³⁶⁾

셋째, 2025년 1월 29일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저작권과 AI, 제2부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은 AI를 도구로 이용(assistive uses)한 경우는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단순 프롬프트는 물론이고 세부적인 프롬프트의 경우라도 그 프롬프트 자체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I 산출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³⁷⁾ 그러나 AI에 표현적 입력(expressive inputs)을 한 경우, 즉 인간이 저작권 보호대상인 자신의 이미지 작품을 입력하여 AI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적 요소가 명확히 반영된 경우,³⁸⁾ 또는 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적으로 선택(selection)·조정(coordination)·배열(arrangement)하거나 수정(modification)한 경우처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³⁹⁾

32)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판단('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또는 '창작성')할 때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예컨대, 박성호, 앞의 책, 32면), 저작물성은 저작자 인정 여부 문제에 수렴되는 쟁점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작자 인정' 기준 문제로 다루었다.

33) 인간이 AI에게 '저작물의 창작을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양새가 만들어졌기에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에 대해서까지 'AI가 창작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전문가들로서는 삼가야 할 표현이다.

3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12., 40면.

35)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 설명자료(2024. 1. 11.) 참조.

36)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견해」, 2024. 3., 40면.

37)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AI, 제2부 저작물성(copyrightability)」, 2025. 1., 12~22면.

38) 위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22~24면.

39) 위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24~27면.

정리하면, 인간이 프롬프트에 무언가를 입력하여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 아니고, 따라서 당연히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 창작적 이미지 등을 입력(표현적 입력)하였거나 AI 산출물에 수정이나 배열을 한 경우처럼 그 산출물 자체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반영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보고서들 중 특히 일본의 경우는 서술 내용이 조금 다른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거의 같아 큰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이해된다.⁴⁰⁾ 결국 생성형 AI 프롬프트에 인간이 무언가를 입력(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중국 판결이다. 2023년 11월 27일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생성형 AI가 산출한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AI 이용자가 저작자라는 판결을 내렸다.⁴¹⁾ 이 사건에서 법원은 AI가 산출한 이미지⁴²⁾는 원고(AI 서비스 이용자)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하여 프롬프트와 매개변수를 입력 및 조정하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생성한 미술저작물로서, 원고가 AI를 이용하여 해당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원고의 선택과 배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간에 의한 독창적인 지적 성과로서 원고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여 창작하는 과정'으로 평가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⁴³⁾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판결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고 한다.⁴⁴⁾ 국내 학설 중에는 비교적 유연하게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라는 관점에서는 의문을 표하는 견해,⁴⁵⁾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⁴⁶⁾ 등이 있다. 한편,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간에 AI 프롬프트 입력에 관한 관점 차이를 비교하면서, 미국 저작권청은 AI 산출물의 우연성·무작위성·불확정성에 주목하여 인간 이용자의 행위를 AI 기술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한 단계 낮추어 평가한 것이라면, 중국 법원은 인간 이용자의 행위를 중심에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⁴⁷⁾

40) 일본 보고서는 ① 인간의 지시·입력의 분량·내용, ② 생성의 시행 횟수, 즉 산출물을 확인하여 지시·입력을 수정하면서 시행을 되풀이하였는지, ③ 여러 개의 산출물에서 선택을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에만 주목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인간의 AI 프롬프트에의 입력만으로도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실제 ②에 대해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세한 지시는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일본 보고서는 설명한다. 일본 학설은 ①과 관련하여 지시·입력한 내용이 창작적 기여인지를 판단할 때 지시·입력이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산출물이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가 영향을 준다면, AI에 이미지를 입력할 때 색보정이나 임팩트 등을 지시한 결과 수정된 이미지가 산출되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奥邨弘司/金子敏哉 編, 『概説 デジタル/インターネットと著作権法』, 弘文堂, 2025, 26~27면 참조). 미국 보고서의 '표현적 입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②③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대목에 방점을 찍으면 ②은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프롬프트 입력을 둘러싼 국내 학설 논의가 다양한 것처럼(이에 관해서는, 각주(47)의 논문, 96~102면 참조) 일본 학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에 관해서는, 奥邨弘司/金子敏哉 編, 위의 책, 27~29면 참조).

41) 北京互联网法院(2023)京0491民初11279号 民事判决.

42) 이 사건 이미지의 명칭은 '봄바람에 부드러움이 전해져 왔다'/'봄바람이 불러온 부드러움'(春风送来了温柔)이다.

43) 베이징 인터넷법원 판결에 관한 상세는, 황선영,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과 저작권 쟁점 검토—北京互联网法院(2023)京0491民初11279号(Li v. Liu)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7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4, 240~245면; 손한기, "중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 고찰—중국 베이징,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관련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1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372~377면 각 참조. 법원은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해 원고가 창작자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원·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다(손한기, 위의 논문, 377면).

44) 손한기, 위의 논문, 377면.

45) 황선영, 위의 논문, 246면

5. 소결 — AX 시대 저작권 제도의 역할은?

AX 시대에 저작권 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선부른 법정책학적 논의를 전개하여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희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법상 사실행위(Realakt)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저작권법상 창작행위의 본질에 대하여 천착(穿鑿)할 필요가 있다.(밑줄은 필자, 이하 본문과 각주에서 같다)⁴⁶⁾ 민법상 사실행위는 법률행위와 준별(峻別)되는 것이다. 사실행위로서의 창작행위라는 것은 인간이 저작물을 구성하는 창작요소들을 최종적으로 결정(또는 통제)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창작자와 그가 작성한 저작물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연성이 개입할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 창작자의 통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성형 AI 산출물의 경우는 우연성의 개입 정도가 매우 높아 프롬프트에 입력(지시)하는 인간이 산출물의 구체적 표현을 통제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현대 예술에서도 발견된다.⁴⁹⁾ 현대 예술작품과 생성형 AI 산출물과의 차이점은 현대 예술의 경우는 우연적 메커니즘을 예술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에 반해 AI 산출물은 그 생성과정이 블랙박스화되어 있으며, 이는 심층학습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우연성의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 예술작품을 저작권법상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⁵⁰⁾

한편,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물론 지적재산권법상 창작성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AI 기술 발전 환경 아래에서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개념과 특허법상의 그것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사실행위로서의 창작행위에는, 저작권법상 창작행위와 특허법상 발명행위가 포함된다.⁵¹⁾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과 특허권의 보호방법상의 특징에 대해서 양자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에 대응하여 특허법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으로⁵²⁾ 구분되어 논의된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성 표현'임에 대하여 특허권은 '창작성 있는 기술적 사상'이다.⁵³⁾

46) 손한기, 위의 논문, 377~378면. 손한기 교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3조 제1항은 “저작권법상 창작이란 문학·예술·과학 저작물을 직접 산출하는 지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산출’이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작물에 해당하는 표현적 요소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표현적 요소를 인간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AI가 산출한 이미지에 대해 인간은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 견해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견해는 중국 화동정법대학 왕첸[王遷/王迁] 교수의 논문(“再论人工智能生成的内容在著作权法中的定性”, 政法论坛, 2023年第4期)을 인용한 것이다. 왕첸 교수의 논문은 일본어로도 번역 발표되었다. 王遷 著/島並良 監訳, “人工知能生成物の著作権法上の性質”, 『神戸法学雑誌』第76卷 第1号, 神戸法学会, 2026. 6., 221~292면 참조.

47) 류시원,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계간 저작권』 통권 제14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겨울호, 78~79면. 류시원 교수는 표현 요소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담긴 프롬프트의 반복적 입력의 경우 창작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론의 장점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의 문제, 입력단계의 문제가 불투명한 가운데 출력단계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는 것의 위험성, 프롬프트 입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획일적 보호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에 비해 부작용이 덜한 행위규제방식 입법에 따른 잠정적 보호방법을 제시한다(위의 논문, 102~104면).

48) 이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법학회 공동주최 2026 학술세미나(주제: 저작권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창작성’을 중심으로—) 자료집(2026. 5. 22.) 참조. 위 학술세미나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하나?”(1주제)(이일호 교수); “현대미술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개념적 미술을 중심으로”(2주제)(정수영 변호사); “건축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3주제)(조성광 변리사); “AI 창작환경과 창작성의 미래”(4주제)(권순재 변호사)가 발표되었다. 특히 제4주제 발제문에서는, 개별 인간의 생성에 대한 기여들이 AI의 최종 생성물의 선택 시점에 모두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총합(總合)이 되고, 이것이 창작에 대한 기여로 증폭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 기여의 총합이 AI 산출 자체가 다른 AI 산출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게 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미래의 창작성 요건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권순재, 위 발제문, 143면).

그래서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와 달리 특허법상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⁵⁴⁾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성 표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감(鳥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창작성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인간의 ‘창작성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법 간의 차이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측형 AI 모델 개발자는 노벨과학상을 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화학 분야에서 甲이라는 연구자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실험 데이터 등이 제시된 실험예가 없어서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그런데 乙이라는 연구자가 해당 분야 실험 데이터 등을 예측하는 AI를 개발·출시하였다. 甲은 이 예측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실험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해당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발명의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한 甲, 그리고 실험 데이터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예측형 AI를 개발한 乙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하는 본질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로 든 사례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 존 점퍼(John Jumper)를 참조한 것이다.⁵⁵⁾ 데이비드 베이커는 컴퓨터를 이용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한 학자이다. 데미스 허사비스와 존 점퍼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2(AlphaFold2)’를 개발하여 5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단백질 구조 파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AI 모델 개발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이유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형 AI 모델인 ‘알파폴드2’를 개발하여 단백질 구조 파악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49) ‘새벽의 자리야’ 저작권 등록 취소 결정 이후 등록신청인 측 변호사는 화가 잭슨 폴록이 우연성에 기대어 페인트를 흠뿌리는 작품활동을 한 것, 음악가 존 케이지가 우연하게 발생한 관객 소음을 이용한 작품 ‘4분 33초’ 등을 예로 들면서 AI 산출물에 대해 AI 이용자의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창작물임 부정한 미 저작권청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50) 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저작권법과 예술철학/미학 간의 점점 모색—스타일 모방으로 인한 저작권 등 침해 문제—”, 한국저작권법학회 4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25.11.28.), 100면 이하.

51) 민법상 순수사실행위에는 저작권법상의 창작과 특허법상의 발명이 포함된다는 설명으로는,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II)』, 박영사, 1992, 155면(송덕수 집필부분);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수정판, 박영사, 2004, 142면 각 참조.

52) 특허법 제29조 제1·2항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란 법률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학계 및 재판 실무에서 널리 통용(通用)되는 학술용어이다.

53) 과학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과 문화예술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1) 저작권의 보호방법상의 특징(① 무방식주의 vs 방식주의, ② 표현 보호 vs 아이디어 보호, ③ 상대적 창작성 vs 절대적 창작성), (2) 저작권의 인권으로서의 특징, (3) 저작권의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특징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저작권과 문화예술정책의 합리적인 거버넌스 정립 방안”, 2026 한국법정책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2026. 3. 27.) 참조.

54)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등 참조.

55) 노벨상 수상자 선정과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결정은 그 선정/결정의 논리구조가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한국연구재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 화학상과 노벨 생리의학상 논문들은 대부분 특허와 직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일응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은 소위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시급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한 보호가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를 훼손하고,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허물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AI 산출물에 우호적인 해석론, 나아가 입법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⁵⁶⁾ 그러한 주장들은 학술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관련 논의를 풍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의 국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작권 제도가 인류 사회에 존재하게 된 근본 이유, 즉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를 재인식하는 일이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AI 산출물에 대해서 왜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는 자연권 이론과 인센티브 이론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연권 이론은 '노동에 의한 정당화'와 '인격에 의한 정당화'로 나뉜다. 인센티브 이론은 저작권이 잠재적 저작자로 하여금 지적 생산물을 창작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무임승차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이란 권리 자체의 정당화 근거를 모색하는 자연권 이론을 주축으로 하면서 공익의 관점에서 저작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인센티브 이론을 보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⁷⁾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AI 산출물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AI 산출물을 만들어낼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AI 산출물이 사회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무런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더라도 AI 산출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III. AX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

1.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중요한 이유

본래 주제는 AI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을 덧붙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 인력,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전문 인력이란 실무가와 학자를 아우르는 것이므로 전문 인력 양성에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포섭되기 마련이다.

56) 예컨대, Mark A. Lemley, "How Generative AI Turns Copyright Upside Down", Columbia Science & Technology Law Review, Vol. 25, Spring 2024 참조. 이 논문에서 마크 렘리 교수는 예전에는 인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의 대부분을 AI가 자율적으로 처리해 줌에 따라 인간은 AI와의 공동 작업에서 아이디어나 콘셉트와 같은 추상적인 측면에서 기여하게 되므로, 인간은 AI 산출물의 구체적 표현 그 자체에 대한 기여가 아닌 프롬프트에 무언가를 입력하여 지시를 하는 좀 더 추상화된 기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기존 법리는 뒤집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Ibid. pp.196~200). 렘리 교수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각주(12) 본문에서 언급한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7) 박성호, 앞의 책, 14~17면 참조.

그럼에도 학문 후속세대⁵⁸⁾를 덧붙인 까닭은 저작권법 실무 전문가에게 ‘이론의 젖줄’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법을 비롯한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행위주체는 우리 사회나 학계가 되겠지만,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행위주체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전문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행위주체를 달리 볼 수도 있다. 전문 인력이란 일종의 집합개념이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집합체이다. 전문가들은 숙명적으로 누군가의 학생 혹은 제자이고, 또한 누군가의 선생 혹은 스승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선생(스승)의 본질은 학생(제자)일 것이며, 자율적인 공부 공동체의 일원일 것이다.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평가받으려면 끊임없는 공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공동체는 스스로를 양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학문 후속세대도 양성한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게 길러진 후배(제자)는 의식이나 실력의 측면에서 선배(스승)보다 뛰어나야 한다.

2. 저작권법 전문가가 되려면? — ‘공부하는 인간(Homo Academicus)’과 ‘잘 노는 인간(Homo Ludens)’의 합일/합체 혹은 ‘성덕’!!

국가나 공공기관이 행위주체가 되어 저작권법 전문 인력,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제도적 지원에 앞서 존재하여야 할 사회적 조건도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작권법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잠재적으로라도—존재하여야 한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저작권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공분야 법률지식’ + ‘비교법 지식’ + ‘외국어 실력’ + ‘전공분야 관련지식’ + ‘성실한 인간’ 등의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잠재적으로라도—존재하여야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조건 중 ‘전공분야 법률지식’과 ‘전공분야 관련지식’은 구별하여야 한다. 전공분야 관련지식은 배경지식을 말한다. 지금은 법학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전문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문학, 음악, 미술, 컴퓨터 등에 관한 배경지식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저작권법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잠재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에 관한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배경지식이 충분하여야 전공분야에 대해서 늘 새로운 호기심이 생긴다.⁵⁹⁾ 그리고 늘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야 전문성이 늘어나는 데에 도움이 된다.

58) 천경훈,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체제의 현재와 미래”,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한국법학원, 2024. 12., 575~576면은 “‘학문후속세대’라는 용어는 미래에 학문을 이어나갈 차세대 연구자를 지칭” 하는 것으로 “한국에 특유한 용어로서” 외국에서 “직접 유래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법령상으로는 학술진흥법 제7조에서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이라는 표제”로 등장한다고 한다.

59) 예컨대,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논의가 심화될수록 기술을 독립변수로 사회를 종속변수로 파악하는 기술결정론(또는 기술결정주의)과 기술과 사회의 상호 구성적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구성론(또는 사회구성주의) 간의 논쟁을 둘러싼 배경지식(이에 관해서는 홍성욱, “기술결정론과 그 비판자들: 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를 통해 본 20세기 기술사 서술 방법론의 변화”, 『서양사연구』 제49호, 한국서양사학회, 2013, 7~40면)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각주12)에서 언급한 ‘행위자 네트워크(연결망) 이론’ 혹은 ‘구성주의’('사회'를 뺀)와도 연결된다.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편,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1』 제6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7, 62면 이하(홍성욱 집필부분) 참조.

배경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저작권법에 관한 소위 ‘성공한 덕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개별 분야들, 예컨대 음악·미술·영화·건축·게임 등의 저작권 쟁점을 검색해 보면, 전문가들이 쓴 길고 짧은 글들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들이 검색된다. 그러한 자료들의 작성자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개별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그 전문적 식견이 예상 밖으로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갖춘 전문성의 비결은 바로 배경지식에 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영화에 폭 빠져 사는 변호사들이 저작권법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지는 모습이 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덕후’, 필자가 자주 표현하는 ‘공부하는 인간(Homo Academicus)’과 ‘잘 노는 인간(Homo Ludens)’이 합일/합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전문가라면 현재 벌어지는 법률 분쟁이나 어떤 쟁점에 대하여 입법론이 아닌 해석론 차원에서 무언가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론보다 입법론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 이러저러한 법제도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직면한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어떤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법학자가 논문이나 용역과제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법론으로 제시하면, 얼마 후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정부입법안이나 의원입법안 형태로 국회 주변을 맴돌다가 어느 날 불쑥 아무런 ‘입법이유서’도 없이 법률로 제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입법이유서’가 없는 부실 입법 혹은 그럴듯한 상징입법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친다.⁶⁰⁾ 이러한 상징입법의 책임을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게만 물을 일은 아니다. 부실 입법이 빈발하는 사태의 근본원인은 ‘입법론’을 남발하는 법학자들에게 있다. 이들은 법학자의 본령이 ‘해석론’을 펼치는데 있다는 사실을 잊고, ‘얼리어답터’를 자처하며 새롭고 신기한 외국 법제도를 발견하면 이내 ‘입법론’으로 내달린다.⁶¹⁾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본령은 법의 문언을 해석하는 ‘해석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⁶²⁾ 저작권법의 연구에서도—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입법론’보다 ‘해석론’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입법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해석학’이나 ‘입법학’에 관한 문헌 몇 가지만 살펴봐도 ‘해석론’과 ‘입법론’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³⁾ 필자는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초창기부터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논문도 주로 역사적 해석방법론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법률해석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역사적 해석’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해석론이다.⁶⁴⁾

60) 홍준형, 「상징입법—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한울아카데미, 2020, 87면에서는 입법이유서가 없는 부실 입법에 대해 “문제해결에는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고 ... 겉만 번지르르한 법을 만들어 대중을 현혹하거나 우롱하는 경우”를 ‘상징입법(symbolic legislation)’이라 부르며 비판한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입법자가 자행하는 일종의 ‘입법농단’의 실상을 더 소상히 객관적으로 보고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자신이 관여한 입법의 잘못이나 부실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이나 반성이 없다”고 일갈한다.

61) 박성호, “법학자가 부추기는 ‘상징입법’ 혹은 ‘입법농단’”, 『대학지성』 2021. 3. 7자.

62) 예컨대, 헌법학에서는 헌법해석학의 빈곤을 비판하며 “헌법해석학의 기초인 헌법해석방법론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중요하다는 논의(김형성, “한국 헌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96면), 민법학에서 민법해석학과 법학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양창수, “민법학에서 법철학은 무엇인가?—개인적 점표—”,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9, 8면), 형법학에서 형법해석학과 형법해석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이용식, “형법해석의 방법—형법해석에 있어서 법규 구속성과 정당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36면 이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입법을 할 때에—필자가 늘 강조하는—‘입법이유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학’과 ‘입법학’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법 전문가의 연구 자세를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입법론보다 해석론에 치중하여 공부해야 한다는 것, (2) 해석론을 전개할 때에는 역사적 해석방법론은 물론이고 비교법적·비교법제사적 해석방법론⁶⁵⁾ 등을 동원하여 주도면밀한 해석론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3) 해석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비로소 입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4) 입법론을 제시할 때에는 충실한 ‘입법이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 개정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본 (1)→(2)→(3)→(4) 단계를 모두 거쳤다는 것, 따라서 개정논의의 ‘전제’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우리 저작권법을 해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역사적 해석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입법자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사회관계를 어떻게 만들기 위하여, 또는 어떠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한 법률과 조문을 제정하였는지를 밝히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다.⁶⁶⁾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57년 저작권법이든 1986년 저작권법이든 우리 저작권법에는—필자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입법이유서와 같은 입법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이 되는 것은 민법의 경우도 그렇다고 한다.⁶⁷⁾⁶⁸⁾ 입법이유서가 없다고 해서 입법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제도·개념을 연혁적·비교법학적 연구로 보충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밝히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⁶⁹⁾

입법이유서와 같은 입법자료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밖의 입법자료로서 정부의 입법초안, 국회법사위원회의 논의보고서 등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할 수 있다.⁷⁰⁾ 구체적으로는 ‘국회 의사록’이나 입법부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초자(起草者)에 의한 입법취지 설명, 그에 관한 의원의 질의발언과 그에 따른 답변 등을 기록한 ‘의사록’이나 ‘속기록’ 등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할 수 있다.⁷¹⁾

63) 예컨대, 최대권, “제정법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30권 제1·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122면은 “...법률, 명령 등 제정법의 해석이란 입법의사(legislative intent)를 밝히는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바로 입법학의 문제가 된다...”

64) 예컨대, 양창수, “동산질권에 관한 약간의 문제”,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271~272면;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에 관한 최근 문헌으로는, 이계정/양천수/권경휘/이성범, 『민법의 해석』, 박영사, 2025, 299~363면(이계정 집필부분) 각 참조.

65) 이에 관한 비교법학 해석방법론은, 제도적 비교 해석방법론, 기능적 비교 해석방법론, 법사회학적 비교 해석방법론, 역사적 비교 해석방법론 등으로 세분화된다. 필자는 콘라트 츠바이게르트/하인 쾨츠의 기능적 비교 해석방법론과 역사적 비교 해석방법론에 주목하여 양자를 결합한 ‘비교법적·비교법제사적 해석방법론’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는 기능주의 방법론에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는 법제사적 접근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방법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예컨대, 박성호, “동아시아 전통 법제에서 저작권 보호 개념의 존부(存否)—윌리엄 엘퍼드 지음 책 도독질은 고상한 범죄를 소재로 삼아—”, 『계간 저작권』 통권 제12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여름호, 5면 이하(특히 7~10면) 참조.

66) 고상룡, “법해석학의 연구동향”,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5, 9면. 이 논문은 원래 『성균관대 논문집(인문·사회계)』 제25권(1978, 85~96면)에 수록되었던 것을 『민법학특강』에 재수록한 것이다.

67) 고상룡, 앞의 논문, 9면; 양창수, 앞의 논문, 271면 각 참조.

68) 한편, 명승구, “이항녕교수와 민법” 『안암법학』 제59호, 안암법학회, 2029. 11., 41~42면은, 1954년 10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법안에 입법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본래는 입법이유서가 존재하였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69) 고상룡, 앞의 논문, 9면.

70)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제2판, 홍문사, 2008, 273면 참조

그 밖에도 법안 기초자에 의해 작성된 해당 입법의 ‘해설자료’, 기초자들 간에 이루어진 ‘좌담회 자료’, 정부 입법초안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입법관계자의 내면풍경을 탐색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도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할 수 있는 입법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법률의 어떤 제도·개념을 연혁적·비교법학적 연구로 보충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밝히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다 보면, ‘입법자’라는 것은 누구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입법자’는 하나의 집합개념이다. 그러한 점에서 입법자란 입법부의 구성원들, 법률심의위원회 혹은 법안의 작성에 참여한 정부부처의 공무원들, 또한 해당 국회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말하며, 이들이 가졌거나 받아들였을 것으로 가정되는 규범표상들이 ‘입법자의 의사’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⁷²⁾

필자는 오래 전부터 ‘입법관계자’ 또는 ‘입법관계자의 의사’라는 표현을 논문에서 사용하여 왔다. 입법 이유서와 같은 입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입법관계자’ 혹은 ‘입법관계자의 의사’라는 용어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작성과 심의과정에 참여한 여러 층위의 사람들이 작성하였던 자료들을 역사적 해석을 위한 입법자료로 삼기위한 일종의 도구개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관견(管見)’ 세 가지

가. 그 하나 — 법학 교육과정에서 저작권법(지적재산권법) 전공자/전문가를 확대하는 방안

지적재산권법 특히 저작권법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 교육과정 전반이 저작권법 전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법학 중에서 사법(私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법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소유하는 유형의 물건과 인간이 제공하는 무형의 의무(役務)를 주된 보호 대상으로 다루고 연구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무형 자산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다룬다. 특히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인간의 사상·감정, 표현, 창작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을 “형이상학에 관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특히 법철학에 관한 지식은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초고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에는 ‘행정저작권법’ 혹은 저작권에 관한 ‘특별행정법’(예전의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법 조문 중 문화행정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⁷³⁾ 다음으로

71) 양창수,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약간의 문제”,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116~119면의 “III. 立法者意思의 吟味”에서 인용한 자료; 양창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195~203면의 “II. ‘등기주의’로의 전환에 있어서 立法者意思”에서 인용한 자료 각 참조.

72) 김영환, 앞의 책, 272면의 각주(12).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목적으로 마련된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으로 줄임)의 허가·업무 감독 등에 관한 규정들(제105조~제111조)이다. 이들 규정은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의 혐의가 있는 특정 사안들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권리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문체부장관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제133조), ② 문체부장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시정명령(제133조의2), ③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등과 관련한 '시정조치 권고'(제133조의3), ④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제133조의4) 등이다.⁷⁴⁾ 저작권법, 그 가운데서도 특히 행정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가 폭넓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법에는 벌칙 규정들을 두고 있다. 매년 법원에서 선고하는 지적재산법 관련 형사사건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적재산권법 관련 형사사건들은 지적재산권법 쟁점의 복잡함 때문인지 지적재산권법과 교차(交叉)된 형사법 쟁점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형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가 깊어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가 강조되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접목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과 국제공법·국제사법과의 관련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학 교육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저작권법 전공을 활성화하는 것은 겹겹이 쌓인 제도적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놓고 탁상공론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인 일일뿐이다.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행정법, 형법, 헌법, 국제법, 국제사법 전공자/전문가들과 이들 법률 과목에 관심이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저작권법 쪽으로 견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나. 그 둘 — 정책·법제 연구자 및 실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법은 저작권 고유의 쟁점뿐 아니라 헌법, 민사법, 형법, 행정법, 국제

73) 저작권법상 문화행정에 관한 규정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법정허락(compulsory license) 제도이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소위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제50조~제52조)이 있다.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으로 줄임)의 승인(행정처분)을 얻은 후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거나(제50조)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공탁(제51·52조)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행정처분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 강제된다는 점이다.

74) ①은 행정상 즉시강제, 그중에서도 대물적(對物的) 강제에 해당한다. ②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하명(下命)이고, ③은 하명에 앞서 이루어지는 법률상 사전권고(事前勸告)로서 실무상 '시정 권고'라고 불리는 것이고, ④는 ①과 마찬가지로 행정상 즉시강제(특히 대물적 강제)에 해당한다.

사법 등의 쟁점들과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저작권 정책·법제를 연구하는 ‘사람’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정책·법제를 ‘연구’하는 것 자체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법철학, 법제사 연구 문헌들을 세부 쟁점 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⁷⁵⁾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한 분야로 부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부실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 정책·법제를 연구’(‘자’를 뺀 것) 역량 강화 같은 토론 주제는 특정 쟁점마다 상시적으로 개별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두 번째 세부 주제로 토론하고 끝낼 논의가 아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언제나 일상적으로 ‘이러저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세부 쟁점이 무엇인지, 세부 쟁점마다 기존 연구 논의가 어떠한지, 그에 관한 연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국가기관, 공공단체, 그리고 개별 전문가 집단들 간에 논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 인과 특정인 간에 개별적으로 소위 ‘알음알음’으로 연결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개별 분야들, 예컨대 음악·미술·영화·건축·게임 등의 저작권 쟁점을 검색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쓴 길고 짧은 글들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들이 검색된다. 그러한 자료들의 작성자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개별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그 전문적 식견이 예상 밖으로 뛰어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살펴볼 것은 주요 로펌에서 pdf 파일 형태로 공간하는 뉴스레터이다. 이들 뉴스레터에도 다수의 로펌 변호사들이 작성한 소논문 형태의 저작권법에 관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실무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다양한 개별 쟁점들마다 이들 실무 전문가들을 세미나 등지에 토론자, 발제자 등으로 초청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청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쟁점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질만한 개별 실무 전문가들의 명단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그 셋 — 판례연구의 중요성

“길거리에서 돌을 던져 본 역사가와 던져 보지 못한 역사가는 지상의 삶을 ‘문제화’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어느 사학자가 썼다.⁷⁶⁾ 이 문장을 누군가는 “법정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가와 다루어 보지 못한 법률가는 저작권의 쟁점을 ‘문제화’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흉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학자가 쓴 ‘길거리’와 ‘돌’은 현실 그 자체를 뜻하지만, 현실에 주목하는 인간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75) 별도 DB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부터 활용되어온 검색엔진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미 학습 완료된 AI 모델 등을 충실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76) 임지현,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어느 사학자의 예고 히스토리」, 소나무, 2016, 32면.

저작권법에서 물론 이론은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저작권법에서 판례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작권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본격적인 판례연구가 아직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는 판례를 이해하고 해설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판례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입법론으로 ‘급발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판례연구라는 것이 어떠한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법학자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특정 사건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만을 가지고 한 학기 대학원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판례연구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는 1977년 조직된 ‘민사판례연구회’의 그간의 실천 사례를 참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판례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 생성형 AI 산출물 vs 저작권법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

2026년 저작권 법학자 대회의 두 가지 주제는 서로 호응하면서 또한 서로 배척한다. 이 글에서는 서로 호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AI 시대의 현실은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이 상호 부딪친다. 저작권법 실무 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대형 로펌이 처해 있는 한 모습을 소개한다.

“신입 변호사를 줄이고, 기본적 문서 검토와 분석은 AI에 맡긴다. 하지만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몫이다. 즉, 조직은 점차 ‘신입이 아니라 중견’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신입이 필요 없어 뽑지 않으면, 중견으로 성장할 인력 자체가 사라진다. 중견의 전문성은 오랜 기간에 걸친 훈련, 시행착오, 학습, 실전 경험이 축적되어 생긴다. 신입이 중견으로 성장하는 사다리가 무너지면, 결국 조직은 붕괴한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역할은 축소된다.”⁷⁷⁾

AI의 등장으로 로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도제교육의 인센티브가 약해졌다. 법조계의 IT, AI 전문가로 유명한 강민구 변호사는 AI 등장으로 인해 “지금 견히고 있는 것은 일자리 몇 개가 아니라 초보자가 숙련자로 올라가던 사다리”라고 하면서 “밑바닥부터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결과물이 잘된 것인지 판별할 힘을 기르지 못한다. [사다리는 사라지고] 판단력은 비어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젊은 법조인이 놓인 자리”라고 썼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⁷⁸⁾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과 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다. 그 둘을 혼동하는 순간 변호사는 프롬프트 입력자로 내려앉는다.”

AI 시대에 대형로펌에서 신입 변호사를 적게 뽑게 되면 장차 우리 법조계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를 지적한 글이지만, 이는 저작권법 전문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저작권법 전문 인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학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등이 수시로 AI를 활용함으로써 저작권법 전문 인력이 자라날 터전을 스스로 갈아엎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完]

77) 홍성욱,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95) 신입보다 AI가 낫다?", 「조선일보」 2025. 12. 8.자.

78) 강민구, "사다리가 사라진 자리에서—AI 시대, 어썬 변호사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송백일기, 2026. 7. 28.자.

[제1주제] 지정토론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좌장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토론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김광남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형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호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박유선 교수(강원대학교)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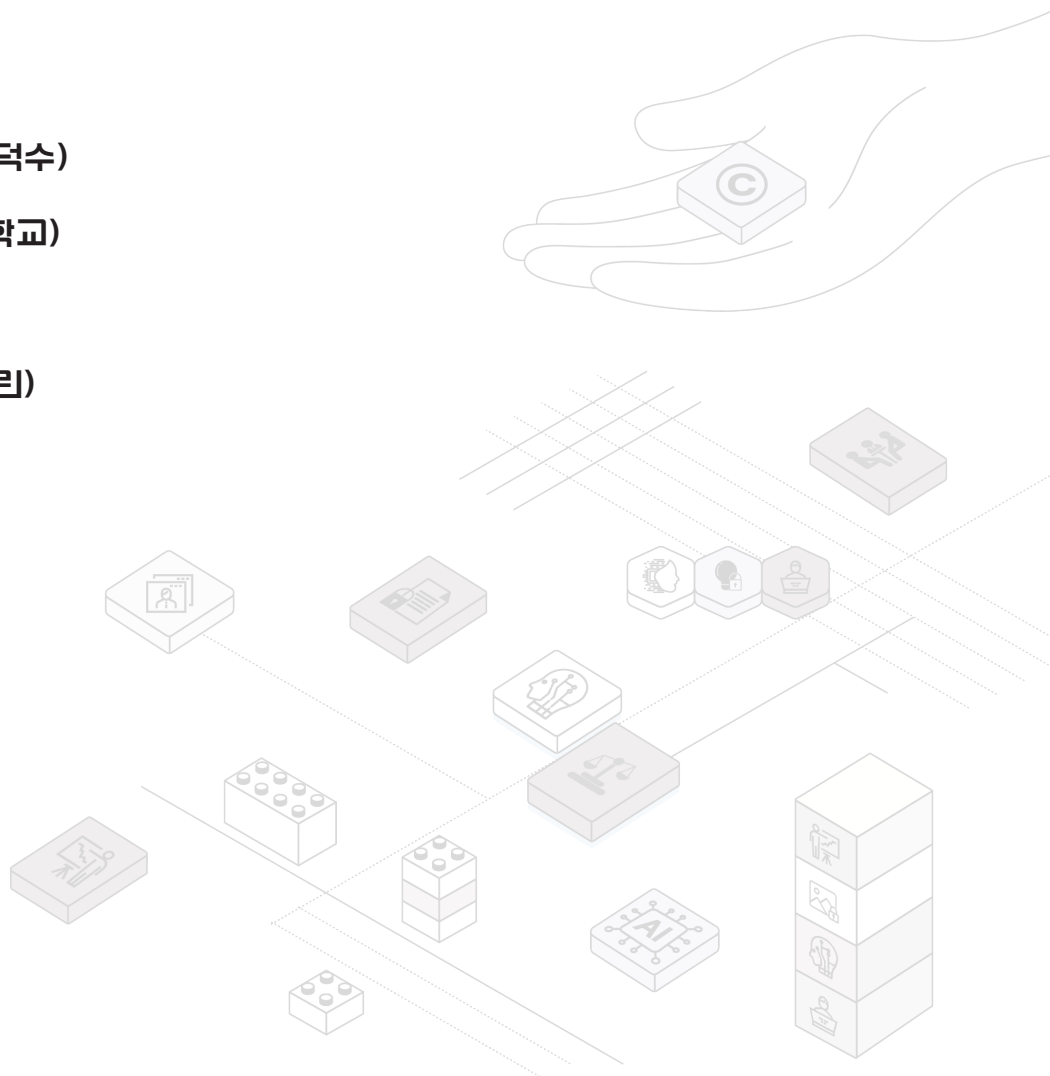
이유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이일호 연구교수(연세대학교)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름)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좌장]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핫이슈가 된 것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바둑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탄사를 자아내고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인지 또는 학문적 관심인지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I기술과 가장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저작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AI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창작활동과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같은 창작법인 특허법의 특허발명이 인간의 창작 관여에도 산업재산권이라는 점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게 창작과정이나 창작활동에 AI가 많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저작권제도와 밀접한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간의 창작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시점이 될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 하나의 수단 또는 도구로서 제품과 같은 대접을 받게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작권제도의 유지 또는 더 정교한 인간 창작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명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제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와 “악의의 수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는 법률적 의미의 “알고 있다” 또는 “모른다”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의와 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은 정밀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몇몇 국가나 회사,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해지고 인간의 창작성처럼, 오히려 더 나은 성과물을 내고 있어서 규범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출물을 인간의 창작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보상체계 내지 회수 기회를 주는 저작인접권 제도의 취지나 규정내용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 법제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를 참고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운영이익을 받는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를 책임법의 영역에서 책임주체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현재의 우리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학습, 산출물들은 창작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통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다른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연계성을 무리하게 엮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 제도의 정체성을 흐트리는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1) 인간의 '창작적 기여' 기준 제시

AI 시대에도 저작권제도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식별하고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 특히 이용자가 단순한 지시나 아이디어 수준의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선택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저작권제도의 역할이다. 미국에서 문제된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Thaler v. Perlmutter)' 사건과 '우주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 사건은 이러한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산출물이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가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AI가 콘텐츠 제작에 널리 활용되더라도 AI의 기술적 기여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이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창작적인 선택과 통제를 행사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수정·보완하거나 여러 요소를 선택·배열·편집하였다면, 그 인간의 기여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결국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저작권 제도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저작권제도는 순수한 AI 산출물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보다, 인간의 의도·선택·통제·수정·편집이 최종 산출물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2) 권리범위의 확정

저작권제도는 AI 학습을 위하여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과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그치지 않고, AI 학습을 위한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 라이선스 조건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정이용이나 법정 예외의 범위를 넘어 AI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특히 상업적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량의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수집·복제하거나, 특정 분야의 고품질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와 보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해당 이용이 기존 저작물 또는 학습데이터의 라이선스 시장을 대체하거나, AI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경쟁하여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저작권제도는 AI 학습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과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고,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유효한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저작권은 AI 학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유이용의 영역과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영역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3) AI 라이선스의 법적 근거

나아가 저작권은 AI 라이선스의 법적 근거로 기능한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AI 모델 개발자와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이고 학습데이터와 산출물 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AI 라이선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저작권이 여전히 AI 시대의 핵심적인 거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뉴스·출판 분야에서는 AP와 OpenAI가 2023년 계약을 체결하여 OpenAI가 AP의 일부 뉴스 텍스트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6년에는 AP의 미국 선거데이터를 ChatGPT와 OpenAI 서비스에 제공하는 별도의 계약도 체결하였다. 프랑스의 Le Monde 역시 OpenAI가 자사의 저널리즘 콘텐츠를 AI 학습과 ChatGPT의 답변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New York Times는 2025년 Amazon과 최초의 생성형 AI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Amazon이 New York Times 기사뿐 아니라 NYT Cooking과 The Athletic의 콘텐츠를 자사 AI 모델의 학습과 Alexa 등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분야에서도 라이선스의 범위는 AI 학습을 넘어 산출물의 생성과 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Warner Music Group과 AI 음악기업 Suno는 2025년 기존의 저작권 소송을 종결하고 라이선스 및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Spotify와 Universal Music Group 역시 2026년 음반 및 음악출판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참여 아티스트와 작곡가의 음악을 이용자가 AI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커버하거나 리믹스할 수 있는 유료 기능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캐릭터와 영상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Disney와 OpenAI는 2025년 3년간의 계약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Sora와 ChatGPT Images는 Disney, Pixar, Marvel 및 Star Wars에 속하는 200개 이상의 캐릭터와 관련 의상·소품·차량·배경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이미지와 단편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AI 라이선스가 단순히 AI모델 학습을 위한 이용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캐릭터와 세계관을 활용한 산출물의 생성범위와 이용조건까지 규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AI 라이선스가 저작권을 기초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1) 웹상 공개된 저작물의 TDM오픈아웃을 위한 제도적 장비 마련

AI 학습에 이용되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반 공중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해당 저작물을 복제·수집하여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웹상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AI 학습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모든 AI 학습 이용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거나, 개별 사건마다 사후적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만으로는 권리자와 AI 개발자 모두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다. 공정이용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개방적 규범이므로, 대규모 자동화 이용에 필요한 사전적이고 표준화된 의사표시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EU DSM 지침은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예컨대 DSM 지침 제4조 제 3항은 권리자

가 TDM 이용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일반 TDM 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그러한 권리유보가 기계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서 권리자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 공정한 보상을 위한 AI 라이선스제도의 구축

저작권제도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AI 라이선스 시장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AI 개발자가 수많은 권리와 일일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표준계약, 분야별 포괄허락, 집중관리, 확장된 집중관리(ECL), 데이터세트 단위의 라이선싱 등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지, 어떠한 목적과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정보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보다, 보상체계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 정도와 산출물에서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기존 저작권 집중관리체계를 AI 이용으로 확장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① 미국 Copyright Clearance Center

미국의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AI 시스템의 입력과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Systems Training License'를 도입하였다. 이는 AI 기업과 AI 응용 서비스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비독점적 집단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외부 AI 모델의 학습을 비롯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모델 산출물의 이용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CCC 방식은 개별 출판사와 AI 개발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집중관리기관이 다수 권리자의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AI 사업자는 여러 권리자의 저작물을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권리자는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더라도 AI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규모 AI 학습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권리처리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집중 라이선스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영국 Copyright Licensing Agency

영국의 Copyright Licensing Agency(CLA)도 출판물의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CLA는 업무환경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AI 프롬프트 입력, 요약, 정보 추출 및 분석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자·출판사 단체들과 함께 AI 모델 학습을 위한 집단 라이선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CLA의 접근은 출판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집중관리 인프라를 생성형 AI 이용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별 저작물이 특정 모델이나 산출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 권리자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아래 포괄적으로 허락하고 사용료를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AI 라이선스 시장이 개별 권리자와 AI 사업자 사이의 일대일 계약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출판·음악·뉴스·사진·영상처럼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권리구조가 복잡한 분야에서는 기존의 집중관리체계를 AI 이용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AI 시대의 저작권제도는 권리자에게 추상적인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권리를 실제 라이선스와 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개발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결과물이 어떠한 데이터를 기초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는지, 특정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문제된 산출물이 실제로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법적 분쟁, 행정적 감독,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체계에서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로그 기록, 출처기록(provenance records)과 같은 기술적 조치는 책임소재를 추적하고, 규제기관이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는 투명성, 안전성, 이용자 보호, 권리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수반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데이터 단계에서의 필터링, 생성 단계에서의 표시 및 출처정보 부착, 유통 단계에서의 탐지와 추적이 상호 연계된 방식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의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변형·전송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추론, 계약상 이용조건의 위반, 데이터와 영업상 성과의 무단 이용, 허위정보와 명예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률이므로, AI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이용과 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데이터 자체의 보호, 계약상 의무 위반, 스타일 모방, 타인의 투자성이나 명성에 대한 부당한 이용,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상법, 약관규제법, 공공데이터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1) 데이터의 보호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사실·원리·단순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수집·분류·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계약을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민법·상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용범위와 책임을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개방과 이용 촉진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처리 근거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상 거래되는 데이터나 타인의 투자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2) 계약상 의무 위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계약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웹사이트 이용약관이나 API 이용조건에서 AI 학습, 자동수집 또는 데이터 재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 조항이 유효하게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이를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약 위반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계약상 이용조건의 위반만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책임과 계약책임은 그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약관을 통하여 공정이용, 인용, 연구·교육 목적의 이용 등 저작권법이 보장하려는 모든 자유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언제나 유효한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법률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중요한 이용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 또는 불공정약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민법, 약관규제법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어떠한 이용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와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정하고, 민법과 약관규제법은 그 이용허락과 이용조건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스타일·얼굴·음성 등 인격적 특징의 모방

저작권법은 특정인의 얼굴, 음성, 성명, 인격적 특징이나 창작자의 추상적인 스타일 자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한 딥페이크가 기존 사진·영상·음원을 복제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동일성·명예·사생활 또는 경제적 가치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AI가 특정 창작자의 화풍, 문체 또는 음악적 스타일을 모방하는 문제도 저작권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 기법, 장르적 특징 또는 추상적인 스타일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스타일 자체에 광범위한 독점권을 인정하면 인간 창작자의 학습과 모방, 후속 창작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AI 산출물과 관련해서는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의 재현과 일반적인 스타일의 참조를 구별해야 한다. 특정 작품의 문장·구도·선율·등장인물 등 구체적인 표현이 재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창작자의 이름·명성·스타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경제적 이익에 무단으로 편승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법상 인격권 규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4) 투자성과·명성의 부당한 이용과 시장 신뢰의 훼손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업자나 창작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한 성과·명성·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예컨대 경쟁 사업자가 구축한 데이터, 콘텐츠 분류체계, AI 산출물 또는 서비스 결과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나 성과도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창작자나 기업의 이름·명성·표지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해당 창작자의 실제 작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혼동초래행위나 명성 편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및 민법 등의 적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김광남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 인간 창작 요건(Human Authorship) 강조의 필요성

● 헌법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하고(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저작권법 제1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즉,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에 의한 창작 요건(Human Authorship)을 천명하고 있음.

●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반인이 저작물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넘어 직접 창작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됨은 바람직하나, 과도한 AI에 대한 의존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경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인간의 창작 욕구는 도태되어 궁극적으로는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에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인간에 의한 창작 요건(Human Authorship)은 그대로 유효하며,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

●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 기존 법리에 의하면 프롬프트 입력은 전형적인 아이디어 제공행위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움.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학습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인간의 개입 없이 산출물이 생성되어 통제가능성이 낮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함.¹⁾ 현재 AI 기술현황에서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사안의 따라서는 프롬프트 입력행위만으로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

1)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6.), 18.

● AI의 발전에 따라 통제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고, 현재 AI 기술 상황에서도 일련의 반복되는 프롬프트의 입력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한 평가와 선별이 수반되고,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기 때문임. 따라서 프롬프트 입력 자체는 창작성이 없고, 산출물의 선택, 배열, 구성 등에는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식의 일도양단식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프롬프트 입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 자산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여전히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AG München, Urt. v. 13.02.2026 – 142 C 9786/25도 같은 취지).

● 결국 향후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인간의 AI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라 생각됨. 새로운 창작도구가 도입될 때마다 저작권은 같은 문제를 직면해왔음. 예를 들면, 카메라가 도입 초기에는 사진의 창작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창작성이 인정된 후에도 그 기준이 엄격하였으나(예를 들면, 정물 사진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안), 점차 사진의 경우도 다른 저작물과 같이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요구하고, 다만 동일유사의 폭을 엄격하게 보아 사안을 해결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에는 AI 활용 산출물도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봄.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 학습데이터 허용 범위

● TDM 방식과 공정이용 중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방식을 채택하여 사안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다소 AI 개발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현 상황에서 TDM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반드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이런 국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정허락제도도 주목해볼만하나 저작물의 학습데이터로서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선제적 도입은 큰 혼란만을 야기할 수도 있음. 결국 현재로서는 공정이용에 대한 법리를 연구하고, 전 세계적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위법한 AI 산출물에 소유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 AI 산출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통상 이용약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임. 보통은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²⁾

● AI 산출물이 위법할 때, 예를 들면,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구성할 때 그 책임 주체를 누구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면책 내지 책임의 제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연

2)예를 들면, Anthropic의 경우: As between you and Anthropic,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you retain any right, title, and interest that you have in the Inputs you submit. Subject to your compliance with our Terms, we assign to you all of our right, title, and interest—if any—in Outputs.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고의, 과실 추정규정이 없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내지 증명할 수 있을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의 유의사항

●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논리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명하는데 들이는 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AI 시대에서 새로운 제도를 선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앞서 나갈 경우 속지주의의 특성상 국내에만 보호 여부를 달리 할 경우 국내 이용자 내지 저작권자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를 어느 정도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저작권법의 한계

● 저작권법은 '창작성적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예를 들면, ① 특정작가의 화풍, 스타일, ② 외모, 목소리 등 인격적 징표, ③ 데이터 안의 개인정보 등은 저작권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음.

● 위와 같이 저작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상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각 법의 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저작권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임. 다만, 각 보유주체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자와 개인정보 소유자가 같은 경우 이를 위반한 손해배상 등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는 경우 있을 수는 있음.

■ 타법과의 연계

●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부정사용행위[(카)목], 퍼블리시티침해행위[(타)목], 기타성과모용행위[(파)목] 등이 AI 학습, 산출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 약관법: 포탈업체 등이 이용자를 위한 약관에 학습데이터 사용 동의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명시설명의무를 이유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이런 국면에서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두고 있으나 최근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되어 향후 추이를 볼 필요가 있음.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 저작권 제도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저작물을 우리 사회에 많이 만드는 것이기에, 저작권 제도는 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독자적인 창작도 가능하고, 창작에 도움도 주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는 인공지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저작권 제도의 목적이 창작과 혁신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의 창작뿐만 아니라 혁신 기술을 촉진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 기존의 창작과 혁신의 충돌은 VCR, MP3, P2P의 사례에서 보듯이, 와해성 기술에 따른 파괴적 혁신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혁신을 지지하지 못하고 저작권을 과잉보호하면서 혁신을 억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혁신의 보호에 대해 균형추를 더 무겁게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혁신은 이전의 혁신들과 달리 저작물을 독자적으로 창작하고, 그 품질이 인간의 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상과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은 여전히 큰 대전제인 목적에 따르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위한 해결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 제도는 창작과 혁신의 균형이라는 목적에 따라, 혁신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을 위한 TDM 제도의 도입, 옴트아웃 제도의 도입, 더 나아가 묵시적 이용권의 채택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기존 혁신과는 다른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문제로서, 품질이 우수한 독립적 창작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상의 문제와 생성물에 대한 취급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부당이득 법리에 의한 해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 인공지능이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적정 비용(국가나 법원이 정한)을 지급함으로써, 저작권법을 넘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성물에 대한 취급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등의 별도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별도 저작권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며, 다만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인간의 누릴 수 있는 저작물에 버금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인간의 창작물과는 구별되는 보호 방식(보호 기간과 보호 범위 등)이나, 인간의 관여성을 넓히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 생성물의 취급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제도와 논의 내용 등을 많이 검토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인공지능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한 해결 즉, 공정이용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이득과 같은 법리와 같은 계약법 등의 특성을 검토하여 공정이용에 의한 해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문제에서 파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보호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경법 파목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의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일반법인 부경법에 우선하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경법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크고, 더욱이 창작성을 보호하는 우리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보호(미국에서의 “이마의 땀” 이론에 대한 배제와 유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경법의 보호에는 적절한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 저작권 자체가 원칙적으로 '배타적 금지권'이나, 최근 일정 부분 '보상청구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AI 환경에서의 권리유보 표시, 라이선싱, 권리자 식별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저작권 메타데이터는 권리 귀속·라이선싱·집행·보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생성되고 표준화가 미흡하며 시스템 간 상호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사한 목적(자발적 저작권 등록, 집중관리, 법정 납본, 문화유산 접근 등)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조차 상호연결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베른협약상 무방식주의에서 비롯된 한계라 할 수 있으나 저작권 메타데이터 등 저작권 정보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인프라 구축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또한 이용자를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가 2026년 5월 28일 발표한 'Mapping of EU Databases and Metadata Standards Providing Information on Copyright-Protected Works'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¹⁾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 AI의 출력단계(아웃풋 단계)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 및 침해 판단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관련하여 간단 프롬프트 입력으로 인한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 즉 저작물이 아님에 대하여 크게 부인하는 견해는 없는듯 하나, 어느 정도 정교한 프롬프트를 통한 생성물에 대하여는 인간의 창작으로 봐야 한다는 '프롬프트 기반 접근법'이 제기되고 있으며,²⁾반면 여전히 프롬프트 입력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음.³⁾

1)EUIPO, Mapping of EU Databases and Metadata Standards Providing Information on Copyright-Protected Works, May 2026, Foreword (IP and innovation in European sectors: Industry-level analysis report, January 2026): (이하 "EUIPO 보고서"라 한다)

- 실질적으로 GenAI 생성물이 인간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침해 판단의 대상은 아이디어를 제외한 '표현적 요소'로 한정되며, 프롬프트 기반 저작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창작적 표현 요소를 추출하는 것은 전통적 상황과 다름

- 프롬프트 기반 GenAI 생성물 중 어떠한 부분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저작물성 인정뿐만 아니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한 침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저작권법은 '표현의 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정보의 처리'를, 부정경쟁방지법은 '비표현적 성과 도용'을, 정보통신망법은 '접근의 적법성'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역할 정립

- 플랫폼 이용약관을 통한 학습데이터 이용 동의·옵트아웃 조항의 실효성 문제 검토 필요 :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일괄 동의(opt-in 강제) 조항의 합리화 방안 마련 및 옵트아웃 절차의 접근성·명확성 확보 등

2) 김현경, 생성형AI 창작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한계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4호, 2026; 권순재, "프롬프트 기반 저작권 부여에 관한 소고 - 인공지능 생성물을 위한 '골디락스 존'을 기대하며", 『서울법학』 제32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66쪽; 김원오,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사법』 통권 제71호 (2025); 김윤명,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200호, 한국법학원 (2024), 261쪽 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저작권 쟁점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150쪽 (이철남 교수 의견 부분).
3) 류시원,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계간 저작권』 통권 14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김형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1) 지속 가능성과 창작 유인의 균형

AI는 인간 창작자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저작권의 기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I가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물인 원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의 창작 유인을 보장하면서도 산업계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균형점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디지털 Public Domain의 방어

AI 산출물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공유영역이 축소되어 오히려 미래 세대의 창작 기반이 잠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권리 부여의 엄격한 관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AI 산출물의 권리침해 시 책임구조

1) 문제의 소재

저작권 침해는 원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시 일반 저작권 침해와 다른 난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의거성의 경우 AI의 블랙박스로서 성격으로 인해 접근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운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 실질적 유사성의 경우에도 산출물에 AI 영역과 인간의 기여 영역이 혼재하기에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와 공표자, 침해자도 서로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모호해 질 수 있습니다.

2) 침해 주체 관련

a. 먼저, 학습 단계에서 해당 저작물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학습단계에서는 AI개발사가 그 주체가 될 것입니다.

b. 둘째로, AI개발사와 함께 API 재판매·모델가중치 재배포·파인튜닝 사업자와 같은 서비스제공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경우 출력 통제와 관련된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에게 귀속되며, 특히 파인튜닝 사업자의 경우 스스로 학습단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c. 셋째로, 프롬프트 입력자로서 결과물을 공개한 이용자도 1차적인 책임 주체가 됩니다.

3) 침해와 관련된 행위 태양

a. 이용자의 지목·유도 - 이용자가 특정 작가명이나 작품명을 명시하는 등 특정 저작물의 재현을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공표, 이용한 경우입니다.

b. 서비스의 구조적 유발 - 재현 방지 필터의 부재, 침해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또는 특정 IP의 재현 가능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통제 권한·능력과 직접적·금전적 이익의 문제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고, 특히 서비스가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c. 모델 내 체화에 따른 재현 - 통상적 프롬프트만으로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반복 재현되는 경우로, 그 파라미터를 형성한 학습 주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초 모델 개발사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수행한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의거성 - 블랙박스가 만드는 입증 공백

a. 현저한 유사성에 의한 추정

일반적 법리와 같이 AI 산출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산출물 판단기준을 실질적 유사성을 현저한 유사성으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함)

5)GEMA 판결의 memorization 현상 (의거성, 복제 등)

- 복제의 시점에 대한 판단: AI 모델의 파라미터에 저작물이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체화된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는 '출력'시점에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을 전환하여 '모델 내 저장'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

- 입증대상의 전환: 위와 같은 모델의 상태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상태를 AI 산출물의 유사성(동일성, 재현가능성)으로서 추단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 다만, 파라미터 체화를 바로 복제로 보면, 통계적 가중치와 저작물 경계가 무너져 사실상 모든 학습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결과물, 반복성 등을 고루 살펴 침해 요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OSP 책임 법리와의 정합성 충돌

- AI 플랫폼을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라고 본다면, AI플랫폼이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유도한 경우 간접책임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OSP책임 면책 구조를 AI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a. 유형: 기존 OSP의 경우 제3자 콘텐츠의 전송, 매개(단순도관·캐싱·호스팅 등)가 이루어지는 반면, 생성형 AI의 경우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b. 통제: 기존 OSP는 특정 URL 등 게시물 삭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했지만, 생성형 AI의 경우 산출물이 저장되지 않고 매번 새로 생성되게 되어 삭제는 어렵고, 필터링 등 차단 방지 방식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 침해에 대한 인식: 프롬프트 입력과 결과물 도출의 간격이 짧아 침해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도 기존

과는 다릅니다.

- 이와 같은 점에서 면책요건을 좀 더 넓게 다변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재현방지 조치 등을 좀 더 세분화한 출력 필터, 프롬프트 제한, 재학습시 데이터 제외, 조치 이행 내역의 기록, 보존을 면책요건으로 삼는 등입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저작권법의 구조적 한계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이 아닌 것은 보호하지 아니하나, 화풍, 문체, 목소리 등 실제로 AI생성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인간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AI자체는 침해주체가 될 수 없고, 이용자개발사·서비스제공자 등 침해 주체 사이의 책임 귀속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별 법률과의 연계

1) 개인정보보호법: 초상·음성 등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의 근거

-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학습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저작권과 별개의 적법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즉, AI 개발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엄격히 만족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또는 음성합성 시 사용되는 개인의 초상, 음성, 얼굴 특징 등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로 추출, 변환하는 경우 생체인식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되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파)목의 경우, 특정 작가의 독자적 화풍, 일관된 기법, 저작물성 없는 콘텐츠 등까지 위법한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제2조 제1호 (타)목의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식별표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AI에서 유명인의 음성·초상 데이터를 무단 학습·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편취하

는 경우 등의 규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반인의 초상, 음성 등은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타)목의 경우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여야 하는 등 규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 한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 AI의 학습, 산출 단계에서 영업비밀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박성호 명예교수(한양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는 창작의 도구인가? 라는 질문은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非)법률적인 용어이다. 저작권법에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용한 용어라면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용어이지만, 그 반대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AI는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창작’이란 무엇이고 ‘도구’란 무엇인가? 더구나 ‘창작의 도구’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종 사전에서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 법학에서 그간 논의되어온 ‘창작’과 창작의 ‘도구’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법률 체계는 인간중심주의 법학을 토대로 한다. 현행 법률 체계아래에서는 ‘창작’이라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것, 즉 ‘AI 기계’를 ‘창작’ 행위의 주체로 상정(想定)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그 행위주체로 하여 형성된 창작성 개념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는 법률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법의 역사에서 사진은 기술에 근거를 둔 최초의 이미지 매체이다. AI가 등장하기 이전의 컴퓨터는 카메라나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창작의 도구로서 인간이 작동시켜야만 비로소 기능할 수 있다. 작동이 되면 지시한대로만 수행할 수 있다.¹⁾ 그렇다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AI는 인간의 창작을 도와주는 도구인가?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로직 프로(Logic Pro), 큐베이스(Cubase) 등의 작곡 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웹툰 작가나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포토샵(Photoshop)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창작의 도구라고 보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이러한 창작 도구들을 활용하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이라는 문턱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해당 분야의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물리적 문턱이 크게 낮아져서 보다 쉽게 창작을 할 수 있다. 아마추어 화가가 AI의 도움을 받아(AI-assisted) 자신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손쉽게 창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의 AI는 창작의 도구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창작성 문턱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물리적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프롬프트에 무언가를 입력하면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generated autonomously by AI)’ 산출물에 대해서도 AI를 창작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예컨대,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AI의 경우이다.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상업용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척 복잡하고 긴 프롬프트를 만들어 넣어야 한다. 이런 프롬프트 외에도 미드

1)최경수 옮김,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CONTU)』,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101면. 미국에서 1978년 발한 CONTU의 최종보고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저작물’ 등에 관한 연구 성과물이다.

2)예컨대, 아트브리더(Artbreeder), 나이트카페(NightCafe), 폴리네이션(Pollination), 카오스비전(Visions of Chaos), 스타리 아트(Starry Art) 같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저니 커뮤니티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프롬프트 변환자(modifier)를 얻고 배워야 한다. 그 밖에도 이미지 생성을 도와주고 생성된 이미지를 변형하는 여러 창작의 도구²⁾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CLIP 같은 머신러닝의 기초를 알면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붓을 가지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회화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디자인 작업과 매우 다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해, AI가 그린 이미지 자체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인간이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2년 9월 이루어진 저작권 등록을 취소 결정한다. 다만 인간이 직접 쓴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택·배열(편집)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³⁾ 미 저작권청은 위 결정에서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지시한 이용자는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용자의 지시(프롬프트 입력)는 미드저니가 생성하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지시가 특정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는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충분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특정한 이미지의 편집방법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이미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지만, 미드저니 이용자는 최초 및 최종 이미지에 대해 동등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⁴⁾

인간의 창작을 AI가 도와주는(AI-assisted) 경우는 창작의 도구에 해당하지만, 인간의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생성하는(AI-generated) 경우, 구체적으로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하는(generated autonomously by AI) 경우는 창작의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⁵⁾ 결국 창작의 도구인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AI 산출물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이 AI를 창작 도구로 이용한 경우 AI 산출물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해당 산출물의 저작자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창작행위의 핵심은 ‘행위자의 의사’나 ‘행위자의 목적적 의욕’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활동의 ‘결과’, 즉 창작행위의 ‘결과’이다. 그러한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 낸 인간이 저작자로 인정받는다. 판례도 ‘저작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⁶⁾

정리하면, AI 산출물에 대해 누가 저작자인지를 정하는 ‘저작자의 인정’ 기준에서, ⁷⁾ ‘행위자의 의사’나 ‘행위자의 목적적 의욕’(‘창작 의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판례가 실시하였듯이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대한 기여’(‘창작적 기여’)이다. 따라서 AI 산출물에 대해서 인간을 그 저작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작 의도’가 아닌 ‘창작적 기여’를 핵심 기준으로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⁸⁾ 결국 AI가

3) 손휘용, “[미국]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저작권 동향』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 22. 참조.

4) U.S. Copyright Office, “Re: Zarya of the Dawn (Registration # VAU001480196)”, Feb. 21, 2023, pp.8~9.

5) WIPO/IP/AI/2/GE/20/1 REV., “Revised Issues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ay 21. 2020, p.4 para.12.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7) ‘저작자의 인정’이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작의 동인(motif) 제공, (2) 창작의 보조, (3) 감수·교열, (4) 저작물 창작의 위탁, (5) 계약에 의한 저작자 지위 부여 등이다.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194~197면 참조.

8)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판단(‘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또는 ‘창작성’)할 때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박성호, 앞의 책, 32면), 저작물성은 저작자 인정 여부 문제에 수렴되는 쟁점이다. 그래서 이 토론문에서는 ‘저작자 인정’ 기준 문제로 다루었다.

창작 도구로서 생성한 산출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본 '저작자의 인정'이 다루어지는 쟁점 중에서 AI가 '(2) 창작의 보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저작자의 인정'이 다루어지는 쟁점 중에서 마치 인간이 AI에게 '(4) 저작물 창작의 위탁'을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AX 시대에 저작권 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선부른 법정책학적 논의를 전개하여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희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법상 사실행위(Realakt)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저작권법상 창작행위의 본질에 대하여 천착(穿鑿)할 필요가 있다.⁹⁾ 민법상 사실행위는 법률행위와 준별(峻別)되는 것이다. 사실행위로서의 창작행위라는 것은 인간이 저작물을 구성하는 창작요소들을 최종적으로 결정(또는 통제)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창작자와 그가 작성한 저작물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연성이 개입할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 창작자의 통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성형 AI 산출물의 경우는 우연성의 개입 정도가 매우 높아 프롬프트에 입력(지시)하는 인간이 산출물의 구체적 표현을 통제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양상이 현대 예술에서도 발견된다.¹⁰⁾

현대 예술작품과 생성형 AI 산출물과의 차이점은 현대 예술의 경우 우연적 메커니즘을 예술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는 데에 있다. 우연성의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 예술작품을 저작권법상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¹¹⁾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첫째 논의 사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창작행위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논의 사항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물론 지적재산권법상 창작성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AI 기술 발전 환경 아래에서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개념과 특허법상의 그것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사실행위로서의 창작행위에는, 저작권법상 창작행위와 특허법상 발명행위가 포함된다.¹²⁾ 저작권과 특허권의 보호방법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비교법적 연구가 요구된다.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에 관하여 특허법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성 표현'임에 반해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성 있는 기술적 사상'(밑줄은 토론자, 이하 본문 및 각주에서 같다)이다.¹³⁾

9)이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법학회 공동주최, "저작권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 '창작성'을 중심으로", 「2026 학술세미나 자료집」(2026. 5. 22.) 참조

10)'새벽의 자리야' 저작권 등록 취소 결정 이후 등록신청인 측 변호사는 화가 잭슨 폴록이 우연성에 기대어 페인트를 흘리는 화법이나 음악가 존 케이지가 우연하게 발생한 관객 소음을 이용한 작품 '4분 33초'를 예로 들면서 AI 산출물에 대해 AI 이용자의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창작물임 부정할 미 저작권청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11)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저작권법과 예술철학/미학 간의 접점 모색—스타일 모방으로 인한 저작권 등 침해 문제—", 한국저작권법학회 4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주제: 인공지능 시대의 균형 있는 저작권법 질서) 자료집(2025. 11. 28.), 100면 이하 참조.

그래서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와 달리 특허법상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¹⁴⁾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감(鳥瞰)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법 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측형 AI 모델 개발자는 노벨과학상을 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화학 분야에서 甲이라는 연구자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실험 데이터 등이 제시된 실험예가 없어서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그런데 乙이라는 연구자가 해당 분야 실험 데이터 등을 예측하는 AI를 개발·출시하였다. 甲은 이 예측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실험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해당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발명의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한 甲, 그리고 실험 데이터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예측형 AI를 개발한 乙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하는 본질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로 든 사례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 존 점퍼(John Jumper)를 참조한 것이다.¹⁵⁾ 데이비드 베이커는 컴퓨터를 이용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한 학자이다. 데미스 허사비스와 존 점퍼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2(AlphaFold2)’를 개발하여 5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단백질 구조 파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AI 모델 개발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이유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형 AI 모델인 ‘알파폴드2’를 개발하여 단백질 구조 파악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은 소위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또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가 저작권법상 기본 법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 단계에서 생성형 AI의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

12)민법상 순수사실행위에는 저작권법상 창작행위와 특허법상 발명행위가 포함된다는 설명으로는, 곡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II)』, 박영사, 1992, 155면(송덕수 집필부분);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수정판, 박영사, 2004, 142면 각 참조.

13)과학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과 문화예술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1) 저작권의 보호방법상의 특징[① 무방식주의 vs 방식주의, ② 표현 보호 vs 아이디어 보호, ③ 상대적 창작성 vs 절대적 창작성], (2) 저작권의 인권으로서의 특징, (3) 저작권의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특징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저작권과 문화예술정책의 합리적인 거버넌스 정립 방안”, 2026 한국법정책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제100회 학술대회] 자료집(2026. 3. 27.) 참조.

1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등 참조.

15)노벨상 수상자 선정과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결정은 그 선정/결정의 논리구조가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한국연구재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 화학상과 노벨 생리의학상 논문들은 대부분 특허와 직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일응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해당 AI 산출물에 대하여 저작권법 테두리 바깥에서 그 법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한 보호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성립요건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파)의 적용대상은 민법, 경쟁법, 지적재산법의 적용대상과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률에서 규율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래 무형물인 지적재산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창작자 등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부정한 경쟁행위의 유형을 열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규제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 등”의 모방행위를 민법상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창작자 등의 보호와 자유로운 이용 내지 모방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표현정보, 기술정보, 상징정보 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종래 지적재산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AI 산출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AI 산출물에 대하여 안이하게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파)목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예견가능성이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판단을 긍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파)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⁶⁾

16)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8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24. 8., 101면 이하(특히 120~121, 153~158면) 참조.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박유선 교수(강원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맞서 장인의 손길과 서사를 강조했던 '미술공예운동(Arts & Crafts Movement)'처럼, 생성형 AI가 표면적 표현을 대량 양산하는 오늘날 다시금 인간 창작 고유의 진정성에 주목하게 된다. AI가 표현의 생산 비용을 0에 가깝게 낮춤에 따라, 창작의 본질적 가치는 매끄러운 결과물 자체에서 인간의 영감과 방향성, 큐레이션,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기획적 서사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혁명 이후 저작권법은 복제기술의 발달에 대응하여 표현의 무단 이용을 막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나, 표현의 생성 자체가 사실상 무한하고 무상에 가까워진 환경에서는 표현을 얼마나 촘촘히 보호하는 지보다 그 표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오히려 중요한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은 저작권 등록제도의 공시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록은 그동안 권리 행사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 절차로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인간의 창작 과정과 기여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인증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창작 과정의 이력이 남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순수하게 인간이 창작한 작품에는 그에 상응하는 두터운 보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시장에서 구별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인간 창작을 보호하려는 요구와 AI 활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인간과 AI가 협업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모적 구도에서 벗어나 창작자가 자신의 기여를 스스로 밝히고 그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구조, 즉 입증의 부담을 낮추고 이용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전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는 한, 창작 현장에서 기술과 제도는 계속 어긋난다.

또 하나의 재검토의 주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다.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표현의 산출에 인간의 노력과 시간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표현의 구현이 도구에 의해 대체되는 오늘날,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착상과 방향의 설정, 기획, 선택과 배열의 판단, 그리고 결과에 이르는 워크플로우의 설계라는 층위로 옮겨 가고 있다.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아이디어로 분류되어 보호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인간이 남기는 창작적 흔적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점이다. 이를 곧바로 배타적 권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최소한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 학습데이터의 이용 범위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1.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및 그 제한의 필요성

AI 학습 및 산출 단계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모호한 안개 속에 둘러싸여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명확하다. 실제로 AI 학습 단계의 저작권 침해에서 권리자는 개발사의 독점적 지배 영역에 있는 학습 데이터로의 이용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 검색 서비스나 해적판 데이터셋 메타데이터, 산출물의 직접 재현과 같은 우회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입증의 성패 역시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사정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산출 단계에서도 반복되어, 의거성 판단이나 사후적 집중 라이선싱을 통한 보상 배분이 이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는 권리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 보호만을 이유로 출처 공개를 무작정 강제할 수는 없는 현실적 이유 또한 존재한다. 학습 데이터의 선택과 구성, 정제·필터링 로직, 인간 피드백 데이터셋(RLHF)의 설계는 그 자체가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노하우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대세적·상시적인 공시는 경쟁 사업자로의 핵심 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므로, AI 기술 혁신을 통한 도약과 퇴락의 기로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기술 혁신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AI 개발사를 적극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매우 크다.

2.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관련 해외 입법 현황

EU AI Act 제53조 제1항 (d)호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본'을 AI 사무국의 표준 템플릿에 따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6개월 주기 갱신), 동 항 (a)호는 부속서 XI에 따라 학습·테스트·검증 데이터의 유형과 출처 이력(provenance), 큐레이션 방법을 기재한 기술 문서를 작성·최신화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요약본은 '범위 면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수준'으로만 요구되고, 전문 제108문은 AI 사무국이 저작물 단위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개별 저작물의 실제 이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사전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AB 2013 조항이 생성형 AI 개발자에게 12개 항목의 '상위 수준 요약'을 공시하도록 할 뿐이다. 그 실제 공시 역시 데이터 출처를 공개 정보, 제3자 비공개 데이터, 이용자 제공 데이터 등으로 범주화하여 개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 절차법이 이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즉, 원고가 개연성 있는 정황사실을 제시하여 소 각하를 면하면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Discovery)가 개시되어 데이터 수집 기록, 메타데이터, 학습 로그 등의 현출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은 증거 제출의 전면적 거부 사유가 아니라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한 열람 범위의 제한·통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한편, 최근 프랑스는 AI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입증 곤란을 해소하고자 지식재산권법(CPI) 개정안(일명 'Darcos 법안')을 발의하고, AI 제공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규정 신설을 추진하였다. 동 법안은 2026년 4월 8일 프랑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나, 동 법안은 2026년 4월 8일 프랑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나, 2026년 5월 12일 국민의회 교섭단체 대표자회의가 동 법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심의가 정체되었다.

3. AI 기본법상의 출처 공개 의무

AI 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 결과, 도출 기준, '학습용 데이터 개요'의 설명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체법적 한계를 갖는다. 수범 대상이 생명·신체·기본권 영향 영역으로 국한되어 저작권 분쟁의 핵심인 일반 생성형 AI는 제외되며, 단지 '개요'에 불과하고 '기술적 가능성'이라는 광범위한 유보가 붙어 있으며, 시행령 제27조 역시 세부 기재 기준을 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 법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근간에 두고 있지 않으므로 EU AI Act와 법적 지향을 달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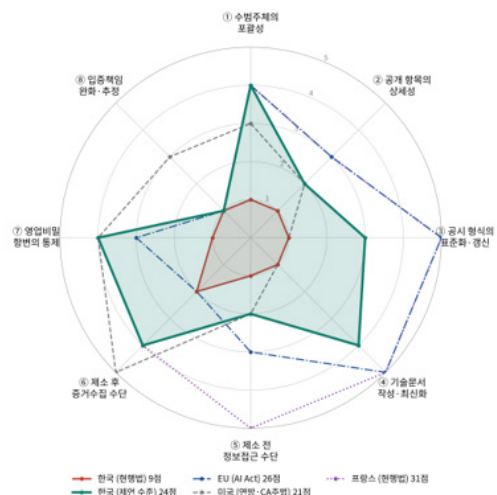
절차적 측면의 취약성 또한 심각하다. 동조 제1항 제5호의 문서 작성·보관 의무는 기재 항목과 최신화의 의무가 없고 그 목적도 안전성 증빙에 국한되어 출처 이력 관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소송 단계 역시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부재, 문서제출명령의 엄격한 특정 요구, 저작권법 제129조의2 제2항 제2호의 영업비밀 거부권 허용 등으로 인해 증거 접근이 차단된다. 나아가 AI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영업비밀을 전면 제외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법적 하자에 해당한다. 결국 현행 법제는 사전 공시와 사후 증거 접근권이 모두 결여된 상태라 할 수 있다.

4. 8개 지표를 통한 공개 수준 및 범위 분석 및 제언

유럽연합과 미국,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관련 입법에서

- ① 수범주체의 포괄성,
- ② 공개 항목의 상세성,
- ③ 공시 형식의 표준화·갱신,
- ④ 기술문서 작성·최신화,
- ⑤ 제소 전 정보 접근 수단,
- ⑥ 제소 후 증거 수집 수단,
- ⑦ 영업비밀 항변의 통제,
- ⑧ 입증책임의 완화·추정이라는 8개 요소를 추출하여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각국 저작권 법제는 사전적 공시와 사후적 증거 접근을 상호 대체재로 운용한다. 미국은 사전 공시 수준이 낮으나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EU는 사후 증거개시 수단이 약한 대신 사전 공시 및 내부 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EU형 공시 체계에 자국 절차법상 증거 확보 수단을 결합하여 양 축을 모두 확보한 사례이다. 반면 한국은 두 축이 모두 결여되어 있어, 단순히 규제 강도의 문제를 넘어 권리자의 법적 구제 경로 자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본법상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의 적정 범위와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EU 수준의 고도화된 공개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AI Act 제53조 제1항 (c)·(d)가 규정하는 저작권 정책 수립 및 학습콘텐츠 요약본 공개 의무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DSM Directive) 제4조에 따른 상업적 TDM 면책 및 권리유보 체계를 전제로 구성된 반대급부이다. 그러나 한국 저작권법상 TDM 별도 면책 규정 및 권리유보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제가 되는 이용허락 체계의 정비 없이 EU 수준의 공개 의무만을 이식하는 것은 입법적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공중을 상대로 한 대세적·상시적 공시는 경쟁업자에게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호가 야기되지만, 내부적 기술문서 작성·보존 의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경쟁상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소송 단계에서의 정보개시 또한 침해의 개연성이 소명된 개별 사건에 한하여 열람 주체를 제한하므로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와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술문서 작성 및 최신화를 통한 기록 의무는 강화하여 입증 기반을 확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소송 중 정보제출명령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전면적 거부를 제한하고 공개 대상과 범위를 소송물 관련 정보로 한정·제어하는 방식으로 권리자의 실효적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을 면책할 명확한 규정과 권리자의 거부 의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 적법성 판단이 불확실하다. 산출 단계 역시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공개되지 않아 권리자가 실질적 유사성 외에는 침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특히 민사소송 및 저작권법상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절차적 수단이 없어,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함에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을 통해 개발사에게 학습 데이터 기록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증명 대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특허법의 제도를 이식하여 침해 증명에 필수적인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에 제출하게 하되 열람 범위를 제한하고, 상생협력법의 자료 보존 및 현장 조사 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는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필, 붓, 로봇,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창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는 인간의 창작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할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차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단계까지 가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과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범위의 국면에 이전과는 사뭇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영역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용으로 수집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이용허락이 불가하다면 사후적으로 보상금지급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 학습과 관련해 침해혐의가 있는 AI 기업에 대한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 제40조의6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7에서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㉔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㉕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㉖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㉗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㉙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㉚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㉛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㉜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㉗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9.]

[종전 제40조의6은 제40조의13으로 이동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6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7

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㉔ 당사자 또는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㉕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㉖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㉗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8

제40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㉙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㉚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㉛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㉔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㉕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9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10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㉓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㉔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㉕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㉖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㉗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㉘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㉙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㉚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㉛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㉜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㉝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11

제40조의1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 · 방법 · 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원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㉒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㉓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㉕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㉖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12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이유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최근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학습데이터의 이용과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빅테크 기업과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이 강조되면서, 제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문화 향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작물이 사회에서 이용·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지식 공유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도 권리자와 AI 기업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떠한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선택이 결국 일반 국민의 문화·정보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AI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하여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경로는 확대되었지만, 여러 OTT 서비스와 음악·웹툰·전자책 등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경제적 격차가 콘텐츠 접근의 격차, 나아가 문화적 경험과 정보접근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나, 왜 일정한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선택하는지, 합법적인 이용에 필요한 비용과 접근조건은 적절한지,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 보호의 강화가 사회 전체에 어떠한 비용을 발생시키는지도 저작권 정책의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최근 해외 학계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희소성’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문제의식도 주목할 만하다.¹⁾과거에는 창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콘텐츠가 생산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고, 생성형 AI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모든 창작적 결과물에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호 실익이 크지 않은 영역까지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후속 창작과 정보 이용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 저작권법의 목적과 보호의 정당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또 하나 고려할 문제는 저작권 정책 형성 과정에서 특정 권리자의 이해가 전체 창작자의 이해로 과대 대표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결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대규모 콘텐츠 기업, 전문 창작자, 독립 창작자, 일회적으로 저작물을 생산하는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AI 시대의 저작권 정책 역시 ‘권리자 대 AI 기업’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접근하기보다 다양한 창작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Mark A. Lemley, "IP in a World Without Scarcity," 90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460 (2015); Matthias Leistner & Rebecca Jussen, "The Flattening of Creative Industries? A Closer Look at Copyright Protection of AI-Based Subject Matter and the Risk of Entertainment Bubbles," Zeitschrift für Geistiges Eigentum (ZGE), Vol. 17 (2025); 中山一郎 外, 「AIと知的財産権: 財の稀少性なき時代の知的財産法制度の研究」, 日本学術振興会 科学研究費助成事業・基盤研究(A), 課題番号24H00131, 2024-2028年度.

이러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연구의 방법론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이용 등 제한·예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외국 판례의 법리를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 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이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해석론뿐 아니라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의 관점에서도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범위, 투명성, 보상 문제는 분명 중요한 현안이나,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변화의 폭을 생각하면 저작권 정책의 과제를 AI 학습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규율을 마련하는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AI 시대에는 기존 저작권 제도의 각 조항과 정책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입법평가’의 관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33조, 제33조의2 등 시청각장애인 관련 조항 등은 입법 당시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에 따른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²⁾ 제한과 예외 조항의 수혜자들에게 있어, AI와 결합된 기술은 정보와 교육, 문화 분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AI와 저작권 제도의 관계를 논의할 때에는 ‘AI가 어떤 저작물을 학습했는가’라는 문제뿐 아니라 ‘AI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권 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어떻게 더 잘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저작권법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여 별도의 권리나 규제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만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AI가 창작과 이용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 규정을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보호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반복될 필요가 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를 반드시 저작권법의 ‘한계’나 ‘문제’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제사적으로 보더라도 지식재산권은 다른 법영역과 고립되어 발전한 것이 아니다. 민법상 소유권 개념이 발전한 이후 무체물에 어떠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되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4. 29., 의안번호 18710,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등 참조.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저작권법과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 실정법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AI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저작권법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문제는 저작권법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계약이나 약관 규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의 성명·음성·이미지 등 인격이 반영되어 있는 요소의 이용이나, 사업자가 경쟁자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법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모두 저작권법의 권리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타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도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법이 어디까지 담당하여야 하는지를 정교하게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계, 저작권법과 민법의 경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법률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각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고 보호의 논거나 시장에서의 효과가 중첩되어 가는 상황에서, 권리의 범위와 제한들 간에도 적절한 균형과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³⁾

3)Kur A, Lee N and Tischner A, Practicing Fairness Erga Omnes – Design Law as an Example, in Fairnes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earching for a Uniform Concept (Edward Elgar 2024), ch 10.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이일호 연구교수(연세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가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작을 대체하고 있고, 이로써 창작물과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편으로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AI에 의한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관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자주 발견된다. 이들은 저작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에 어떤 도전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창작과 기계 생성 사이에서 질적 차이가 없다면, 더욱이 그 질적 차이를 저작물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없다면, 이는 창작성 개념에 변화가 필요한 모멘텀임을 시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창작성 기준의 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특히 기계가 생성한 결과가 인간의 저작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텍스트, 이미지, 멜로디 등(예를 들어 짧은 문구, 단순한 도형, 상투적인 선율 등)에 대한 보호는 AI 시대라는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¹⁾ 창작의 여지나 폭이 큰 저작물에서 여전히 인간 창작과 기계 생성의 차이가 있는 만큼 창작성의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인간 창작만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기본원리가 고수될 수 있다. 물론 AI가 이런 허들마저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필요하겠지만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²⁾

둘째, “AI 예외주의”가 줄곧 유지될 수는 없다. 현재의 상황은 AI 예외주의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AI 학습에 대한 여러 판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향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창작자보다는 AI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다소 많은 것처럼 보인다.³⁾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변형성/혁신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광범위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의 다른 영역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보호라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역시 저작권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바이브 코딩을 통해 충분히 유의미하고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강력한 보호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은 부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AI 예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즉, 대학교재 pdf의 유포는 나쁜 것이지만, AI가 대학교재를 학습해서 이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AI 시스템에 유저가 업로드한 교재로 그 요약본이나 발표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저작권 제도 자체가 가진 규범력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창작성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면 갖추어진 것으로 보지만, 창작의 여지가 적을수록 충족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지고, 창작성을 인정했을 때 발생하는 제한적인 표현에 대한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Jan. 2025, pp. 18-21에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창작성을 갖출 수 없다고 설명한 것도 비슷한 취지라 생각된다.

3)Bartz v. Anthropic PBC, 787 F. Supp. 3d 1007 (N.D. Cal. 2025); Kadrey v. Meta Platforms, Inc., 788 F. Supp. 3d 1026 (N.D. Cal. 2025);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765 F. Supp. 3d 382 (D. Del. 2025); LG Hamburg, Urteil vom 27.09.2024 – 310 O 227/23, GRUR-RS 2024, 25458 – LAION; LG München I, Urteil vom 11.11.2025 – 42 O 14139/24, GRUR 2025, 1917 – GEMA./OpenAI; LG München I, Urteil vom 31.07.2026 – 42 O 763/25 – GEMA./Suno AI; ANI Media Pvt. Ltd. v OpenAI OpCo LLC, I.A. 45300/2024 in CS(COMM) 1028/2024, Delhi High Court, judgment dated 24.07.2026 등 참조.

또 다른 예로 남의 것을 베끼는 행위는 남의 성취에 편승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이룬 성취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AI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창작에 대해 가치를 덜 인정하게 된다면, 대중은 권리처리가 복잡하고 표절/침해 우려가 있는 인간 창작보다 기계 창작에 의존할 수 있고, 이는 창작 보호를 강화해온 저작권법, 그보다 저작권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AI-저작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AI 발전 상황에 따라 각국이 블록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AI 산업이 발전한 국가와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 국가 사이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더욱 복잡한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산업 중 어느 분야가 발전했는지, 콘텐츠 산업 중 어떤 분야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지, 어떤 창작 분야가 이른바 로비력을 갖추고 정책결정과 제도형성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저작권 제도가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다. 이는 비단 각국의 입장에 머물지 않고 다자간 저작권 질서가 유사 입장의 저작권 동맹으로 재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단독 행동을 하거나 일본과 함께 유연성/전략적 모호성 지향 그룹을 형성할 것이고(무엇을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취사선택), 중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AI 예외주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유럽 지역은 저작권 전통을 고수하는 태도를(권리유보 강화 + 라이선스 모델), 여타 국가는 개발도상국 지위와 저작권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제도는 물론, 법해석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제도와 해석의 편차는 저작권 제도의 파편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넷째,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은 거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역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지정학적, 지경학적 및 외교적 선택이 저작권 제도 변화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수출국이며 동시에 외국의 AI 모델에 크게 의존하는 AI 이용국이다. 이에 따라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아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기민하게 설정·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인간 창작의 유인과 합리적 이용시장을 기준선으로 삼고, ② 학습 데이터의 적법한 접근, 출처 기록(투명성), 및 권리유보를 보장하며, ③ 비생성 목적의 분석 및 비영리 연구를 상업적 생성과 시장대체적 이용과 구별하고, ④ 국제적 수용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공정이용의 개방성을 살리면서도 그 판단요소를 구체화하고, 출처가 불법이거나 기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줄곧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외국 제도를 그대로 수입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며, 국제적인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⁴⁾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이라 생각된다. AI가 저작권 제도에 남긴 과제는 적지 않다.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한편 미국 저작권청은 현 단계에서는 기존 공정이용 법리와 자발적 라이선스 시장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특정 분야에서 시장실패가 확인될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와 같은 표적화된 개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May 2025, pp. 74-78, 85-108, especially pp. 105-108.

첫째, 저작권 실무에서 AI 이용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당장 저작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저작권 관련 여러 사실 판단에 AI가 동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저작물의 창작성을 평가하는 것,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것, 침해에 따른 시장 영향을 예측하는 것, 공정이용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개별 사실을 조사하는 것,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식인 통상 사용료를 산출하는 것 등이 AI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저작권 감정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감정 결과는 재판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법원이 감정 결과를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인간 감정인에 의한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무엇보다 문제된 저작물이 얼마나 AI의 영향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AI가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 관련 판단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법이 지니는 인간 중심성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둘째, 인간 창작물에 대한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고, 여기서도 AI가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향후 라이선스를 통해 AI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시장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I 사업자가 저작물을 하나하나 라이선스받는 방식이 보편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한번 학습한 것만으로 사용료 지급이 끝난다면 창작자에게 만족스런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떤 저작물을 학습했고, 이후 이용했는지, 생성 결과에 창작물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창작자 역시 자신이 무엇을 창작했는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길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창작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취급하는 미래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 등록은 단지 형식적인 등록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AI를 통해 보호 가능성을 평가받아야 할지 모른다. 이는 위 첫째에서 논의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반드시 AI에 의해 (인간) 창작성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등록하려는 저작물이 보호될 가능성이 있는지 안내하거나 해당 안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는 있다.

셋째, 더 근본적으로 AI는 없던 문제를 만들어냈다기보다 우리 저작권법에 누적되어 있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측면이 있다. 낮은 창작성 기준과 보호범위의 불명확성, 권리와 제한의 복잡한 경계, 고비용의 개별 허락 구조, 집중관리의 한계, 권리자/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디지털 유통에서의 입증 곤란은 모두 AI 이전부터 존재했다. 대규모 학습은 이 문제들을 산업적 규모로 증폭시킨 것뿐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AI 특례’를 덧붙이는 데 그치지 말고, 저작권이 무엇을 보호해서 어떤 시장을 만들 것인지, 인간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과 공공의 지식접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허락/집중 관리-책임-구제수단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당연하게도 AI는 저작권 분야만 직면한 현실은 아니다. 여타의 법영역에서도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인데, 이들 모두를 여기에 망라하기는 어렵고 토론자의 능력 밖이기도 하다. 적어도 저작권법과 영향을 주고받는 법영역만 질문에 열거된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는 저작물과 함께 AI 모델 학습에의 이용이 가장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의 권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 자체가 재산이라는 관념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동의를 전제로 이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들에 대한 규제와 개인에 대한 후견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가 지닌 경제적 가치가 개인의 재산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데, 이는 아마도 개별 개인정보의 가치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고, 또 자기결정권이 주로 인격권으로 관념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AI 학습, 특히 모델 학습에 있어 개별 저작물이 지니는 의미나 가치는 개인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모델 학습이 저작물의 패턴‘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학습 역시 경향성이나 기타 통계적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다. 저작권 영역에서 라이선스를 통한 AI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서도 단지 동의나 부동의라는 관념 외에 개인정보의 경제적 측면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금전적 반대급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관념이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후견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해 권리 인정과 침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축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옴니버스식으로 다루는 법영역이다. 따라서 저작권법과의 접점이 많음에도 몇몇 포인트를 짚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AI 모델, 시스템, 서비스 등에 요구되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통의 프레임워크가 나올 필요가 있다. 여기서 투명성이란 현행 AI기본법에서 전제하는 AI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⁵⁾ AI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는 AI의 책임성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투명성은 비단 현재 권리로서 승인된 것뿐 아니라 앞으로 보호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필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터의 출처와 경로에 대한 기록을 게을리한다면, 향후 AI 관련 분쟁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않아 그 폐해를 사회와 개인이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AI 모델에 대한 안전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여타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⁶⁾

셋째, 약관법의 관점에서는 유저가 업로드하거나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자기 모델의 학습에 이용할 권한뿐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해 학습하도록 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조항이 과연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 제3자 학습 허용은 유저가 통상 예상하기 어렵고, 권리 및 정보 통제를 크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조건과 구분하여 목적, 수령자 범주, 대가,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선택권(유보 가능성)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용 철회 이후의 처리, 이미 학습된 모델에 미치는 효과 및 재허락의 범위를 투명하게 정하지 않은 조항은 불공정성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

넷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AI 관련 투입물(특히 데이터셋)과 산출 인프라 자체의 보호가 문제된다. 정제 및 라벨링에 상당한 투자를 한 학습용 데이터셋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나 성과도용 규정, 비공개 상태라면 영업비밀 규정에 따라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모델의 가중치, 이른바 학습 레시피, 평가 데이터와 안전조정 기법도 그 공개성, 비밀관리성 및 경쟁상 이용 방식에 따라 보호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와 모델에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성급히 부여하면 사실, 아이디어 또는 공공영역에 대한 과도한 독점과 상호운용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의 부당성과 투자회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법익만 보호해야 한다.

5)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참조. 단, 동법 제34조는 고영향 AI의 학습데이터 개요 등 설명을 규정하기는 한다.

6)이런 의미에서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 제53조에서 정한 저작권 보호정책의 수립과 투명성에 관한 의무는 저작권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너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7)약관법 제6조 등 참조.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우리 저작권법은 ①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권리자 측면)와 ②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이용자 측면)를 수단으로 하여, ③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저작권 제도의 역할이 이러한 법의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 ①과 ②는 ③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두 수단이므로, 저작권법의 과제는 양자의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놓입니다. 이 과제는 사진술의 등장 이래 복제기술과 인터넷 전송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욱 첨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AI 문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메라가 예술사진을 창작하는 도구일 수 있고 복사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듯,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AI가 창작의 '도구'로 사용되는 한, 그 창작물은 인간의 저작물이고, 따라서 저작권법은 그에 대하여 원래 예정하였던 바와 같이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가 AI가 도구로 서만 사용된 인간의 저작물이고, 어떠한 경우는 인간의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로 볼 것이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시대에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창작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 '저작물성'은 저작권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사례별로 판단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도 실무에서의 판단들의 축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제적 측면은 아니지만, 실무상 창작자로서도 분쟁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권리임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자신이 어떠한 과정으로 창작을 하였는지 기록하는, (마치 연구자의 "연구노트"와 유사한) "창작노트"가 필요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훈련 데이터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무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와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계를 설정 짓는 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TDM에 대한 법제화 주장, 인공지능의 훈련 데이터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비자발적 라이선스 제도로 운용하자는 주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법제화)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DM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분쟁 발생 시 그 적용에 관한 해석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만능의 열쇠가 되지 못하며, 이는 최근의 해외 소송들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건으로 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기고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AI 시대에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해 정비 내지 검토할 과제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 AI

산출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참칭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산출물인지, 인간의 저작물인지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데, 예컨대 AI 모델이 AI 생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이른바 AI의 근친교배)의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¹⁾

만약 AI 산출물이 학습데이터 등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그 복제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자신의 저작물로 참칭하여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권(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²⁾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AI 산출물을 가정할 경우 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저작물로 참칭하여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더라도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³⁾

사회적 관점에서 후자 사례의 해악이 전자의 사례의 해악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후자의 사례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칭자가 저작권 등록 단계로까지 나아가면 전자 사례뿐 아니라 후자 사례에서도 거짓등록죄(저작권법 제136조 제3항 제2호)⁴⁾로 처벌할 수 있지만, 등록 이전의 단계에서도 거름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작자 명예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목적⁵⁾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는 저작권법의 규율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측면에서는 앞선 위 두 사례를 구분하는 것, 즉 어떠한 AI 산출물이 누군가의 저작물의 복제물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저작자가 직접 나서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후자의 사례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떠한 동기에서든 인간의 저작물을 AI가 창작한 것이라고 참칭하여 공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저작자 명예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작권법이 규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저작자 본인이 참칭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Ahmed Elgammal, "AI-induced cultural stagnation is no longer speculation – it's already happening", The Conversation (2026. 1. 22.), <https://theconversation.com/ai-induced-cultural-stagnation-is-no-longer-speculation-its-already-happening-272488>.

2)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3) 홍대운·이주연,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 Feilin Law Firm v. Baidu 사건과 Tencent Dreamwriter 사건을 중심으로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5권 제1호(2021), 108면.

4)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26. 2. 10.>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예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또한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자 아닌 “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사용자로서의) 법인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⁶⁾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현행의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로는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경우 인간의 저작물을 다른 타인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AI 등 인간 이외의 것이 창작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규율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하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는 비단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약관법 등 여러 법분야와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작권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이 AI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분쟁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 이외의 관련 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AI 문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AI가 제기하는 여러 저작권법적 쟁점들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거기에 충실하면서, 타법과의 관계에서는 AI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⁷⁾

예컨대 앞서 논의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에서 더 나아가, AI 산출물을 게시하는 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할 것을 의무화할 수도 있을 텐데, 이는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율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⁸⁾)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이용자의 이용단계에서의 표시 내지 고지의무에 대하여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향후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이에 대한 입법으로 나아갈 경우 인공지능기본법과 저작권법상의 규정(예컨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경우 그 규정) 간의 조화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이외의 저작권법을 포함한 여러 개별법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 법 상호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AI 훈련 데이터에는 저작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비저작물, 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6) 만약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자 아닌 “자”는 AI, 동물과 같이 저작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한다면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확장해석금지 내지 유추해석금지)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7)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도 AI가 야기하는 각자의 고유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충실하면서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7호

경우 등 다양한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임의로 그리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용권능 확보 문제가 중요하게 될 텐데, 이때 관련 개별법에서 통일적으로 모두 옵트인 방식을 취하거나, 모두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전웅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현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가 부담하는 과제는, 인간 창작의 보호와 활성화라는 본래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AI 기술의 발전 역시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는 이중적 임무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법 제1조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상, AI를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수용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AI 학습·산출이라는 새로운 이용형태가 인간 창작의 유인구조를 잠식하지 않도록 양자의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이중적 임무의 관점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첫째,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이다. AI 산출물이 저비용으로 대량 생성되어 인간 창작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현상은, 개별 저작물의 모방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의 경제적 유인 자체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미국 *Kadrey v. Meta* 판결이 지적한 시장희석(market dilution)의 문제의식), 저작권 제도가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위험이다(다만 직접적 대체가 아닌 시장희석의 문제는 노동법, 경쟁법 영역이라는 반론도 가능). 둘째, AI 학습·산출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적법한 이용의 경로를 제시하는 역할이다. 학습단계의 적법성 기준, 산출단계의 침해 판단 구조,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예측가능하게 정비되어야 라이선스 시장의 형성과 기술투자가 모두 가능해진다. 셋째, 규율 방식에 있어서 전면적 금지와 전면적 면책의 양 극단을 지양하고, 위험산출의 정도와 통제가능성에 비례하여 책임과 부담을 배분하는 균형자의 역할이다. 인간 창작의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며, 적법한 데이터 이용시장의 형성과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양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2.1. 창작적 기여가 낮거나 결여된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창작성 수준의 상향 검토

사건으로는 창작적 기여가 낮거나 결여된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가 AI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현재 생성형 AI에 의해 손쉽게 대량으로 생성되는 산출물로 인하여 기존 창작자들의 지위가 크게 위태로운 상황이다. 창작적 기여가 낮거나 결여된 AI 산출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 수준에서 프롬프트만으로는 이용자를 산출물의 저작자로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인간적 통제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USCO,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2025. 1.), 이러한 산출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혼란과 분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 창작 유인의 제고라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인간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창작성의 수준을 일정 정도 상향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례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 이른바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누구든지 AI 도구를 이용하여 일응 창작성 있는 외관을 갖춘 산출물을 사실상 무한정 생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낮은 창작성 기준이 인간 창작물과 AI 산출물을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수준의 산출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범람케 하여 인간 창작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창작성 수준의 상향은 저작물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의 변경이므로 그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AI가 개입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을 특정하여 주장·증명하도록 하고 그 기여의 실질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2. AI 산출물로 인한 권리침해 발생 시 책임의 소재와 구조

AI 산출물에 의한 권리침해 이슈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법리, 즉 의거성(access)과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의 판단 구조에 의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AI 모델의 블랙박스적 성격으로 인한 의거성 증명의 곤란과 AI 개발자(서비스제공자)·AI 이용자로 총칭화된 행위주체 구조를 고려하면, 침해자 적격은 피침해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포함 여부, 프롬프트의 침해유발성, 암기의 정도와 재현의 안정성, 필터링 등 통제조치의 존부, 권리자 통지 후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이 GEMA v. OpenAI 판결(LG München I, 2025. 11. 11. 선고, 42 O 14139/24)에 이어 음악 생성형 AI 서비스에 관한 GEMA v. Suno 판결(LG München I, 2026. 7. 31. 선고, 42 O 763/25)에서 연이어 "학습데이터의 AI 모델 내부 복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 안에 저작물이 재현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면 모델 자체에 저작권법상 복제가 성립한다는 위 논리는, 모델 가중치는 학습 과정에서 습득한 패턴과 특징의 산물일 뿐 저작물의 사본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복제물성을 부정한 영국 Getty Images v. Stability AI 판결([2025] EWHC 2863 (Ch))과 대비되며, AI 학습방법론과 저작권법상 복제(reproduction)·고정(fixation) 개념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 정의와 램(RAM)에의 일시적 적재까지 일시적 복제로 포섭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모델 내부 복제라는 이론 구성이 한국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암기(memorization)는 모델의 학습방식, 데이터셋의 유형과 특성, 학습데이터의 중복도, 프롬프트 및 디코딩 방식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경험적 현상이자 정도의 문제이라고 생각되므로, 단순한 프롬프트에 의한 안정적·반복적 재현이 실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재현가능성에 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 책임을 통하여 복제·고정 개념의 과잉 포섭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석은 현재 CJEU에 계속 중인 Like Company v. Google Ireland 사건(C-250/25)의 결론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구조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비의도적 암기가 문제되는 일반 목적 모델에 대하여 "통지 후 합리적 조치"(notice and takedown)를 내용으로 하는 책임 제한 특례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리자가 보호 저작물, 침해 산출물, 재현 프롬프트 및 침해 근거를 특정하여 통지하면, 서비스제공자가 프롬프트 필터·출력 필터 등 합리적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면책 요건으로 하되, 특정 저작물의 모방을 의도한 모델이나 통지 후 반복 침해를 방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 OSP 책임제한 규정(저작권법 제102조 이하)은 수동적 중개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생성형 AI의 동적 산출구조에 그대로 이식하기 어려우므로, 생성형 AI의 특수성에 맞추어 재구성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3. 학습데이터의 이용 범위 및 투명성 확보 방안

학습데이터의 이용 범위에 관하여 보면, 현재의 국제적·국내적 상황에서 상업적 이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TDM 예외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EU에서도 CDSM 지침 제4조의 TDM 예외가 생성형 AI 학습 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독일 GEMA 판결은 암기를 수반하는 학습에 대하여 TDM 예외의 적용을 부정하는 제한적 해석을 취하였으며, opt-out 메커니즘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방식요건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학술적·비영리적 목적의 TDM 예외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U CDSM 지침 제3조가 연구기관 등의 학술 목적 TDM에 대하여 권리유보를 허용하지 않는 강행적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연구 목적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학문 연구와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명성 확보의 경우, 저작권 차원의 투명성 확보는 결국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학습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AI 사업자에게 일반적·사전적으로 학습데이터 목록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공개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술적·실무적 난점을 고려하면, 전면적 목록 공개 의무는 규범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다. 다만 침해 소지가 일정 정도 소명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학습데이터의 구성과 이용에 관한 증거개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국 Getty Images 사건에서 원고가 영국 내 학습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학습단계 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학습 과정에 관한 증거는 전적으로 AI 사업자의 지배영역에 있다. 현재 특허법(개정 추진), 상생협력법(개정)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진술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강화된 형태의 증거개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저작권법 영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3.1. 데이터 스크레이핑 관련 정보통신망법·부정경쟁방지법의 연계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대부분 데이터 스크레이핑(웹 크롤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집 대상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포섭되지 않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므로 저작권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다. 이 지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파)목의 성과도용 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데이터 스크레이핑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분을 일정 정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써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의 민사판결은 결국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대법원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부정한 것과는 상이한 방향의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즉 동일한 데이터 수집·이용행위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적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관점에서는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행 법제상 존재한다.

결국 학습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하여는, 창작적 표현과 데이터베이스 제작 투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접근통제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관련법(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민법상 불법행위책임 포함)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각 법률은 보호법익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이 다른 법률에서의 위법 평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된다. 아울러 웹사이트 이용약관으로 크롤링을 금지하거나 TDM 권리유보를 표시하는 실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 조항의 사법상 효력 및 약관법상 통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2.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물과 개인정보는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양자 모두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수집·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서, 실제 학습 국면에서는 같은 데이터셋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가명처리·익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 규제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법제는 저작권법과는 독자적인 방향으로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법제는 사전적·행정적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반면 저작권법은 사후적·사법적 구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규율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양 법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예컨대 공개 데이터의 스크레이핑)에서는 상호 정합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은 오늘날, 저작권 제도는 단순히 과거의 권리를 지키는 방어벽을 넘어 '인간 고유의 창작 가치 보호'와 '기술 혁신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두 축을 연결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면 인간 창작 생태계가 황폐화되거나, 반대로 기술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인간 창작자의 권리 명확화 및 실효적 보호

첫째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전제로 합니다. AI 시대에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입증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간이 분명한 창작적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인 수정·편집·조합을 거쳤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작 프로세스(작업 이력)를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보조적 시스템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상 조치 및 데이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AI 학습에 기존 저작물이 무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창작자들의 우려가 큼니다. 무조건적인 법적 면책(TDM)보다는,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거래 및 라이선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설명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AI 서비스 제공자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등 투명한 표기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2. AI 활용을 통한 창작 및 산업 발전 지원

AI는 창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간의 상상력을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공정이용(Fair Use)'의 합리적 해석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공공 데이터 및 '클린 데이터' 활용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정비하고, 기업들이 합법적인 '클린 데이터' 기반의 툴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이 기술의 속도를 완벽히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직된 법 개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문화예술계, AI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전략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입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AI가 일상적인 창작 도구로 자리 잡은 현시점, 저작권 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단순히 '이론적 논

의'를 넘어 산업의 실무적 표준(Standard)을 정립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이용 안내서 등 최신 규범체계를 바탕으로, 보면, 첫째, 학습데이터의 이용 범위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투명성을 위해 AI 모델 개발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 밝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면 공개가 기업 비밀이나 개인정보 보전과 충돌할 경우, 적어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메타데이터 요약본'을 공인된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단계적 개방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권리 침해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를 AI개발사 책임과 관련하여 학습 단계에서 필터링 시스템(Overfitting 방지) 구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특정 작가의 기법과 구도를 그대로 모방해 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의거성의 재정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원저작물을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몰랐더라도,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그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의거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문제대응시와 같이 .플랫폼의 '면책 요건(Safe Harbor)'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침해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해당 출력을 차단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제도를 AI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작적 기여가 낮거나 결여된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창작성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저작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드락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성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 및 등록 기준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목적성 있는 수정, 반복적 개선, 편집 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AI를 도구로 쓰면서 행한 판단과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이력 기록(Log)' 등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것인지도 검토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 영역(Public Domain)으로 규정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여가 전혀 없는 순수 AI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로 남겨두어, 인류 전체의 문화적 자산이 풍요로워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인간의 창작과 AI 창작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나 합성 오디오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 등과 연계하여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막는 정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학습하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드는 전 과정은 단순히 저작권법 하나만으로 규율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작권법은 오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표현'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비즈니스의 실제 분쟁은 데이터 자체의 재산적 가치, 개인정보 오남용, 독점 약

관, 무단 모방 등 다차원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저작권법과 타 법률간의 정교한 연계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과의 연계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므로, 특정 작가의 화풍, 데이터베이스의 원천 데이터,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무단 도용되어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부경법 제2조 제1호 (카)목(성과물 무단 사용 행위)의 적극 활용하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보완이 됩니다. 비록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규모 원천 데이터 세트나, 특정 창작자의 독창적인 '화풍(Style)'이라 할지라도, 이를 고의적으로 집중 학습시켜 유사한 상업적 서비스를 출시하는 행위는 부경법 위반으로 규율하여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연계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대규모 텍스트나 이미지 중에는 개인의 사생활, 민감정보, 초상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만 따질 뿐, 그 데이터 안에 담긴 정보 주체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 가이드라인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업이 웹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공개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얼굴 이미지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명처리(Anonymization)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AI 산출물에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이 유출되거나 딥페이크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삭제 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권'을 연계하여 즉각적인 필터링과 파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과의 연계

AI가 허위 사실을 학습하여 사실과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내거나(명예훼손), 무단으로 시스템에 침입해 저작물을 굶어가는(크롤링) 행위를 저작권법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robots.txt 등으로 AI 학습 목적의 접근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규율합니다. 또 AI가 생성한 산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망법상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임시조치'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는 행정적 조치와 연계해야 합니다.

4.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는 회사의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곤 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저작권법이 약관 계약 내용에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 소관의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저작권자의 본질적 권리(지식재산권)를 무상으로 영구히 귀속시키는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1주제] **종합토론**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좌장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토론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박준우 교수(서강대학교)

신재호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임원선 초빙교수(성균관대학교)

조형찬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희경 교수(홍익대학교)

차상욱 교수(경북대학교)

최상필 교수(동아대학교)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의 인간 중심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제도는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 바(저작권법 제1조), 이와 같은 저작권 제도의 목적 자체는 AI 창작물 보호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AI 산출물에 대한 보호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 목적에 부합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제도의 역할은 다양한 문화 창작물의 창출 분위기 조성 과 이를 위한 창작 노력에 대한 상응한 보호인데, AI 창작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에서의 보호 체계, 특히 저작권법의 근원인 인간 창작의 장려와 보호를 토대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은 'AI 창작을 장려하면서 인간 창작 및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현행 인간 창작 중심의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AI 창작을 전혀 별개의 법 체계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특례의 형태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자는 AI 창작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으로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그리고 기술 발전 적응성이 높은 입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도로서 입법적 혼란과 기존 법 체계와의 혼선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법 형태로 먼저 시도한 다음 전자와 같은 입법으로 서서히 대체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자와 같은 입법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일부 다뤄지고 있듯이 현행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법 체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 학습·산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들은 저작권법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제반 법률들 전반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공통된 기준을 정한 다음, 개별 법률들에서는 각각의 특례를 두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서 투명성 의무에 관한 원칙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 또는 출처표시 의무 규정(제37조) 등에

동 규정의 준용 및 추가적인 필요 사항을 입법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특례 형태로 입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외의 개별 법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법률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순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6조¹⁾참고), 다만 이는 저작권법 영역에서 단독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핫이슈가 된 것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바둑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탄사를 자아내고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인지 또는 학문적 관심인지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I기술과 가장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저작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AI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창작활동과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같은 창작법인 특허법의 특허발명이 인간의 창작 관여에도 산업재산권이라는 점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게 창작과정이나 창작활동에 AI가 많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저작권제도와 밀접한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간의 창작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시점이 될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 하나의 수단 또는 도구로서 제품과 같은 대접을 받게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작권제도의 유지 또는 더 정교한 인간 창작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명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제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와 “악의의 수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는 법률적 의미의 “알고 있다” 또는 “모른다”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의와 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은 정밀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몇몇 국가나 회사,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해지고 인간의 창작성처럼, 오히려 더 나은 성과물을 내고 있어서 규범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출물을 인간의 창작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보상체계 내지 회수 기회를 주는 저작인접권 제도의 취지나 규정내용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 법제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를 참고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운영이익을 받는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를 책임법의 영역에서 책임주체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현재의 우리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학습, 산출물들은 창작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통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다른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연계성을 무리하게 엮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 제도의 정체성을 흐트리는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1)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제도의 목적을 “저작자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저작권제도의 이러한 목적론은 (1) 자연적 정의에 부합 (2) 경제적 인센티브 (3) 문화발전 도모 (4) 사회결속과 통합 (5)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6) 문화산업의 발전 역할론으로 확대되어 논의되어 옴.

2) 이러한 저작권의 제도적 이념을 구현하는 구체적 제도적 수단들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해 지고 그 외연이 확대되기도 하고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매체중심의 저작권법이 콘텐츠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저작권 제도는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발전하여 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3) 모든 법제도 설계의 대 원칙 중의 하나로 ‘기술 중립성 원칙’¹⁾이 작용하여 왔다. 지금까지 이 원칙은 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법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였다. 하지만 AGI 시대에는 이 원칙이 법학의 시차와 공학의 맹목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앞으로는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공학적 설계(Architecture) 자체가 이미 법이자 정치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학의 시차를 공학의 실시간 통제 기술로 메우는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 OECD가 2022년 ‘OECD AI 시스템 분류 프레임워크’²⁾를 설계하면서 ‘사람과 행성(People & Planet)’을 분류 체계의 최우선이자 중심에 배치한 이유는, AI 기술 발전의 목적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나 ‘경제적 효율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인간 중심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적·정책적 선언에 기반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이 기술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간중심’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해온 저작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AI 활용의 효율성과 AI를 활용한 창작관행이 확산되더라도 ‘인간 창작자주의’대원칙을 고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 중심주의에 기초해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면 인간의 문화와 예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³⁾.

나. AX 시대가 초래한 변화

저작권 제도는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창작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 ‘창작은 편집이다’⁴⁾라는 평가와 IP법은 ‘창작 보호법’에서 아이덴티티(Identity)보호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지브리풍

1) 기술중립성이란 “법은 특정한 기술 수단을 우대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기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기술이 가져오는 ‘효과와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법 원칙이다. (예: 종이 문서든 전자 문서든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

2) OECD, OECD Frame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AI Systems: a tool for effective AI policie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22 February 2022

3) 이해완,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창작적 기여’” 『산업재산권』 제79권, 2024.

4) 김정운, 에디토로지 : 창조는 편집이다, 21세기 북스 2015. ; 박준우, “인공지능(AI)활용 저작물의 편집저작물성과 구성요소의 선택·배열”, 『IP&Data 法』 제5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열풍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해석적용의 변화⁵⁾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프롬프트 기반 콘텐츠 창작 시대⁶⁾를 맞이하여 기술발전이 저작권 보호 체제에 미친 영향을 연혁적으로 평가해 보면서 생성형 AI시대 지식재산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무분별한 딥페이크의 생성과 허위 정보의 확산과 같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제시한 역할과 과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2026년 2월 25일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과제⁷⁾ 중 ‘AI 기반 문화강국’지향점은 문체부가 공유하고 보조를 맞추어가야 할 부문이라 생각된다. (1) 동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AI를 통해 문화의 창작·향유·교류의 영역을 확장하여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AI 기반 문화강국’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①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② AI 기반 문화·콘텐츠 혁신을 통해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전략을 추진한다.

(2) 특히 AI 기술을 문화 전반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윤리기준 마련도 병행되어야 하며, 지역 문화 자원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창의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3) AI 기반 문화강국은 창작자·기업·시민이 함께 조성하는 공존형 문화 생태계를 지향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 AI 창작 기반 확립, ②산업 확산과 협력 모델 강화, ③글로벌 확산 및 교류 촉진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4) 구체적으로는 ① AI 창작 도구 바우처와 제작·기술 지원을 확대해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모두의 AI, 포용주의), ② AI-콘텐츠 펀드 조성 및 AX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기업과 AI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한다. ③ 아울러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AI K-콘텐츠 허브를 구축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확산을 병행한다.

라. AI발전 단계에 따른 관점의 변화 불가피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는 AI모델의 발전단계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저작물의 폭주로 그 재화로서의 희소성이 사라지면 저작권 무용론이 등장할 여지도 있다. 지금은 생성형AI 이슈가 메인이지만 곧 ‘에이전틱 AI’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AGI시대가 도래하면 AI와 인간의 공존이 불가피해지고 ‘기계 창작자 주의’가 대두될 수 있다. 그 어느 단계에서도 저작자 보호와 AI 활용을 통한 창작·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은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5) 김원오, 생성형 AI를 이용한 스타일 차용의 IP법상 쟁점과 과제, 산업재산권, Vol.83 (2026)

6) 김원오, 『AI 프롬프팅과 지식재산』,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7) AI 행동계획은 세가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부처별로 99개 정책과제, 374 개선과제를 권유하고 있음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구체적 과제

가. AI 모델의 개발방식과 배포방식에서의 문제 : 오픈 웨이트(Open-Weights) 모델

최근 글로벌 AI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오픈 웨이트(Weights: 가중치)이다. 이는 미국의 폐쇄형 거대모델에 대응하여 중국이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배포방식이다. 가중치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락인(LOCK-IN)효과를 노린 고도의 전략이다. 인공지능에서 가중치(Weights)는 AI 모델의 "지능"과 의사결정 기준을 담고 있는 데이터 파일(숫자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가중치 자체가 저작권 보호대상(SW)인지 단순 데이터의 집합인지,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논의⁸⁾가 있다. 나아가 오픈 웨이트 모델은 지식증류 방식에 의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지식증류 방식의 AI학습도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 학습(input) 관련 저작권 쟁점 V. 산출물(output) 관련 저작권 쟁점

거대 LLM 모델(멀티모달로 발전)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법 쟁점은 크게 (1) '학습(input) 관련 저작권 쟁점'과 (2)'산출물(output) 관련 저작권 쟁점'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⁹⁾

(1) '학습(input) 관련 저작권 쟁점'에서는 ① 학습데이터의 암기현상 문제와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 ② TDM 면책, ③ 공정이용에 해당 여부, ④ 옵트아웃 수단의 선언과 그 효과 ⑤효과적인 라이선싱 모델과 법정허락(사후 보상적 모델에 의한 보완) ⑥ 지식증류 방식에 의한 AI 모델개발의 IP법상 문제 ⑦ 숙련공 모션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예 무용 동작의 연극저작물성)과 그 학습(디지털 트윈)시 보상문제 ⑧ 기술적보호조치를 통한 자구책 등 주로 거대모델 AI 학습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취급한다.

(2) '산출물(output) 관련 저작권 쟁점'에서는 ① 프롬프팅의 창작행위성 평가, ②프롬프팅에 의한 산출물의 저작물성, ③ 프롬프트 사용자의 저작자성과 기여도 평가, ④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책임, ⑤ 스타일 모방의 법적 취급, ⑥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커버곡 작성 등 AI 오·남용 방지책 ⑦ 합성실연에 대응한 디지털 모사권 도입문제 ⑧ AI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의 간접책임 ⑨ AI 산출물 식별·표시 수단 ⑩ AI 모델 가중치(Weight)의 법적성격과 IP(저작권)보호 가능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정리된 주요 업적: USCO와 문체부(저작권위원회)의 세 가지 주요 보고서와 가이드라인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USCO)은 2024과 2025년에 걸쳐 '저작권과 인공지능에 관한 보고서'를 주제별로 발행해 왔다. 제1부¹⁰⁾에서는 딥페이크 합성실연 영상의 난무와 AI커버곡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새로운 퍼블리시티 보호 논의와 실연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s)을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한 국내에서 도입 논의도 촉발되었다¹¹⁾. 제2부가¹²⁾

8) 이철남, 모델 가중치는 데이터인가 프로그램인가? 지재학회 60주년 및 인하대 AI데이터법연구소 공동세미나 (2026.07 15)

9) EUIPO 보고서(EUIPO,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2025.05)의 기본적 분석 태도이다.

10) USCO는 2024년 7월 31일, 제1부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1: Digital Replicas)를 발행하였음.

11) 박유선,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vol.no.79, 한국지식재산학회, (2024, 12) 355~394쪽.

12) USCO, 2025. 1.29.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2: Copyrightability.

에서는 AI활용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취급하면서 ‘인간 저작자주의’를 관철하면서도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 AI활용 산출물이 저작권 등록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3부¹³⁾는 생성형AI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공정이용 문제와 합리적 보상방법을 다루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5년 발행한 분쟁해결안내서¹⁴⁾와 등록안내서¹⁵⁾에서도 그간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비교적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2026년 2월 26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발자와 권리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를 가늠할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남은 과제 몇가지 정리

(1)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찬반론 정리와 끝장토론 필요

AI의 창작도구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 찬반 견해의 논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찬성론의 논거	반대론의 논거
첫째, 개념미술에서 구상(아이디어)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준하여 프롬프팅의 법적 위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롬프트 입력 행위(Prompting)은 지시 명령으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둘째, 프롬프트 입력이 최종 생성물에 미치는 영향과 창작성 파악을 통상의 창작과정에 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프롬프트 입력으로 최종 생성물에 대한 창작적 제어가 불가하다(의도한 결과 불일치)
셋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외연이 확장된 역사를 고려하면 AI 프롬프트를 이용한 창작과정은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작가의 창작과정과 진배없으므로 AI를 창작도구로서 볼 수 있다.	셋째, 프롬프트를 이용한 창작과정은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작가의 창작과정(통제가능, 구도 잡은 대로 결과물 도출)과 차이가 크다.
넷째, 반복된 프롬프팅으로 완성한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인정할 만 기여도가 충분하다	넷째, 저자의 직접 산출물로 보기 어렵다.
	다섯째, 산출물에 대한 프롬프트 사용자의 표현적 요소 결정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2) 창작적 기여 판단기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여된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소위 가정적 공동저작자 개념이 등장해 있다¹⁶⁾.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저작권 법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AI 생성물에 대한 과잉보호와 과소보호를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직무발명과 달리 직무저작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직무저작에서 종업원의 기여도 산정기준은 불필요하다.

(3) 데이터 프로버넌스(Provenance) 정비와 기준 수립

데이터 출처, 기원이나 기록을 의미하는 데이터 프로버넌스가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신탁관리단체에의 등록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창작성을 발휘하여 최종 생성물을 만들어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요구한다. 추후 AI저작권 분쟁에서도 디지털증거로서 중요성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AI시대 저작권법 관점에서 출처표시를 논의하는 취지는 ‘구분’(인간창작과 AI창작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출처표시 의무’를 다한다는 두 관점에서 모두 필요하다. ① 저작권 등록이나 신탁단체에 저작권 신탁시에 요구되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행

위만으로 자동 생성한 결과물인지 사람의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이용자가 제3자의 콘텐츠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유이용 가능한 대상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다. ③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 소위 표절로 보며 저작권법 제37조상의 출처명시 의무에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법 제138조 제2호)이 있다. ④ AI 환각에 의한 오류도 많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창작 주체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점검하는 검증이 요구된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등)

가. 개설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대상을 벗어나거나, 저작권법만으로는 실효적 규제나 보호가 어려운 쟁점이나 영역도 있다. 그 공백지대를 1) 계약과 기술에 의한 보호로 커버하거나 2) 웹 스크래핑이나 크롤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일응 보완수단이 될 수 있고, 실연자 등이 자신의 목소리가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연방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자구책이 강구되기도 하지만 지면 관계상 스타일 모방 문제만 간단히 살펴본다.

나. 스타일 모방, 저작권법의 한계를 자체 극복할 것인가? 타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지브리풍의 열풍속에서 지브리 이미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 논거는 화풍이나 문체, 서체 같은 스타일(Style)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이미지를 생성형 AI가 순식간에 다량으로 생성해 내는 현 상황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현대적 변용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각 정립도 요청된다. 즉, 오늘날의 상황은 기존 예술계의 작품·화풍의 모방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던 때와 비교해 볼 때 학습의 규모, 기술의 속도, 그리고 예술적 가치(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매우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 보호가 이렇게 제한을 받더라도 독특한 스타일이 '상품의 출처'로 인식될 만큼 유명하다면, 상표등록도 가능하며,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타인의 성과모용: 제2조 1호 파목)이 될 수 있고 트레이드드레스 침해(제2조 1호 나목)와 퍼블리시티 침해(타목)의 소지도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타법에 의한 우회로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다.¹⁷⁾

13) USCO, 2025. 5.9,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14)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5. 6.

15)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16) 이는 사용자가 AI에게 구체적 지시를 수행한 것이 AI를 인간 협력자로 가정할 때 사용자가 그 협력자와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 기여' 유무의 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이해완 앞의 논문 면.

17) 김원오, 앞의 논문 참조.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를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현재의 상황을 부인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작품과 인간이 창작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모든 작품들에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정한 과태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작품을 신탁단체에 신탁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기 등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AI개발사업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저작권 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개별적인 저작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도정부나 EU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이 아니라,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들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으로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저작자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저작권 제도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유지되어, 문화창달에 지속적인 기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2번 문제는 1번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데이터의 이용범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국가의 강제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업체의 약관에도 인공지능개발업체와 “경쟁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출력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개발업체는 저작자들과 경쟁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경쟁업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놀부심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공지능업체의 투명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료의 산출방안을 만들기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사실을 공지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 무엇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품 자체 어디에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상물의 일부분을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광고나 영상물의

어딘가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음악이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매 이용시마다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상에는 인공지능업체가 의무이지 이용자에게는 의무가 없다. 특히 영상물에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을 표시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할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영상관람에 상당히 부담됨)

AI 생성물로 권리 침해 발생시에 책임은 형사책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고의는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사침해사건에서 인간창작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생성되면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침해(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물권침해이므로 고의 과실 부존재)로 인한 금지가처분은 가능하겠지만,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고의는 거의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마땅히 인식하거나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부주의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되는데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성물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태에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따라서 개별 이용자 단계에서는 손해배상은 매우 어려우므로 인공지능업체가 사전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을 심도있게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웹사이트를 통해 봇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규정 위반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예전에 미국 주법으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경우에 unfair competition이 된다고 미국 일부의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동일한 기술이 사용된다면 인공지능으로 제작하는 것(독일의 OpenAI, SUNO와 같이 인공지능의 학습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면...)과 인간이 제작하는 것이 경쟁하게 된다면 부정경쟁의 이슈가 나오고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박준우 교수(서강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등장이 창출한 이윤을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재분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합니다. 관련하여 다음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저작물·실연 이용으로 인한 이윤은 커지는 반면, 이용되는 저작물·실연의 저작자·실연자는 유명 저작자·실연자로 수렴하므로, 무명 저작자·실연자에 대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의 작동원리인 '시장에서의 배타적 권리 행사를 통한 투자비용 회수 및 이윤 확보'가 기능을 못함. → 유명 저작자·실연자의 이윤을 재원으로 무명 저작자·실연자에 대한 기본소득을 재분배하는 논의 필요함. → 저작자·실연자 등록 기준 마련 필요하며, 그 전제인 저작물·실연 등록 논의도 필요함.

●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는 ①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해석 및 법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관련 법률들, ③ 국제적 규범과의 정합성(또는 호환성)을 고려하여 진화시킴.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관련 검토 과제 중 대부분은 저작권법의 기초법리 관련 쟁점들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기초법리 관련 과제는 인공지능 시대 이전 인터넷·디지털 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오프라인·아날로그 시대에도 존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들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의 크기를 증폭시켜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 산출물 생성자의 저작자성: 프롬프트 입력이 창작 행위, 즉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을 생성자가 프롬프트를 통해 통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인데, 이는 오프라인·아날로그 작품인 '조OO 대작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저작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 인공지능 생성물로 확대되었으며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 그밖에 다음 기초 법리들이 검토 대상입니다. (화살표 오른쪽은 관련 인공지능 쟁점)

① 인격적 가치의 객관적·사회적 훼손 없는 저작물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입법 필요함. → 인공지능 개발자와 산출물 생성자의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 관련.

② 저작물 존속기간과 창작성 요건은 구별되며,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그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 개성이 없어질 수 있음. → 특히 사실적·기능적·상업적·실용적 저작물 이용 관련.

③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 창작성의 본질과 상호 관계.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가 공정이용이나 TDM 예외인지 문제 관련.

④ 의거관계 증명책임 전환을 위한 해석·입법. → 인공지능 개발자 책임 문제 관련. 프랑스 지재법 개정

안 참고. 또한 학습용 데이터 제작을 위한 라이브러리에 원고 저작물이 포함되었거나 인공지능 산출물에서 원고 저작물과 같은 표현이 발견된 경우 법원이 (저작권법 개정 없이) 증명책임을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전환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산출물에서 원고 저작물과 같은 표현이 발견된 경우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⑥ 무방식주의와 저작(권)자의 저작권 관련 정보 표시·등록 의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 문제 관련. 인공지능 개발자와 산출물 생성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표시의무 위반 관련.

⑥ 이용자와 이용대가 지급자(책임자)의 구별. → 인공지능 산출물 생성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관련.

a. 반드시 이용자가 이용료 지급에 효율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님. 인공지능 산출물 생성자의 이용료까지 고려하여 인공지능 개발자의 이용료를 산정하고, 개발자는 생성자로부터 구독료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방안 고려함. 그리고 산출물 생성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침해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함.

b. 참고로 이미 저작권자 측면에서는 이용료를 지급받기에 효율적인 지위에 있는 신탁단체를 권리자로 만들어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⑦ 실연자의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접권 접근 방식과 퍼블리시티권 접근 방식의 구별. '일자리가 필요한 실연자의 실연 보호'와 '경제적으로 성공한 실연자의 동일성 보호'의 구별과 교차지점. → 합성실연(synthesized performance) 보호 방안 관련.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출물 생성 단계에서 특정 저작자의 스타일만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부인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적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연계 필요성은 인공지능이 상업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으며, 연계 방안에서 그치지 말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하여, 체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율하는 지적재산은 기술뿐만 아니라 출처표지, 원산지 표시, 디자인, 유명인 동일성,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이들 규정 중에는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서 나열할 필요가 없어진 것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모법(母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표지(가목부터 다목, 사목, 제3조): 상표법에 규정 고려함.

-원산지/출처지 표시(라목, 마목): 원산지표시법에 이미 규정되어 부경법 라목과 마목은 사문화되었음.

-바목: 표시·광고법에 이미 규정되어 부경법 바목은 사문화되었음.

-아목: 인터넷주소법에 이미 규정되어 부경법 아목은 사문화되었음.

-자목: 디자인보호법에 규정 고려함.

-영업비밀침해행위, 차목, 카목: 부경법에서 분리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규정함.

-타목: 퍼블리시티권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규정함.

- 지리적표시(제3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완전히 이전함.
- 지리적표시(제3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완전히 이전함.

● 지적재산의 주무관청은 보호대상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가 되어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배타성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행위 규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필요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강한 배타성이 필요한 경우, 부경법에 계속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부처 소관 법률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상품형태,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특허청(現지재처).
- 원산지 표시, 지리적 표시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 인터넷 주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 퍼블리시티권: 문화체육관광부

● 앞으로 부경법 개정에 지재처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 관련 업계 이해관계 조절에 적절한 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경법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 참고로 부경법 규정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있으나, 파리협약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을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는 없으며, 다른 법률로 이행해도 협약/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 아울러, 지적재산 등록 업무와 지적재산 정책 업무(분쟁해결제도 포함)의 분리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 투명성 의무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의무와 별도로 저작권법에 투명성 의무를 규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그 실효성이나 의거관계 추정 등의 대체·보완 방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신재호 교수(경상국립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창작자의 의미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새로운 인간의 창작물이 계속하여 학습되지 않는다면, 다양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모델 붕괴, 정보 왜곡 및 편향 강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AI 창작 환경에서도 인간의 역할은 분명 존재하고,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¹⁾ 문화발전을 위한 양적 다양성은 AI를 통해 실현될 수 있겠지만, '질적 다양성' 추구는 아직까진 인간이 하여야 할 역할이 아닐지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인간의 역할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 다양성'은 결국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에서 시작될 것이고, 저작권 제도는 결국 '아이디어 영역'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²⁾ 물론 다양한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새로운 창작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창작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³⁾ 즉, 아이디어 영역에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해 일정 부분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표현 영역에서의 창작적 기여와는 달리), 실질적 유사성(포괄적 유사성)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후발 주자의 창작의 여지를 확보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AI 출현으로 저작권 제도 전반에 있어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제도가 새로운 창작의 인센티브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AI시대에 이러한 인센티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등 근원적인 의문은 저작권 제도의 존재 이유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구현시킨 기술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가상의 인간이 수행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이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며, 최소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예컨대, 저작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⁴⁾ 또는 저작권 침해자에 해당하는지는 인공지능과 무관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지금은 인공지능에 의해 충분히 다양한 산출물이 생성되고, 결국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리라 걱정하지만, 향후 학습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 생성물로 채워진다면, 인간의 정신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신재호, "AI 창작환경과 창작성의 미래"의 토론회, 저작권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 '창작성'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6, 158면).

2) 2차적저작물작성권 부여, 편집자의 저작권 인정, 포괄적 유사성 판단 등 '아이디어 영역'으로의 보호 확대는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진행되어 왔다.

3)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며, 분업화되지 않은 창작 환경에서 표현 영역에 대한 보호만으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영역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저작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 치밀하고 정교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시대 제기되는 쟁점들은 대부분 창작이 무엇인지, 저작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창작적 기여는 무엇인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개념이 무엇인지⁵⁾ 이를 명확히 정립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하였던 기본 개념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논리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저작권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등 언급한 법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공 영역에서 AI시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지식재산법 영역으로 한정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우선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AI를 활용한 발명, 디자인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각각의 권리는 부여 근거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보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지식재산법의 체계에서 상호 역할을 분담하면서 보완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은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법의 영역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데이터의 법적 보호방안입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는 수집·가공 등을 통해 일정한 가치가 형성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디지털콘텐츠 등의 형태로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서 원천 데이터(raw data)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법적 보호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⁶⁾ 더 나아가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데이터 통제권까지 입법화된다면,⁷⁾ 데이터는 지식재산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프롬프트는 주로 텍스트 형태의 지시 명령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용자는 생성물의 작성에 있어 아이디어 영역에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국 프롬프트 입력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자가 해당 아이디어의 표현에 대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전의 조영남 사건, 김수로 사건, 구름빵 사건, 체험전 기획안 사건, Daniel Spoerri의 “나의 아침식사” 사건 등에서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던 저작자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좀 더 고민하여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신재호, 앞의 토론문, 155-156면).

5)“AI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AI 학습용 데이터에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의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의거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의거성이 추인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간접사실로는 의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호, “저작권법상 의거성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제26권 제4호), 2025 참조.

6)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2022. 1. 4., 제정, 2025. 12. 30., 일부개정)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②~④ 생략 ⑤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⑧ 생략 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7)데이터 확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AI 산업을 선도하게 되면서 데이터가 필수자본으로 부각되고, 가공되기 이전의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재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다만, 데이터의 재산성 인정이 오히려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를 통한 창작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간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인 창작성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AI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의 대중화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창작성의 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저작물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은 고도의 예술성을 갖춘 창작성이 아니지만 이처럼 요구되는 창작성의 수준이 낮다 보니 AI에 투여된 창작성과 그 결과물 사이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낮은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기존 저작권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작권보호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창작행위와 결과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창작행위가 최종 결과물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좀 더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침해판단에 있어서도 의거라는 요건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의거를 인간의 인식있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AI에 의해 이루어진 의거에 의한 침해는 침해를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AI에 의해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인간이 개입한 바가 있다면 침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공정이용제도와 저작권보호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AI의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즉 저작물이 필요하고 이들 저작물의 사용이 권리자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면 AI의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에 AI의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공정이용제도가 넓게 적용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간의 저작물 이용에 인정되는 공정이용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AI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 공정이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AI의 조력을 통하여 저작물의 창작이 용이해지고 있고 새로운 저작물이 빠른 시간 내에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자 생존 플러스 70년이라는 기간은 저작물의 짧은 생성주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의 학습이나 산출과정을 저작권법에 의해서만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AI의 학습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법 보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에 적합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러번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들을 규율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제2조 제1호 파목 일반조항을 AI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는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핵심적인 규범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 19세기 사진 기술의 등장이 '인간의 육체적 숙련도'라는 창작의 기준을 흔들었을 때, 입법 또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작가의 정신적 선택과 배열을 창작성으로 포섭하고 창작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도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인간 중심의 창의성 보호와 '창작적 기여'의 합리적 포섭

- 저작권법의 본질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원칙을 유지하면서 AI와의 협업 환경을 고려한 판단 기준 마련

● 학습(Input)과 창작 생태계 간 공정한 가치 배분 및 보상 체계 구축

-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 등으로 인한 창작 기반 붕괴를 방지
- 법정 허락,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보상금 제도, 적법한 데이터 라이선스 거래 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 기업과 인간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지원

● 시장 질서 유지 및 침해 판단 기준의 정립 (Output 규율)

- AI가 기존 특정 저작물을 사실상 복제·재현하거나 특정 캐릭터 및 표현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침해 판단 기준을 제공
- 단순한 스타일이나 아이디어의 차용을 넘어 원작의 시장 가치를 직접적으로 잠식하는 '가상의 자판기 (Virtual Vending Machine)'식 대량 출력물에 대한 법적 규율

● 투명성(Transparency) 확보를 통한 신뢰 기반의 거래 환경 조성

- EU AI Act의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의무 및 각국 인공지능 법령의 AI 생성물 표시 규정과 연계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원저작자의 권리 행사 및 이용자의 식별권을 보장

● 문화적 다양성과 산업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목적의 실현

- 과거 낭만주의적 '고독한 천재'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AI가 상호작용하는 협업적 창작 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법적 패러다임을 제공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 학습데이터(Input)의 이용 범위 정립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과 공정이용의 한계 확정
 - 적법한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
 - 투명성 확보와 AI BOM(Bill of Materials) 제도화
 - 소프트웨어의 SBOM 체계를 확장하여 학습 데이터셋, 모델 가중치, 라이선스 정보를 표준 포맷(SPDX, CycloneDX 등)으로 기록·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
- AI 산출물(Output)로 인한 권리 침해 시 책임의 소재와 구조
 - 다층적 책임 주체(이용자 vs 개발사/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
 -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의 고도화
- 창작적 기여가 낮거나 결여된 AI 산출물의 법적 보호 여부
 - 인간 저작자 원칙의 엄격한 고수 여부
 - 새로운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나 인접권 도입 여부
- AI 모델(가중치)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가중치 그 자체는 저작물성 인정에 한계
 - 오픈 웨이트 모델의 공개 및 이용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가중치의 법적 보호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에 관한 논의가 필요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1)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한계
 - AI가 특정 작가의 고유한 화풍이나 문체, 가창 스타일을 대량 학습하여 유사한 분위기의 창작물을 양산한 경우
- 인간 저작자 원칙과 성과물 보호 공백
 -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AI 모델 가중치나 순수 AI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인격적 표지(초상·음성 등) 보호의 한계
 - 실존 인물의 얼굴, 목소리, 성명 등은 저작물이 아닌 인격적 표지이므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으로 직접 구제하기 어려움.

(2)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연계

● 성과물 무단 도용 규율

-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AI 모델(가중치), 프롬프트 데이터셋 등을 무단 크롤링·탈취하여 경쟁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도용'으로 규율 가능
- 특정 작가의 화풍을 집약적으로 학습시켜 원작자의 시장 수요를 교란·대체하는 행위에 대해 보충적 구제 수단으로 기능

●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제2조 제1호 타목)

-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 학습·합성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AI 커버 곡, 딥페이크 광고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제재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1. 서론

산업화시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권법은 AI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의 도그마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기술이나 데이터가 국경이 없는 점에서 저작권법을 전세계에 공통된 규범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창작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들은 AI 시대에 보호해야 할 '창작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들은 원하는 창작환경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보상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K-content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발전하였고, AI기술분야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가지 고민을 함께 할 있는 적격자인 한국이 새로운 저작권법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리드한다면 진정한 AI시대에 맞는 'K-copyright'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역할

가. 인간 창작자의 권리 명확화

AI 시대에도 저작권법의 근간인 인간 중심의 철학은 당분간 지켜져야 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사상과 감정,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순수 AI 산출물에 저작자성을 쉽게 부여할 경우, 대량 생산된 산출물이 공공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오히려 인간 창작자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는 인간 고유의 독창적 창작 활동 및 이를 보조하는 AI기술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창작 생태계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의 균형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권리자의 독점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저작권법 제1조)"에 있습니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창작 생태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는 데이터에 대한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접근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라이선스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저작권법 정비 및 과제

가. 학습데이터의 이용 범위 및 투명성 확보

저작물의 단순 분석을 위한 TDM은 면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만 기존 저작자의 시장을 직접 대체하는 경쟁적 산출물을 만드는 학습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리를 보장하되, 대규모 데이터 계약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단적 라이선스(ECL)나 법정 보상금 제도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AI 개발사가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목록(Dataset Log)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AI 산출물로 인한 권리 침해 시 책임 구조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AI 개발사/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위험을 알면서도 정밀한 필터링 모델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조 책임 또는 직접적 침해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이용자(프롬프트 입력자)도 기존 저작권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을 유도(Targeted Prompting)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직접적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계몽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타 법률과의 연계 및 보완 방안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표현(Expression)'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법이므로, AI의 데이터 수집·학습·산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타 법제와의 입체적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얼굴 이미지, 음성, 개인정보 등이 무단 학습되어 타인의 신원이나 음성이 합성과 유포(Deepfake 등)되는 문제는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의 법리와도 충돌됩니다.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초상권은 기존에 형성된 헌법, 민법의 법리들이 AI학습을 위하여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는지 새로운 허용범위와 통제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제한' 규정을 다시 한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저작권법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작풍(Style), 음색(Voice), 기획안, 단순 데이터베이스 등은 AI에 의해 가장 쉽게 도용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목적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임원선 초빙교수(성균관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을 창작하고 그 창작의 결과물을 보급하는 데에 이바지한 사람의 몫을 가려내고 그가 이바지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창작과 그 결과물의 보급을 진작해왔다.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도 저작권 제도의 이러한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그가 이바지한 것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만큼이나, 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가 이바지한 것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했느냐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이바지한 부분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저작자가 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그가 이바지 하는 방법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자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구상하는 것은 예전과 같지만, 그것을 몸소 직접 만들어냄으로써 창작하기보다 AI를 활용해 구체화 한 후에 선택, 배열, 구조화를 통하여 마무리하는 가운데 발휘되는 창작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의 하나는 창작 과정에 작용하는 “우연”과 “확장(번짐)”의 요소이다. 어느 창작에서건 창작의 결과물이 모두 작가가 의도한대로 구현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창작과정에는 흔히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이나 의도하였으나 거기에서 파급되는 확산이 발생한다. 저작자는 이를 취사선택하거나 수정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한다. 창작의 세계에서든 저작권의 세계에서든 이제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에 이러한 관행을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에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¹⁾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에서 인간 저작자가 기여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인간 창작자가 직접 표현하고자 의도한 부분만 인간의 몫으로 인정되고, 창작과정에서 발생한 우연과 확산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인공지능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²⁾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하는 경우에, 보호요건으로서의 독창성 기준과 침해판단에 있어서의 접근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ederal Register, Vol. 66, No. 51 (March 16, 2023) at 16190 – 1619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2)임원선, “챗지피티가 생성한 자료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도서관이야기』, vol. 165 (2023. 5. 1.), 32쪽

독창성이란 저작물이 창작자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말한다. “무의식적 모방”의 문제가 있지만, 창작자는 보통 창작과정에 어느 것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인식한다. 하지만, AI를 사용하여 창작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식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창작자는 AI가 제시한 산출물을 자신의 프롬프트의 결과물이므로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접근”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규모 AI의 학습에는 사실상 “세상의 모든 자료(저작물)”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 AI를 통하여 창작자는 사실상 세상의 모든 자료에 접근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에서는 접근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산출물의 경우에는 보호요건으로서 독창성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에서와 같이 “신규성” 기준을 적용하고, 침해판단에 있어서도 “접근” 요건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법의 한계

보호되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국내외의 판례도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한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저작권법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상 상표권이 상표의 비상표적 사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처럼 비록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도 그것이 저작권법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는 경우라면 거기에 저작권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의 규정이 이를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일본과 달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저작권 제도상 당연한 것을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되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이용에 관한 그간의 우리나라나 미국 법원의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보호되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논의 생략]

문제는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저작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를 통해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을 진작해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³⁾

3)아마도 이 문항의 존재는 이미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추측된다.

솔직히 답을 내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저작권법의 목적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으로 대처하기도 어렵고, 타법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지재권법 우선 적용(preemption)의 원칙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다른 법에 의해 부여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나. AI 산출 과정에서의 저작권법의 한계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책임 주체는 AI 개발 및 이용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AI 개발 및 이용서비스제공자는 AI의 작동원리상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AI의 작동원리에 대한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AI 개발 및 이용서비스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AI 개발 및 이용서비스제공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과 같은 세이프 하버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AI 개발 및 이용서비스제공자가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산출물을 산출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⁵⁾하게 하면 혹여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더라도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조치에는 일정한 프롬프트(예를 들면,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출력하게 하는 등)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에 사용된 기존 저작물에 직접 접근하지 않았으므로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민사책임을 묻는 데에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조치의 하나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이용자가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 및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이 원칙은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 보호의 원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5)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4조 제3항상 기술적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I 개발 및 이용서비스제공자의 대다수가 다국적기업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제조약의 형태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조형찬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저작권법은 저작자들이 창작한 결과물에 담긴 노력의 대가를 보장해주는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법률로 자리를 잡아왔지만,¹⁾ AI 시대에서는 저작권법을 -그에 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규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²⁾ 결국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과 원칙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호의 관점에서는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저작물성이 주로 문제되고, 이용의 관점에서는 저작물 등 정보 대량학습의 적법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액션플랜 추진방향(2025. 9.)에서 보다시피- AI 산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저작권과 개인정보가 핵심 '규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창작자의 권익 보호 수단이 AI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혹은 최소한 부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도록 저작권 제도를 균형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³⁾

저작권자가 지니는 본질적인 권한이 무엇인지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이용자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① 이용 가부를 결정하는 '이용허락 권한'과 ② 이용대가의 정도를 결정하는 '이용대가의 결정 및 청구 권한'으로 볼 수 있다. AI 산업체 입장에서 개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개별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 중 어디까지를 규제 개선의 대상으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만약 전자의 영역만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면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 제도와 관련이 높고, 전자 및 후자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보면 '보상금조차도 없는 저작재산권 제한' 도입 여부 문제로 논의가 귀결될 것이다.

2.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AI의 저작물 대량학습에 관하여 현재까지는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 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

1)박성호, "저작권과 문화예술정책의 합리적인 거버넌스 정립 방안", 2026년 한국법정책학회 제100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지적재산 거버넌스와 저작권 정책의 과제 및 전망> 제1주제 발제문, 2-3면.

2)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2025. 9.), <https://www.aikore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1&num=12> (최종검색 2026. 8. 14.)에서 IV. AI 혁신 생태계 조성 중 5. AI 규제혁신 부분 참조.

3)'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AI의 저작물 대량학습에 따른 권리 제한'보다는 제도 설계의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생각이다. 산출에 기여한 자는 AI 산출물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조항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산출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탈을 주장할 수 있으나, AI의 저작물 대량학습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는 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전히 관련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AI에 의한 저작물 대량학습에 국한하여 토론문을 이어간다.

4)가령 2026년 3월 10일 유럽연합 의회에서 채택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결의안의 내용 중 17번에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fair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 메커니즘에 의해 저작권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원문은 <<https://www.europarl.europa>

다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명제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로, 그러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살펴야 할 지점들이 있다.

우선, ① 대량학습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과연 저작물만 있는지, 그리고 저작물이 아닌 것과 저작물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② 설령 학습 대상이 저작물임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를 설계한들 '저작인격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③ 학습 대상의 저작물성 및 저작인격권 영향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떠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인지도 매우 복잡한 실무 쟁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회의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TDM 조항을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⁵⁾ 만약 그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일용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대해서도 권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소지는 있겠으나, 이러한 준용 조항만으로는 (약칭 기준으로)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에 부여되는 제작자의 권리까지 제한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데이터 법제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AI의 대량학습에 따른 이용대가를 산정할 경우 저작물인 것과 창작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대가를 나누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AI 산업계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불안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⁶⁾ 다만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매우 오랫동안 그 제도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요건과 그 제한 방식 등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보상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라이선스 체계 정립이나 오픈아웃 방식 도입 문제 등과는 별개로- 현행 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 형식에 따른 제도 설계 가능성 여부만 놓고 보더라도, 보상금의 결정 시 다른 보상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용료의 경우와 달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없이 고시로 정할 때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⁷⁾ 보상금의 기준액을 단순 매출액으로 정해도 무방한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는 요건과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쟁점이 매우 많으므로, 보상청구권을 반영하는 제도를 설계한다면 여러 요소를 매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정보 법제와의 관계

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026. 2.)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해석론 형성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조차도 저작인격권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과거부터 있어 온 저작인격권 개선에 관한 입법론을 다시 상기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본다.

7)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상금'은 그러한 심의 없이 -제35조의4를 제외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본 저작권법은 사적복음녹화보상금(제104조의6), 도서관 등 공공송신보상금(제104조의10의4),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제104조의13) 등의 금액을 정할 때 '문화심의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쳐 '문화청장관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어, 마치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사용료 결정 방식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용료와 보상금 모두 본질적으로는 저작물 이용의 대가이고 그 액수가 저작물 이용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공통점도 지녔음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상 보상금 전반에 대해서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작물보다는 창작성이 없는 정보의 대량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보상체계 법제화와 더불어 향후 '데이터 대량학습에 따른 보상체계 법제화' 가능성도 논해질 수 있다. 특히 산업디지털전환법, 데이터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채권적인 형태로나마-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권리 보유에 따른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I의 저작물 대량학습을 허용하는 조항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규정에 준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작성이 없는 학습 대상에 대해서는 위 법 등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는 규정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감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도 대량의 기계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법 관점에서 창작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 저작권법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두는 체계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조희경 교수(홍익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기블린(Giblin)과 웨더럴(Weatherall)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저명한 저작권 학자들은 2017년 출간된 『저작권을 다시 상상할 수 있다면(What If We Could Reimagine Copyright?)』에서,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태동한 토대인 ‘인쇄’와 유형적 복제본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전혀 다른 저작권 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AI 시대에 맞게 저작권을 다시 상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는 인쇄술의 등장 이래 사진, 녹음, 방송, 디지털 복제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복제·전달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은 종전의 기술 변혁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과거의 기술이 주로 저작물의 ‘이용·유통’ 국면에서 저작권 질서에 충격을 주었다면, AI는 저작물을 대량으로 ‘입력(학습)’하는 국면과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국면 양쪽에서 동시에 저작권 제도의 전제를 흔들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연어 지시만으로 문학·미술·음악·영상의 외형을 갖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 오늘날, 창작의 진입장벽은 사실상 소멸하였고, 창작물의 공급은 한계비용 영(零)에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근본적 질문은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각론적 물음 이전에, ‘AI 시대에 저작권 제도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라는 목적론적 질문이다.

영미법계의 공리주의적 정당화론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한시적 독점이다. 창작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복제는 저렴하므로, 배타권을 통하여 창작자가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창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AI는 이 전제를 두 방향에서 침식한다. 첫째, AI 산출물이 시장에 무제한 공급되면 인간 창작물의 시장이 대체·희석되어 창작 유인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미국 Kadrey v. Meta 판결(N.D. Cal. 2025)에서 Chhabria 판사가 공정이용을 인정하면서도 방론으로 강조한 이른바 ‘시장 희석(market dilution)’ 우려, 즉 개별 저작물의 직접적 대체가 없더라도 AI가 같은 장르의 콘텐츠를 범람시켜 인간 저작자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인센티브 이론의 관점에서 AI 문제의 핵심을 짚은 것이다. 둘째,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이 무상으로 대량 이용된다면, 창작의 성과가 AI 개발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보상의 환류 고리가 끊어진다.

대륙법계의 전통은 저작물을 저작자 인격의 발현으로 파악한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여 인간 창작성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전통의 반영이다. AI 산출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은 해석론상 비교적 분명하지만, 문제는 현실의 창작이 인간과 AI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보호받는 창작과 보호받지 못하는 생성 사이의 경계 획정이 제도 운영의 중심 문제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1월 공표한 저작권과 AI 보고서 제2부(Copyrightability)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고, 인간이 표현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통제·기여한 부분에 한하여 보호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역시 AI 산출물 그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인간의 창작적 개변·편집이

가해진 부분에 한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같은 취지의 입장을 취한다.

AI 시대 저작권 제도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첫 번째 역할은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의 경계를 획정하는 일이다. 이는 소극적 기능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적극적인 기능이다. AI 산출물을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두는 것은 후속 창작과 이용의 자유를 확보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인간 창작물의 희소가치와 법적 지위를 부각시킨다. 다만 경계설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간 기여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통제가 능성·예측가능성, 창작적 선택의 존재 등)과 이를 뒷받침할 표시·기록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도입한 것은 저작권 제도의 경계설정 기능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역할은 창작 유인의 유지이다. 다만 그 실현 방식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학습 이용의 특성상 개별 저작물 단위의 사전 허락은 거래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배타적 금지권을 관철하는 방식보다는 적법한 접근을 허용하되 대가가 창작자에게 환류되도록 하는 구조, 즉 집중관리와 포괄 라이선스, 보상금 내지 보상청구권 체계의 설계가 요구된다. 학습 데이터 시장이 형성되면 저작물은 '감상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의 원료'라는 제2의 시장을 갖게 되며, 저작권 제도는 이 신시장에서의 가격 형성과 분배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Bartz v. Anthropic 사건이 약 15억 달러라는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화해로 종결된 사실은, 사법적 해결의 불확실성과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시장적·제도적 보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세 번째 역할은 AI 창작 생태계의 거래질서 형성이다. 권리 귀속과 이용 조건이 불명확한 시장에서는 투자와 거래가 위축된다. 저작권 제도는 권리정보의 공시(등록), 표준적 이용허락 조건의 보급, 학습 이용 여부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AI 개발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권리자에게는 추급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장 인프라로 기능하여야 한다. EU AI법 제53조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저작권 정책 수립과 학습 콘텐츠 요약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투명성을 제도와 한 예이다.

네 번째 역할은 권리자·AI 개발자·이용자(그리고 AI를 도구로 쓰는 신종 창작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하는 일이다. 저작권법은 본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법률로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 규정과 공정이용이라는 조정 장치를 갖추고 있다.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미국 법원이 Bartz, Kadrey 판결에서 변형적 이용성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취득의 적법성과 시장 영향이라는 한계를 부가한 것처럼, 우리 법의 해석·운용에서도 공정이용 조항은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원의 소극적 해석으로 인하여 그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가 된 시대에도 저작권 제도의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장이다. 다만 그 실현 수단은 변한다. 개별적 배타권의 관철에서 ① 인간 창작성의 경계 확인, ② 접근 허용과 보상의 환류, ③ 투명성에 기초한 거래질서 형성, ④ 공정이용을 통한 동적 이익 조정으로 제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저작권 제도는 배타적 권리에서 '분배와 신뢰 제도'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제도 정비 과제는 AI 가치사슬의 단계에 따라 ① 학습(입력) 단계, ② 산출 단계, ③ 유통·보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체계적이다. 각 단계마다 현행법의 공백 내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입법·행정·계약 실무의 층위에서 상이한 처방이 요구된다.

가. 학습 단계의 과제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쟁점은 AI 학습을 위한 복제·전송에 대한 면책 규정의 도입 여부이다. 2021년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면책 규정을 두어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을 정보분석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 AI 학습의 적법성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규율 모델이 뚜렷이 분화되어 있다. EU는 DSM 지침(2019/790) 제3조·제4조에서 연구목적 TDM은 광범위하게, 상업적 TDM은 권리자의 옵트아웃(이용 유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을 폭넓게 면책하여 가장 관대한 모델로 평가되나, 최근에는 권리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의 해석을 둘러싼 재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성문 면책 없이 공정이용 판례로 대응하고 있는바, *Bartz v. Anthropic*은 적법하게 구매한 서적의 학습 이용을 고도로 변형적인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복제물의 취득·보관은 별개의 침해로 판단하였고, 이후 약 15억 달러의 settlement가 승인되었다. 반면 비생성형 AI가 문제된 *Thomson Reuters v. Ross*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용이라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부정하였다. 이들 판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학습 이용의 허용 여부는 ① 취득의 적법성, ② 이용의 변형성, ③ 산출물의 시장 대체성이라는 세 변수로 수렴하고 있으며, 우리 입법론도 '적법 접근 + 옵트아웃 존중 + 시장 대체적 산출의 배제'를 요건으로 하는 제한적 면책 규정의 설계로 나아가는 것이 국제 정합성에 부합한다.

정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K-콘텐츠 AI 생태계 구축 방향은 창작자의 학습 거부권을 보장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의 적법한 학습을 허용하되 장래 수익배분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도를 제시하였다. 이 구도가 작동하려면 옵트아웃의 기술적 표준화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robots.txt 수준의 사이트 단위 유보를 넘어, 저작물 단위의 기계가독형 권리유보 표시(메타데이터 표준), 유보 의사의 등록·공시 시스템, 그리고 유보를 무시한 크롤링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갖추어져야 한다. EU에서 *Kneschke v. LAION* 사건을 통해 벌어진 기계가독성 요건의 해석 분쟁과 *GEMA v. OpenAI* 사건에서 다투어진 면책 범위 논쟁은 표준과 기준 부재의 비용을 보여 준다.

권리자가 침해를 다투려 하여도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정보 비대칭이 저작권 집행의 최대 장애이다. EU AI법 제53조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물 공개하도록 하고 2025년 7월 그 공개 양식이 마련되었다. 우리의 경우 AI 기본법이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저작권법 또는 AI 기본법 차원에서 학습데이터 출처 요약 공개 의무를 도입하되 영업비밀 보호와의 균형(요약 수준의 조절, 비공개 심사 절차 등)을 설계하는 것이 과제이다.

나. 산출 단계의 과제

해석론상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① 인간 기여 부분의 분리 인정 기준, ②

등록 실무의 정비(생성형AI 이용 사실의 고지, AI 생성 부분의 제외 등록), ㉓ 산출물의 공유영역 지위 명확화가 요구된다. 입법론으로는 AI 산출물에 단기의 약한 보호(인접권 유사의 투자보호)를 부여하자는 견해와, 공유영역으로 유지하여 인간 창작물과의 차별화를 유지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산출물 범람에 따른 시장 희석을 고려하면 후자가 원칙적으로 타당하되, 상당한 인적·자본적 투자가 수반된 데이터베이스나 콘텐츠 집합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의 침해 판단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전통적 기준이 적용되나, AI 맥락에서는 두 가지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학습데이터에 원저작물이 포함된 사실이 입증되면 의거성을 사실상 추정하는 방향의 해석 기준 정립이다. 둘째, 화풍·문체·스타일의 모방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원칙의 재확인과 동시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표적으로 삼는 상업적 모방에 대한 부정경쟁법적 보완의 검토이다. 이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산출물이 침해로 판단될 때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는 이용자-서비스제공자-모델 개발자의 세 층위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출을 지시한 이용자가 직접행위자로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자는 학습데이터를 알 수 없어 침해 회피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개발자-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침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산출을 방지할 주의의무(필터링, 원문 재현 억제 등)를 전제로 한 방조책임 내지 간접책임의 법리가 검토되어야 하며, 영국 Getty 판결이 모델 자체의 침해 물성을 부정한 것과 같이 모델 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서비스 운영상의 조치의무가 책임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저작권법 제102조 이하)에 준하여, 표준적 침해방지 조치를 이행한 AI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요건을 설계하는 방안은 검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산출물 관련 침해 책임을 보상하는 면책보상(indemnification) 약정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적 위험배분을 표준계약과 약관 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과제이다.

AI 기본법상 생성형AI 산출물 표시의무는 저작권 실무와 직결된다. 표시는 산출물의 공유영역 여부 판별, 등록 심사, 침해 분쟁에서의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정보이므로, 표시의 방식(워터마크, 메타데이터)과 저작권 등록 제도 간의 연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유통·보상 단계의 과제

학습 이용의 대량성·비개별성에 비추어, 개별 허락 모델을 대체할 권리처리 인프라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㉑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ce) 방식의 도입, 즉 집중관리단체가 비회원 권리자의 저작물까지 포괄하여 학습 이용을 허락하고 보상금을 분배하는 제도, ㉒ 권리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의 간소화, ㉓ 학습 이용에 특화된 표준계약서와 보상금 산정 기준 등 새로운 관리와 분배 제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수익배분 체계 역시 분배의 기초가 되는 이용정보(어떤 저작물이 얼마나 학습·활용되었는가)의 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앞서 본 투명성 의무와 제도적으로 연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출판·음악·영상 등 기존 콘텐츠 계약에는 AI 학습 이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용허락의 범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잠재되어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이용허락 계약에서 학습 이용권의 별도 명시, 직무저작·외주 계약에서 AI 활용 고지 조항 등 표준계약 정비가 요구되며, 신탁관리단체의 신탁 범위에 학습 이용이 포함되는지도 정리되어야 한다. 외주 계약에서 AI 활용 고지 조항 등 표준계약 정비가 요구되며, 신탁관

리단체의 신탁 범위에 학습 이용이 포함되는지도 정리되어야 한다.

학습은 면책이 관대한 국가에서 수행하고 서비스는 전 세계에 제공하는 이른바 '면책 포럼 쇼핑'이 가능하므로, 일국 차원의 규율은 한계가 있다. EU AI법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델에 대하여 학습지 여하를 불문하고 저작권 정책 준수를 요구하는 시장지 기준을 채택한 것을 참고하여, 국내 서비스 제공을 연결점으로 하는 규율 설계와 WIPO 등 다자 논의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비 과제의 요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학습 단계에서는 적법 접근과 옵트아웃 존중을 요건으로 하는 TDM 면책의 입법과 학습데이터 투명성 의무의 도입, 산출 단계에서는 인간 창작성 판단 기준과 등록·표시 실무의 정비, 유통·보상 단계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와 보상금 체계 등 대량 권리처리 인프라의 구축이 그것이다. 이들은 상호 독립적 과제가 아니라, 투명성(집행 가능성)을 토대로 면책(접근 허용)과 보상(환류)이 교환되는 하나의 제도 패키지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를 둘러싼 콘텐츠 분쟁을 저작권법 단독으로 규율할 수 없는 이유는, AI가 이용하는 것이 저작물만이 아니고(비저작물 데이터, 개인정보, 인적 식별표지), AI가 침해하는 이익이 저작권만이 아니며(인격권, 영업상 이익, 경쟁질서), AI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이 상정한 행위 유형(복제·전송 등)과 정확히 포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저작권법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인접 법제와의 연계 방안을 법률별로 검토한다.

가. 저작권법의 구조적 한계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화풍, 문체, 음악적 스타일, 목소리의 특징은 표현 이전의 영역이므로, 특정 작가의 작품 수백 점을 학습하여 그 스타일의 신작을 무한히 생성하는 행위는 개별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창작자의 경제적 타격은 개별 작품의 복제보다 스타일 대체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 저작권법의 보호 논리와 피해의 실상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학습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에서 원저작물을 재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다. 나아가 '모델' 자체를 침해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국 고등법원은 Getty Images v. Stability AI 판결에서 모델 가중치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장·재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차적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복제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저작권법의 dogma가 학습이라는 기술 현실과 정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수십억 건의 학습데이터에 대하여 개별 권리자를 특정하고 허락을 얻는 것은 거래비용상 불가능하다. 이 한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책·집중관리·보상 체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인 배타권 행사 모델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사실 정보, 단순 촬영물, 이용자 후기 등)와 인간 창작성이 결합된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상당한 투자의 산물로서 무단 이용 시 경제적이

익 침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보호 근거가 요구된다.

나. 타법과의 연계 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연계

학습데이터에는 저작물과 개인정보가 혼재한다. 웹에 공개된 텍스트·이미지에는 성명, 얼굴, 식별 가능한 서술이 포함되며, 이는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를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7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통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의 AI 학습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근거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고, 2025년 8월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로 이를 구체화하였다. 연계의 쟁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저작권법상 TDM 면책이 도입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두 법의 적법성 판단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주체의 삭제·처리정지 요구권과 학습 완료된 모델의 비가역성(모델에서 특정 정보만 제거하는 machine unlearning의 기술적 한계)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산출 단계 필터링 등 대체 조치를 삭제 요구 이행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해석이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된다. 셋째, 얼굴·목소리와 같이 개인정보인 동시에 퍼블리시티권의 객체인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첩 적용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정보통신망법과의 연계

학습데이터 수집의 지배적 수단인 크롤링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제48조 제1항)와 접점을 가진다. 대법원은 이른바 숙박앱 크롤링 사건에서 접근권한의 유무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반에 공개된 API에 접근한 행위에 대하여 침입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어, 공개 웹사이트의 크롤링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그인 장벽의 우회, 봇 차단 조치의 무력화, IP 차단 회피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한 수집은 침입 내지 업무방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연계 방안으로는, 저작권법상 옵트아웃(이용 유보) 표시와 정보통신망법상 접근권한 판단을 접속시켜, 기계가독형 유보 표시를 무시한 수집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침해 금지·손해배상)와 행정적 제재를 연동하는 규율 설계를 생각할 수 있다. 산출 단계에서는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합성 음향·영상에 대한 표시·유통 규제(딥페이크 규율)가 정보통신망법과 AI 기본법에 걸쳐 있으므로 중복·공백이 없도록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약관규제법과의 연계

약관법과의 접점은 두 방향에서 발생한다. 첫째, 데이터 보유 플랫폼이 약관으로 크롤링·TDM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 장래 도입될 법정 면책이 계약으로 배제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EU DSM 지침이 연구 목적 TDM 면책에 반하는 계약 조항을 무효로 선언한 것(제7조)을 참고하여, 면책 규정 도입 시 그 강행 규정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대 방향으로, 플랫폼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자사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괄적으로 두는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급부 내용의 일방적 변경 조항으로서 불공정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실무는 포괄적·소급적 학습 이용 조항에 대하여 명시적 고지와 별도 동의, 거부 수단의 보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이용허락 해석론(허락 범위의 엄격 해석)

과 같은 방향으로 수렴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연계

부정경쟁방지법은 저작권법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유력한 보완 규범이다. 첫째,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제2조 제1호 카목)는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술적 관리조치가 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므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셋의 무단 수집에 대한 보호 근거가 된다. 둘째, 성과물 도용(같은 호 파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포괄하는바, 뉴스 기사·리뷰·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대량 무단 크롤링에 대하여 법원이 성과물 도용 내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 침해로 인정해 온 판례 축적(채용정보 크롤링 사건 등)은 AI 학습 맥락에 원용될 수 있다. 나아가 개별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스타일 모방형 산출물에 대하여도, 특정 창작자의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시장을 직접 잠식하는 상업적 이용이라면 파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셋째,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같은 호 타목)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무단으로 영리에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므로, 특정 가수의 음성을 모사한 AI 커버곡,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광고 등 산출 단계의 인격표지 침해에 대한 직접적 규율 근거가 된다. 다만 파목·카목의 적용은 보충적 일반조항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이 의도적으로 보호하지 않기로 한 영역(아이디어, 만료 저작물)을 우회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4) AI 기본법 및 기타 법제와의 연계

AI 기본법의 투명성·표시무는 그 자체가 저작권 규범은 아니지만, 저작권 집행의 전제가 되는 정보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계의 허브가 된다. 생성형AI 산출물 표시는 저작물성 판단과 등록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되고, 학습데이터 관련 문서화 의무는 침해 소송에서 증거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콘텐츠산업진흥법상 표시 콘텐츠의 보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규정도 비저작물 데이터 보호의 보완 규범으로 기능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대규모 크롤링으로 서버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최후 수단적 규율로 남는다.

다. 결론

AI 학습·산출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어느 하나의 법률로 완결적으로 규율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을 창작물 보호의 기본법으로 하되 각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의 층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중층적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표현의 보호는 저작권법이, 데이터·성과·인격표지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수집 행위의 한계는 정보통신망법이, 계약 공정성은 약관규제법이, 그리고 투명성 인프라는 AI 기본법이 담당하는 것이다. 설계의 원리로는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규범 간 정합성이다. 저작권법상 면책이 타법의 금지에 의하여 형해화되거나(약관에 의한 배제), 반대로 타법의 일반조항이 저작권법의 의도된 비보호 영역을 잠식하지 않도록 규범 간 충돌 해소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실체적 권리도 학습데이터 투명성 없이는 관철될 수 없으므로, 투명성 의무를 모든 연계의 공통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국제적 조율과 규범 조화이다. EU의 시장지 기준,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 일본의 면책 재조정 논의가 보여 주듯 규율의 실효성은 국경을 넘는 조율에 달려 있으며, 우리 제도 역시 K-콘텐츠의 권리 보호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두 이익을 함께 고려한 균형점 위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차상욱 교수(경북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2025년 AI 학습 보고서)과 같이,¹⁾AI 학습을 둘러싼 핵심 공익을 “기술혁신이 발전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위한 저작권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AI가 창작의 도구로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상 인간 창작을 저작물로서 제대로 충분히 보호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작가가 AI를 이용해 초안을 만들고 직접 고쳐 소설을 완성하거나, 영화감독이 AI로 배경을 생성한 뒤 인간이 촬영·편집·음악·장면구성을 결정한 경우 그 핵심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인간이 표현적 선택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이다. 즉 “AI가 생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에는 인간의 창작적 저작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이다. 미국 판례와 저작권청 결정은 이 원칙을 일관되게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판례의 태도(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er, et al. 사건)²⁾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의 태도(Zarya of the Dawn 사건의 미국저작권청 결정)³⁾도 현재 이 방향을 취하고 있다(2025년 AI 학습 보고서).⁴⁾AI를 보조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선택·배열·수정한 부분이 충분히 창작적이면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현재의 일반적인 생성형 AI에서 프롬프트만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출물 전체의 저작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둘째, 인간의 기여도가 없어 저작물로서 평가되지 않는 AI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법 등에서 독점권 등을 부여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AI 산출물에 새로운 저작권 또는 별도의 독점권을 부여할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을 시장에서 압도한다면 추가적인 독점권 부여가 오히려 저작권 제도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2025년 AI 학습 보고서)⁵⁾

셋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공정이용 판단(제35조의5)⁶⁾과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3조부터 제35조의4)에 대해 실무 및 이론 양면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설계 및 이론

1)“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A REPORT OF THE REGISTER (MAY, 2025)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3-Generative-AI-Training-Report-Pre-Publication-Version.pdf>>.

2)Thaler v. Perlmuter, No. 23-5233 (D.C. Cir. 2025).

3)2023.02.21. Zarya of the Dawn Letter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4)“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A REPORT OF THE REGISTER (MAY, 2025)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3-Generative-AI-Training-Report-Pre-Publication-Version.pdf>>.

5)Id.

6)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손해배상(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⁷⁾

미국 저작권청(2025년 AI 학습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습 목적, 이용한 저작물, 취득 경로, 산출물 통제, 기존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라 저작권 재산권 제한사유인 공정이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습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학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비상업적 연구·분석은 상대적으로 공정이용 가능성이 높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표현적 저작물을 이용해 기존 작품과 경쟁하는 상업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⁸⁾

넷째, 정리하면, AI 시대 저작권법의 역할은 AI 개발 자체를 막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 AI 자체에게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라는 전제 아래, 인간의 창작 유인을 유지하면서 기존 창작물의 합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산성과 사회적 편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간 창작물의 철저하고 선행적인 보호, 학습데이터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제도의 입법적 제도적 구축,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화하는 제도의 구축 및 중장기적으로 인간의 창작문화와 AI산업의 혁신 및 발전 사이에 합리적 균형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설계 등 관련 규칙이 사회적 합의 아래 법제화 될 필요가 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첫째,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의 우선 순위는 AI 산출물 관련 생태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합리적 조정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특히 AI 시대 저작권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그 정책 추진의 핵심 방향은 AI 산출물보다 학습데이터 관련 분쟁의 제도 정비일 것이다. 왜냐하면 AI 학습데이터의 이용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① 저작자(창작자)나 저작인접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 없는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점, ② AI 관련 산업계 즉, 생성형 AI의 개발자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생성형 AI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 시에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일일이 받기 어려운 실정이거나 저작권 침해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 실정이라는 하소연이 증가하는 점, ③ AI 혁신이라는 명분아래 저작권 제도의 고려 없이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이 진행된다면, 전문 작가·음악가·미술가·디자이너·건축가·프로그래머·언론·출판산업 등을 둘러싼 저작권 산업이나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점 등이 우려되고 있다.

7)해석론(解釋論)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공정이용 판단(제35조의5)과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3조부터 제35조의4)에 대해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① 비영리 학술연구·과학적 분석에는 상당히 넓은 이용 허용하고, ② 검색·분류·통계 등 비표현적 분석에서도 비교적 넓은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③ 범용의 상업용 AI 학습에는 공정이용·TDM 예외와 권리유보·라이선스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④ 특정 작가·신문·음악 카탈로그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경쟁물을 생성하는 경우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과 라이선스 시장을 보다 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 크롤링 등을 통해 불법 복제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가장 엄격하게 위법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A REPORT OF THE REGISTER (MAY, 2025)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3-Generative-AI-Training-Report-Pre-Publication-Version.pdf>>.

둘째, 종래의 저작권법 이론의 재정립이다. 미국 판례 이론으로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AI시대 산출물이나 생성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 판단에 있어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재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풍, 음악적 기법 등 풍(風)이나 스타일과 저작권 보호대상이 표현의 구별이나 판단은 생성형 AI 시대가 심화 및 고도화됨으로써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이용자의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다.

셋째,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절차 및 저작물 등록제도의 정비이다. 생성형 AI 시대가 심화 및 고도화됨으로써 AI산출물이나 생성물 관련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서 활용된 저작물 관련 소송인 경우에, 미국 저작권제도에서 시사를 받아, 저작권 소송 전에 필수적으로 저작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를 저작권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⁹⁾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이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하다(제4111조(a)). 다만, 저작인격권(제106조A(a))의 침해에 기해 저작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나 한국 이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등록은 소송제기 요건으로서 불필요할 것이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첫째,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이다. 저작권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로 적용되어 규제대상으로서 규율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대상이나 보호요건이 다르다. 예컨대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¹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데,¹¹⁾ 정보주체인 사람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개인정보자기통제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을 보호한다.¹²⁾ 이와 같은 양자의 관계에 비추어, 생성형 AI를 위해 학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 합법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결국,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 저작물인 학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가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남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과 관계이다.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립 여부 내지 면책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과 약관법의 적용 관계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9) 이와 관련하여, 가사 저작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이거나 침해 통지를 소장의 송달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청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소송제기는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미국 저작권법 제411조(a)).

10) 여기서 개인정보란 직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일정한 가명정보도 포함된다. 다만 익명정보는 제외된다.

11)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결정 [개인정보수집등위헌확인].

즉 사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허락을 어떤 방식으로 AI 사업자에게 부여했는가는 계약과 약관의 해석 문제이다.¹³⁾

참고로 현행 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는 중요한 약관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불공정약관조항의 일반원칙)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제1항)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제2항) 등은 무효(無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는 고객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無效)로 함으로써 제한하고 있다.¹⁴⁾

셋째,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법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과 약관¹⁵⁾을 통해 이용자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이용자 겸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의 저작물을 생성형 AI를 위한 학습데이터로서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문제된다.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대상으로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를 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즉,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 2.부터 6.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¹⁶⁾

1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3조, 제6조, 제12조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쓰지 못하게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조항들입니다. 명시·설명 의무, 공정성 유지의 일반 원칙, 그리고 고객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인정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예컨대,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15)예컨대 AI 서비스 가입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제〇〇조,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텍스트·사진·영상은 회사가 영구적으로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 모든 콘텐츠의 AI 학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넷째,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사용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호 카목과 관계가 문제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일정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권한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거나, 계약상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당하게 무력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최근 AI 관련 미국 판례의 경우, "Anthropic 사건"¹⁷⁾과 "Meta 사건"¹⁸⁾의 두 판결의 의의를 보면, 정당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만이 공정이용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 복제물은 변형적 이용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AI 기업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AI 학습에 있어, 경쟁 AI 기업이 접근통제를 우회하여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데이터가 저작물인 경우는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다. 미국 판례 중,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사건 판결¹⁹⁾은 피고가 원고의 Westlaw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인 LegalEase를 통하여 제작한 벌크메모로 학습한 것이 유료 AI 학습 데이터 시장을 침해한다고 보았다고 판시한 점에서 역시 최소한 그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전제가 이 판결의 바탕에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각의 데이터 하나 하나는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데이터에 저작권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AI 음성·아바타·버추얼 휴먼 문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과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의 상업적 무단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AI가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유명 배우의 얼굴을 이용해 상업용 광고 영상을 만든 경우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인격권(초상권, 성명권 등) 내지 퍼블리시티권 쟁점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²⁰⁾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가 중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²¹⁾

16)한편, 영업양수자들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3항).

17)Andrea Bartz et al. v. Anthropic PBC., 3:24-cv-05417-WHA- Document 231 (Filed on 6/23/2025) (N.D. Cal. 2025).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cand-3_24-cv-05417/pdf/USCOURTS-cand-3_24-cv-05417-0.pdf>

18).Kadrey et al v. Meta Platforms, Inc., No. 3:2023cv03417 - Document 598 (Filed on 6/25/2025) (N.D. Cal. 202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cand-3_23-cv-03417/pdf/USCOURTS-cand-3_23-cv-03417-37.pdf>.

19)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No. 1:20-CV-613-SB(D. Del. Feb. 11, 2025).

20)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21)예를 들어 특정 가수의 노래 자체를 복제했다면 저작권·저작권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노래는 새로 만들었지만 그 가수의 목소리를 AI를 통해 학습시켜 상업적으로 모사(模寫)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저작권접권 침해 문제로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즉,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자체가 곧 저작물인 것은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섯째, 스타일 모방 등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성과모방)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미국 판례 이론으로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있어, 화풍, 음악적 기법 등 풍(風)이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무단 이용하는 경우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성과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부경법 제2조 제1호 파목(성과모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에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결국 저작권 보호대상으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나 판단은 생성형 AI 시대가 심화 및 고도화됨으로써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저작권법의 보호 공백은 일정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그 보호의 공백이 보완되고 있다.

일곱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의 경우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7에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은 AI 산출물의 온라인 유통과 네트워크 안전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생성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유통될 때 별도로 규율되는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²²⁾

22)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통신망법이 크게 담당했지만, 2020년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주제

AI시대에서 저작권 제도

최상필 교수(동아대학교)

1.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

인공지능전환을 뜻하는 AX는 기업의 일부 분야에만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AI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DX)을 통한 변화를 넘어 인공지능전환(AX)을 받아들이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이제는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활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AI 커버 곡과 같은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s)의 등장이다.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기 위해 생성형 AI는 우선 학습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의 많은 내용들이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므로 이의 수집이나 저장과정에서 복제(일시적 복제 포함)행위가 발생하며,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전송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생성형 AI가 제작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활용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는 나타난다. 즉, 생성형 AI가 만든 디지털 레플리카를 타인이 무단으로 활용할 때 법적 보호의 대상 및 누가 권리자인가 하는 문제는 법학 영역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며, 이로 인해 사회 각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입법과정에서의 논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2.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비 및 검토해야 할 과제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기존의 디지털 저작물과 특성이 다르며 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띄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거나 혹은 사회발전을 이유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론이 필요한 바, 외국의 사례 및 현행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참조하여 생성형 AI의 활용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와 새로운 저작권 제한사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의 활동이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과 데이터를 독창적으로 창작하면 되지만, 이는 생성형 AI를 보다 현실세계와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생성형 AI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저작물과 데이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때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권리자의 동의를 일일이 얻도록 하는 것보다는 권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상업적 목적의 생성형 AI와 비상업적 목적의 생성형 AI로 나누어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요건과 한계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면책규정 이외에 공정이용규정의 적용과 함께 보상규정을 두어 저작권법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방향설정도 뚜렷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AI 시대에 돌입한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규범적 측면에서의 논의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생성형 AI 구현의 법적 허용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3.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한계 및 타법과의 연계 방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생성형 AI는 현재와 같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지시(프롬프트)에 따라 각종 텍스트 및 이미지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인간이 목표를 설정해 주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동화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직원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에이전틱(Agentic) AI 단계, 그리고 AI와 하드웨어가 융합되어 물리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장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피지컬(Physical) AI 단계로 진화해 간다.¹⁾ 그러나 이러한 산업발전과 별개로 생성형 AI의 고도화는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허가 없는 수집 및 변경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작동에 대한 인간의 제한을 회피하는 등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증대시킨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²⁾

Chat GPT 같은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작성된 미국의 2023년 「연방 사이버보안 연구 개발 전략 계획」은 AI시스템 자체의 안정적인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대적 머신러닝³⁾의 방어와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이버 보안은 이미 그 자체로 산업화가 된 AI와 모든 국가 인프라의 중심이 된 생성형 AI의 신뢰와 안전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만으로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레플리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어떤 대상에 대한 생성형 AI에 의한 복제이미지 생성 과정이나 생성형 AI가 보이스 클로닝(Voice Cloning)⁵⁾을 사용하여 기존의 가수의 음색을 모방한 오디오를 생성한다면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이나 AI의 학습과정에서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별도로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엔비디아 젠슨 황 CES 2025 기조 연설(2025년 1월 7일(화)/KBS)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K_iwsS7xOs

2)RS Global, 「2026 인공지능 대전환(AI)을 주도할 디지털 혁신 기술 트렌드와 사업화 전략」, RS Global, 2026년, 179면 표 참조.

3)AI 모델을 직접 겨냥하는 특화된 공격법, 즉 학습 데이터를 고의로 오염시키는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 AI의 눈을 속이는 회피 공격(Evasion Attack), 그리고 LLM을 무력화해 탈옥이나 기밀 유출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등.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IBM 사이트 참조: <https://www.ibm.com/kr-ko/think/topics/adversarial-machine-learning>

4)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Federal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December 2023), p. 28.

5)기존의 음성 샘플을 학습하여 거의 비슷한 오디오를 생성하는 기술.

[제2주제] 지정토론

전문인력 양성

좌장

홍승기 변호사 · 초빙교수(인하대학교)

토론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신재호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임원선 초빙교수(성균관대학교)

조형찬 부연구위원(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조희경 교수(홍익대학교)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최상필 교수(동아대학교)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좌장] 홍승기 변호사 · 초빙교수(인하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현행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는 한 로스쿨을 통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가능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움

가. 전문트랙, 인증과정 도입 등은 오래 논의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변호사시험 과목과 연계되어 있어 변호사법 개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

나.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에게 소송 상담 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데, 특정 과목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단, 리걸클리닉 담당 교수가 저작권 전공자라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임기 동안 저작권 중심의 운영을 시도할 수는 있음.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대한 집중도가 높으므로 대부분의 로스쿨이 리걸클리닉을 형식적으로 운영함.

다. 변호사시험 과목 중 지적재산권은 시험 준비에 부담이 많다고 알려져 있음. 상표권을 제외하더라도 저작권과 특허권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수험생들에게는 그것 자체로도 부담이 됨.

라. 결국 로스쿨에게는 저작권법 전공 활성화 방안을 기대할 여지가 없다고 이해함.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가. 10여 년 전에 저작권위원회가 수개월 과정의 심화 과정을 개설했던 적이 있음. 기획자의 의도는 대학원 석사급의 수업을 시작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1회로 종결하고 계속 지속되지 못하였는데 수강생들도 열성적이었다고 기억 됨. 당시 강의 정부를 전문가 1인이 전담하는 방식을 기획하였으나, 문체부에서 강의료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체 강의의 약 2/3를 원래 담당하기로 했던 전문가가 맡고 나머지 1/3을 제3자에게 맡겨서 결국 2인이 진행하였음. 당시 수강생들 간에도 서로 친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기억함.

나.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방학 동안의 집중 강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단, 로스쿨 학생들이 기말시험 직후 1주일 정도만 지나도 인턴 활동 등으로 자유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음.

2025년 6월 28일 및 29일 양일에 걸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콘텐츠·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아카데미"를 개설한 바 있음. '콘텐츠 계약 실무', '영상 공연 콘텐츠 관련법 및 분쟁사례', '웹툰 만화콘텐츠법 및 분쟁사례', '음악콘텐츠법 및 분쟁사례', 게임콘텐츠법 및 분쟁사례, 이미지기반 콘텐츠법 및 분쟁

사례' 등 각 과목을 두 시간씩 편성하였음.

강사는 예상외로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임대한 강의실이 협소하여 부득이 등록을 조기 중단하여야 했음(40명 수용 강의실을 마련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지원자가 넘쳐 부득이 50명을 수용하기로 하고 추가 접수는 중단), 강의 이후의 평가도 폭발적이었음. 막상 로스쿨에서는 필수과목과의 충돌 등으로 수강 기회가 없거나 수강을 포기하지만, 저작권 수강에 대한 욕구는 크다는 뜻임. 특히 강의 수료 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 바 학생들이 대단히 흡족해 하였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금년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로스쿨 재학생들로부터 금년도 강의개설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였음.

저작권위원회가 아예 정기사업의 하나로 매년 여름방학 및/혹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 정도의 저작권 집중 강의를 개설하고 적절히 홍보하면 성공할 사업이라고 판단함.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명의 수료증이 매력 포인트이고 실제로 기관 홍보에도 대단히 유익함, 로스쿨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료증'에 관심이 많음.)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과거 일정 기간 변호사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고 반응이 좋았다고 기억함.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다양한 연수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웹 강의를 중심으로 보임.

저작권위원회 강의를 변호사 의무 연수 강의로 대체하도록 구성하고 대한변협의 승인을 얻으면 수강생을 확보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함. 대한변협은 강사의 수준이 적절하다면 시비를 걸지 않고 의무연수로 승인을 하고 있음.

참고로,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 단위 16시간임(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따라서 필요한 16시간을 1개 혹은 2개의 주말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강의할 수도 있고, 1년에 필요한 8시간만 토요일 하루, 혹은 토요일/일요일을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묶어서 진행한다면 저작권을 10시간 정도로 융통성 있게 구성하여도 됨. 단, 의무연수 연 8시간은 전문연수(저작권강의) 7시간, 변호사윤리연수 1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로스쿨 내에서의 지식재산권법 교육의 딜레마는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해서 실무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보니 학생들이 지식재산권법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막상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어서 결국 이 분야 공부를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지식재산권법 전공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자 각 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 왔듯이, 지식재산권법 전공자들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또 그러한 법조인들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산업적 토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법 전공 법조인 채용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 등). 그리고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문 후속세대의 경우 각 대학에서 이 분야 교수 TO가 확대되지 않는 한 지금의 분위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식재산권법 전공 교수 채용에 대한 혜택 부여(별도의 추가 TO 인정 등)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지금까지 해 왔듯이 다양하고 시의 적절한 연구 과제 추진은 유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AI 시대를 맞이하여 좀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과 같이 AI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정리 분석하는 등의 연구 역량은 그 중요성이 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다양한 선행 연구나 주요국의 정책, 법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활용 기술을 향상시키는게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저작권 제도의 조사 및 정리 역량 강화, 그리고 그와 같이 정리된 결과물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역량 강화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산학연 연계가 필요한데, 다만 지금의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이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 연계 활동을 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산학연 연계 활동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상호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공동연구의 진행, 산업계

가 주도하는 연구 영역의 발굴 및 추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실무와 이론이 활발히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권법의 교육이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폐강만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심정이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지식재산권법을 비롯한 전문과목의 활성화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율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합격율을 제고하지 않고는 오히려 갈수록 전문과목은 특정 과목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과목 이수제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과목으로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유도할 수 있고, 비록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이수제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채용과 전문과목 전체의 활성화 및 학생의 선택권이 100%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기존 저작권법 연구자 또는 실무가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나 전문가 세미나를 더욱 많이 개최하고 신진 학자나 전문가들이 학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 편 오히려 이 기회에 저작권 제도의 본질적인 영역을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입법사와 법이론의 발전을 다루는 법제사,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법철학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작권을 중심으로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제도의 헌법과의 연관성, 저작형법을 비롯한 형사법,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법,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국제조약법 등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작권 관련된 학문적 기초 마련과 저작권 기초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저작권과 관련 실무 전문가는 이미 한국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물이 서말이라

도 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실무계와 정부 공무원, 학계, 산업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계에 계시는 학위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과 학술적인 내용의 발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저작권법학자대회와 같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특히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등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정도의 단기 심화과정 등의 개설도 좋을 듯 한데 아무래도 참여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인 규명) 먼저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공계 출신 로스쿨 지원자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 있다. 경력단절 우려도 있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하로 인해 특성화 교육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법조일원화 등 방법)하는 것이 로스쿨 지재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거점대학 지원사업) 로스쿨은 IP보호전문가를 양성하는 둘도 없는 기관이다. 정부는 지방 IP거점대학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도 주로 창출과 활용에 방점을 두고 정작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양성을 소홀히 해 왔다. IP를 특성화한 로스쿨을 IP보호전문가 거점대학으로 삼아 집중 지원해 주어야 한다. '법무법인 다래'의 몰락으로 대변되는 지식재산 쟁송 생태계의 사실상 붕괴 원인이 무엇인지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유인책)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식재산권법 과목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생소하고 변리사와 시험을 경쟁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다. 나아가 이질적 성격의 두 과목(특허와 저작권)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출신의 입학생 모두에게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그 대안으로 지식재산권법 시험과목을 두 과목으로 과목 분할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중의 하나이다. 이공계 출신은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인문사회계는 저작권법과 상표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하는 방법이다.

(2) 일반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석·박사 과정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 경로를 유지·강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봉책/방향성) 관련 교과목개편, 연구논문 작성 지원, 전문 트랙 또는 인증과정 도입 등은 부수적이고 그리 큰 유인책이 될 수 없다. IP전공자의 진로가 탄탄하게 보장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들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로도 널리 채용되고 활용하는 붐업과 선순환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교수 요원 선발 확대) 2007년 로스쿨출범을 앞두고 대거 지재전공 교수요원들이 선발된 이후 거의 20년 동안 거의 답보상태이다. 지재전공 교수가 정년을 맞아도 새로운 교수선발이 없다. 박사를 해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데 누가 선풍 학문의 길로 뛰어 들겠는가? 재정이 빈약한 대학들은 교수선발에 극히 소극적이다.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기금교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IP전공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양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싱크탱크 확충) 그나마 저작권위원회의 법제연구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IP전공자를 선발해 주어서 연명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식재산처 승격을 시켜놓고도 싱크탱크 확충은 커녕, 재정적자를 메우겠다고 기관 통폐합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관통폐합 여부의 효과와 필요성, 부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부문에서는 과감하게 진행시켜야 하겠지만 확충할 곳은 오히려 확충해 나가는 이원적 전략이 요청된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가. 신진연구자 지원 : 한국연구재단의 선별적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분야 제한이 없어 저작권 전공자가 선발되기 어렵다. 저작권 분야 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별도로 신진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면 금상첨화

나. 장기 연구과제 발굴 :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 정책연구 과제는 대학의 연구기관에 장기과제(3+3)로 부여하여 대학 연구기관을 통한 저작권 전문연구자 양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다.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 지원 :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비영리 학술단체들의 자체 운영기금은 절대 부족 상태에 있다. 자체 학술지조차도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분배보상금의 공적 활용처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곳이다.

라.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 한중저작권법학회, 한미 저작권연구회 등 자발적 국제교류가 진행되다가 운영자가 노쇠하면 제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위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가. 실무 전문가 양성방안

실무자 재교육, 공동 연구 강화, 저작권 전문 연수과정, 산학관 협의체 운영 등

나. 거대 콘텐츠 산업발전 공동 논의 플랫폼 구축 제안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로스쿨에 대해서는 모름 - 다만 로스쿨 수업방식에 있어서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일반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실무자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학을 하지 않고 실무만을 하든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학교는 저작권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매학기 저작권 수업이 개설되는지도 의문이고, 최소한 저작권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수업 개설하는 경우에 지원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신진연구자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신진연구자가 학교에서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다면 지속적인 신진연구자가 저작권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에는 신진연구자들이 학교로 거의 유입이 되지 않는다. 학교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등의 공공기관에서 이들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새롭게 배출된 신진연구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해외 국가의 제도를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장기연구과제를 국가별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실무에서도 저작권 관련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신진연구자들을 실무분야에서는 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전문가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진연구자들이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자들을 실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실무분야에서 최초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다. 이들이 실무를 이해하고, 이론을 발전시키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사람들을 데리고 6개월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심도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기술분야의 사람들

은 저작권법을 집중해서 수업을 집중적으로 수강하고, 법을 한 사람들은 저작권 기술분야에 집중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정부지원프로그램(과거의 MIP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에 몇 개 대학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법학부터 교육하는 것은 실무상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중관리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해서 야간에 개설하는 저작권집중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관련업계 사람들을 데리고 저작권 집중과정 야간 개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신재호 교수(경상국립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위 질문을 통합하여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① 학문 후속세대 양성방안, ② 실무 전문가 양성방안, ③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의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현시점에서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일정 세대에서의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정적 지위에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매년 1명씩이라도 저작권 전공자를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채용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해 나아갈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이라는 학문은 그만큼 매력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부처나 저작권위원회의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강의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개설되지 않는다면, 대학에 저작권 전공 교수 채용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로스쿨에서조차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저작권 강의 수요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 과정의 법학과에서도 저작권법은 여전히 마이너한 교과목으로 대부분 1강좌 정도만 개설될 뿐입니다. 많은 다른 전공에서도 필요한 교과목이긴 하지만,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교양과목으로는 인기 과목으로 개설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대부분 대학에 저작권 전공 전임교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하여 1~2 강좌만 개설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저작권을 학부의 별도의 전공으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다른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학문이지, 저작권 지식만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굳이 저작권 전공 전임교수를 채용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악순환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에서의 충분하고, 지속적인 강의 수요 확보가 관건인데, 사회에서의 관심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대학에서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실무에서의 저작권 전문가 양성은 현재도 저작권위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에서의 저작권 강의 수요 확보와도 관련이 있지만, 문화예술 및 저작권산업계 종사자의 저작권 역량을 제고하고, 저작권 실무관리와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고, 문화 예술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 콘텐츠 산업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제공된다면 교육 수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운영사업'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운영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우리 학교는 매년 10여 개의 저작권 강좌를 정착시킬 수 있었고, 학생들의 저작권 지식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단된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운영사업'을 확대한 '저작권 학위과정 운영 지원사업'을 저작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합니다. 저작권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위과정이 신설되고,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제공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저작권 전공교수로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무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야간에 대학원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운영지원 사업'에서처럼 학부과정에서는 복수전공이나 마이크로디그리 형태로 저작권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저작권 전문지식을 함양한 창의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는 지식재산연구원과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연구원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프로를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이 기본과목의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지식재산권법의 학습을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학생들도 전공분야가 없는 일반변호사로 활동하기에는 경쟁력이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격률과 전공분야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선택과목 즉 전공과목을 선택할 시에 기준이 되는 요소로는 시험의 난이도, 공부량과 취업과의 연계성을 들 수 있다. 시험의 난이도는 조정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공부해야 할 양이나 취업과의 연계성의 학교차원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분야이다. 무엇보다 저작권법 내지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면 취업이 더 용이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분야를 공부하는 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저작권법 연구자들이 연구역량을 안정적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신진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진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과제 외에 연구자 스스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이들 기관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면 현재 존재하는 기관들 사이에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은 주로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기관들로서 이들 기관들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의 경험이 공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여 연구기반의 양적 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정년보장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체로 인해 기본법 중심의 수험 준비가 심화되면서 전문선택과목 및 특성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강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점수 산출 방식 및 과목별 난이도 편차로 인해 학습 부담이 적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이 발생하여 지적재산권법 선택자 수가 감소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시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과목을 점수 반영이 아닌 P/F제로 전환하여 수험생의 표준점수 유불리 부담을 완화하거나, 나아가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전제로, 지재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실무·임상 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계별 모듈형(Track) 교과체계 구축

- 기초(1단계): 저작권법·특허법·상표법 기본 이론 및 핵심 판례 분석
- 심화(2단계): 최신 쟁점 중심의 융합 세미나
- 실무(3단계): 계약서 작성·검토, 저작권 라이선싱 협상, 분쟁 해결 실무

● 학제 간 융합 및 실무가 협력 팀티칭

- 컴퓨터공학, AI, 문화콘텐츠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합 강의를 개설하여 기술적·산업적 이해를 제고
- 로펌 IP 전문 변호사, 콘텐츠·IT 기업 인하우스 변호사,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강의를 정례화

● 지식재산 특화 법률클리닉(IP Clinic) 운영

- 학내 창업동아리, 지역 스타트업, 인디 창작자 및 비영리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계약 검토, 분쟁 상담을 직접 수행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 저작권 전문 펠로우십(Fellowship) 및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 신진 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5~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 전용 연구 장려금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

● 학술 논문 공모전 및 게재 인센티브 확대

- KCC 주관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의 지원 규모 확대 및 사후 연구 연계(등재 학술지 『저작권연구』 게재 등) 강화

● 신진 연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저작권 전문 교수진, 로펌 전문 변호사, 공공기관 정책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를 연계하는 심화 세미나 및 멘토링

● 글로벌 저작권 연구 네트워크 및 교환 프로그램 지원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미국 저작권청(USCO), 일본 문화청, EUIPO 등 해외 주요 기관 및 대학 IP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해외 학술대회 발표 및 단기 연수 지원.

● 단기 실무 용역 중심에서 '중장기 기초·선제적 정책연구'로 전환

- 당면한 법 개정용 단기 용역 외에, 5~10년 후 저작권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하는 기초 법리 연구 및 제도 개선 방향성 연구 비중 확대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 상설 협력 플랫폼 운영

- 참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정부),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공공기관), 한국저작권법 학회 등 유관 학회(학계), 출판, 음악, 영상, 게임 등 관련 산업 협회 및 주요 로펌(산업계).
- 주요 기능: 산업계의 최신 법적·실무적 인력 수요 조사, 로스쿨 및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 권고, 인턴십·연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평가.

● 현장 수요 기반의 '저작권 실무 직무 표준역량(K-NCS 연계/특화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 계약·라이선싱, SW·데이터·AI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분쟁조정·소송, 글로벌 권리 침해 대응 등 실무 영역별 핵심 역량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대학 및 공공 교육과정에 환류

● 겸임·초빙교원 활성화

- 산업계의 인하우스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KCC 전문위원 등을 로스쿨 겸임/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실무 중심 팀티칭 강의 확대.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수험서 위주의 교육이 정착되면서,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 전공자가 급감하고 학문후속세대의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전공자의 부족은, 단순히 학계에서 학문적인 발전이 지체되는 것을 넘어서, 실무적으로도 저작권법을 한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는 법조인의 양산되면서 새로운 판례의 형성에도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사건은 일반 판사나 변호사 모두에 기피대상인 머리아픈 학문이 되었고, 내용증명의 남발과 전과자의 양산이라는 법조 폐해의 지적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 필수 과목에 편입: 저작권은 단순히 '지적재산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강국으로서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진 기업 실무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현대 법학 기초'의 하나로 선정하여 모든 로스쿨 학생이 필수과목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 'AI산업과 법률', '콘텐츠산업과 법률', '글로벌 IP 분쟁' 등 첨단 응용 과목을 묶은 과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위 표기 및 인증서 부여: 미국 로스쿨과 같이, 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졸업 시 '엔터테인먼트법 혹은 저작권법 전문 트랙 이수 인증'을 수여하고, 리걸테크 및 콘텐츠 기업 채용시에 차별화된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저작권 정책 과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진 및 중견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저작권 연구자 지원 및 연구과제 발굴

● **신진연구자 전용 연구용역 쿼터제**: 국가 저작권 연구용역 공모 시 '저작권법 석사 혹은 박사학위 취득자, 혹은 실무 7년이상 경력자'가 반드시 책임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라장터 연구용역에 저작권법과 무관한 홍보회사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기초 법제 연구과제 지원: 단발성 현안 대응 용역에서 벗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3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구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 상근 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사건에 대하여 조정결정문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예. 대법원 계약직 재판연구관 참고). 현역에서 정년퇴임한 학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신진-중견 연구자 학술 교류 및 연구모임 지원

● **'젊은 저작권 학자 포럼' 운영 지원**: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유서깊은 학회의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을 신진 학자 혹은 법조인들에게 할당하고 높은 발표사례비를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신진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정기 포럼 및 연구 모임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 **우수 논문 포상 및 학술지 게재 지원**: 저작권 정책·법제 발전에 기여한 신진 연구자의 우수 학술 논문에 대한 포상 제도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저작권 학술지(SSCI 등) 게재 비용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 **국제기구 파견 지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ALAI(국제저작권학회), 미국 저작권청(USCO), EU 지식재산청(EUIPO)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기관에 국내 신진 연구자를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고도화된 저작권 환경에서는 이론에 치우친 연구자나 기술·법리에 어두운 실무자 모두 한계를 가집니다. 저작권 전문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를 동시에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협력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가. 현직자 재교육 및 전문 연수 과정의 내실화

● **'IP-Tech 융합 전문 연수 과정' 상설화**: AI 개발자, 콘텐츠 기획자,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저작권 이슈와 기술적 이해를 융합한 맞춤형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구자-산업 현장 체류 펠로우십**: 학계 연구자 및 대학원생이 일정 기간 AI 기업이나 콘텐츠 플랫폼 사에 파견되어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저작권 갈등과 라이선싱 구조를 체험하는 '연구자 현장 체류 프로

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율 제고를 위한 제언

- 현재의 지적재산권법은 지나치게 두꺼운 교과도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기피과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조항(신탁단체조항 등)은 별도 법률로 분리함으로서 '저작권법'을 경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량화를 전제로, 지식재산처(특허법) 및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단권화된 공인 수험서를 발간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임원선 초빙교수(성균관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저작권법 등 특수 전문 분야의 법 전공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과정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몰됨으로써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 전문 분야의 법 전공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 제도가 현재와 같이 시행되는 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제한적이다.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지적재산권법을 보다 많이 선택하도록 지적재산권법의 시험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법은 상표법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제까지 특허법과 저작권법에서만 출제되고 있다. 응시자에게 출제범위의 불확실성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출제 범위를 특허법과 저작권법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방안을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정책 및 법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관련 주제를 발굴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장을 자주 (월 1회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 판례 연구회"와 같은 형식의 "저작권 법정책연구회"의 마련을 제안한다. 저작권법 판례 연구회가 법 해석론에 관한 연구회라면 저작권 법정책연구회는 입법론에 관한 연구회라고 할 수 있다.

계간 저작권 등 저작권법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저작권법 및 정책에 관하여 의미있는 제안을 하는 논문의 저자를 초청하여 정책 및 법 개정 관련 발표와 토론을 정례적(월 1회)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를 초청할 수도 있지만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한 피어리뷰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안이나 주장에 대해 자발적이고 학술적으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 이를 공식화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작권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보수교육의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90년대에 진행했던 “저작권 문화학교”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작권 분야에도 전문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을 고려하여, 저작권 전 분야를 뭉뚱그려 진행하기보다는 산업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 분야별 관련 업계에서 담당자가 직접 강의를 담당하거나 견학 또는 일정기간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협회나 업계 등에서 협력 협정을 통하여 신입사원 연수 대신으로 활용하거나 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가점을 주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문화학교 출신들 사이에 자연스레 유대가 형성되어 산학연간 협력이 활성화되었던 전통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조형찬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¹⁾

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관점

이 문제는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의 목표와 의사 결정이 '변호사시험'에 편중되어 있는 점에 따른 것이므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체계부터 살펴야 한다. 현재 저작권법이 포함된 지적재산권법²⁾ 등 선택과목 시험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표준편차를 활용한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LEET)을 응시하고 학부 입학과 비슷한 구조의 입시를 거쳐, 3년간 엄격한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교과목 이수를 한 후에 응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인원 대비 50% 초반에 머무르는 상황에서,³⁾ 기본 7법(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에 대한 ① 선택형, ② 사례형, ③ 기록형을 5일 내에 모두 응시하면서 그 기간 마지막 날에 응시하는 선택과목 시험조차⁴⁾ 기본 7법 사례형과 동일한 표준점수 방식의 상대평가를 취하고 있는 이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습량이 적은 것, 심지어 참조 가능한 법조문의 수가 적은 것이 응시과목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적재산권법 과목의 경우 -그마저도 매우 적은 인원 내에서- 변리사시험 합격 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응시인원의 대부분일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과목 선택을 더욱 주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 체계 전환의 필요성⁵⁾

1) 이 부분의 서술은 저작권법 전공 활성화를 넘어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 차례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끝에 능력 부족으로 결국 변호사 자격 취득에는 이르지 못한 본 토론자의 경험에 비추어 꼭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 내용을 토론문에 담은 것이다.

2) 「지식재산 기본법」의 존재와 별개로, 현재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험과목명은 「지적재산권법」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시험 범위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외되어 있다.

3) 심지어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로 응시인원 중 과반의 불합격자를 배출하였다.

4)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는 오전 민사법 사례형(210분), 오후 선택과목 사례형(120분) 시험을 응시한다.

5) 사실 변호사시험은 선택과목 뿐만 아니라 필수과목 설정 방식부터 법령 체계상 유연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본 각주에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은 선택과목과 달리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1항에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지금은 폐지된 사법시험 필수과목이 구 「사법시험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었던 규범 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가령 변리사시험 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이나,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을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의 각 별표도 모두 법률이 아닌 시행령 별표 체계 내에서 구체적인 필수과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주로 시험 차시(1·2·3차시험)의 구분이나 시험 과목 면제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변호사시험 필수과목 설정의 유연도가 타 시험에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이른바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 4과목의 선택형 시험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정부제출안으로 발의(2020. 10. 6., 의안번호 제2104549호)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 변화에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AX 및 DX 시대를 맞이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순한 시험과목 유형의 조정조차도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범 방식이 바람직하지, 그리고 법체계상 문제가 없으니 가볍게 넘길 것으로 보고 말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례형을 유지하면서 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시험년도마다 과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형평과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저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평가 방식을 객관식(선택형)으로 전환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가령 70%⁶⁾ 상 득점할 경우 합격으로 처리하는 방식, 또는 ② 선택과목 시험 응시를 로스쿨 재학 중 해당 선택과목 관련 교과목 2개 이상 이수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시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은 부담 경감의 '공식화'와 거리가 멀어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⁷⁾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개정을 통해 시험 응시 부담의 감면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⁸⁾

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상응하는 각 로스쿨별 특성화 강화

앞서 언급한 내용은 결국 변호사시험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지가 필요한 영역이나, 10여년 간 학계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개선을 논의해왔음에도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의 개정 없이도 실시할 수 있었던-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CBT(Computer Based Test) 전환 외에는 2009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로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국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 학교에서 궁여지책으로라도 선택과목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설립 초기에 인가 신청 시 각 학교별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여 해당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으나,⁹⁾ 이 점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과 직결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근래에 들어 학생들이 각 학교별 특성화 트랙을 고려하여 입시 전략을 세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성화와 별개의 선택과목 교육 강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¹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졸업요건으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중 1개 이상 관련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할 것을 필수로 하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선택의 자율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교과목 이수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선택은 상호 연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은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더라도, 졸업을 위해 국제거래법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법 교과목 2개를 이수하도록 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찰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6) 70%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4]의 3.에 규정된 법조윤리시험 합격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7) 정보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된 예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의 문항이 출제됐다는 논란이 있어 결국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생 전원을 만점 처리한 바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2문(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예가 있다. 법률신문 2021년 1월 20일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28>> (최종검색 2026. 8. 14.) 참조.

8)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의안번호 제2204288호(2024. 9. 25. 권철승의원 대표발의), 제2208189호(2025. 2. 17.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제2208601호(2025. 2. 28.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등이 선택과목 시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9) 각 학교별 특성화 분야 현황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https://akls.kr/company/present.php>> (최종접속 2026. 8. 14.) 참조.

10) 박성동, “로스쿨 기초·전문법학 의무화...변호사시험 종속 벗어나야”, 법률신문 2025년 9월 27일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21>> (최종접속 2026. 8. 14.) 등 다수의 기사 참조.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사실 지금은 저작권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 자체에서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정책 및 법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 양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정책 및 법제 실무 또는 관련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나,¹¹⁾ 이는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분배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본 토론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각설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논문공모전이며,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2023년까지 16회에 걸쳐 개최되었던 ‘저작권 대학(원)생 우수논문공모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우수논문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¹²⁾ 저작권 소관 기관에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을 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를 먼저 내려놓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전문 인력의 연구 의욕 고취 등을 위해 과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을 개최한 바 있으나, 제1회(2020년) 및 제2회(2021년)를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학술논문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해 서라면 최소한 인준이 있는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있는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우수 학위논문 시상’만이라도 진행함으로써 저작권 신진연구자 인력 pool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법제 연구의 수요는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돌입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공급은 크게 급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분야의 전문적인 ‘비교법 연구’를 희망하는 인력에 대한 외국 유학 지원(석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신진학자 대상으로 한정)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다. 단, 저작권 전문 연구를 위한 유학으로 한정해야 지원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 교육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는 학교 목록 선정이 필요하고, 유학 과정에서 저작권 학습 및 연구성과를 반기별(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석사과정보다 ‘박사과정’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실무가와 저작권 연구자의 협동 및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 토론자 외에 많은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11)본 토론자가 변호사 자격 없이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도 저작권 정책 및 법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의 전문경력관 재직 경력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 재직 경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2)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지식재산 대학(원)생 우수논문공모전’은 2025년 제20회 공모전까지 공모 주제에서 “저작권 제외”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6년 제21회 공모전부터 “저작권 포함”이 공모 주제로 명시되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조희경 교수(홍익대학교)

1. 서론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 전공 활성화는 그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지상 과제인 현행 구조에서 지식재산권법이 시험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지 않는 한 수강 유인의 근본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필수과목 지정의 가능성 또한 요원해 보인다. 부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과 공급보다는 채용 수요 쪽에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저작권과 관련된 수습변호사 자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공급되고, 로스쿨에서의 저작권법 수강 이력이 그 채용에서 가산점으로 작동한다면, 수강을 견인하는 경로가 일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3년의 로스쿨 과정에서 저작권법 '전공'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자체가 현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 안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설령 전공 활성화에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저작권 전문가 육성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3년 과정 중 한 학기짜리 저작권법 수업을 수강한다고 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년은 변호사로서의 일반 역량을 갖추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며, 전문화는 애초 로스쿨 재학 중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의 과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학 중 전공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는 것은, 그 노력과 투자에 비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작권 분야는 지식재산법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영역이다. 특허법이 이공계 기술 지식을 사실상의 진입 요건으로 삼는 것과 달리, 저작권법은 각 분야의 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 위에 법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로스쿨에서 저작권법을 수강하여야만 저작권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이 사양화되는 것이 전체적인 저작권 생태계에 바람직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현실적 목표는 입문 기회 제공과 관심 유인에 두어야 하고, 이 문제는 로스쿨 교육의 근본 구조를 손대지 않는 한 쉽게 교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도 로스쿨 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있다. 다만 그 목표는 전공 심화가 아니라 입문 기회의 제공과 관심의 유인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컨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실제 상담 사건을 다루는 저작권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분야의 실체를 보여 주는 방법이 된다. 저작권법 강좌를 엔터테인먼트법, IT법, 데이터법 등 응용과목과 묶어 선택 트랙으로 편성하고 실무가 겸임교수의 공동강의를 활용하는 교과 개편, 그리고 학생 논문 공모와 학술지 게재 지원을 통하여 연구 경험의 첫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전공자 양성'이 아니라 '장래 전문가의 저변 형성'을 겨냥한 장치라는 점에서 앞서 본 구조적 한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은 크게 세 갈래로 특화하여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전통적 의미의 저작권 전문 법률가, 둘째는 저작권 관련 분야의 실무 전문가, 셋째는 저작권법 학자이다. 세 갈래는 양성의 목표와 대상, 교육의 내용과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제도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맞는 경로를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저작권 전문 법률가의 양성

저작권 분쟁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의 태양은 링크 제공, 스트리밍,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이용 등으로 다양해졌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산출물을 둘러싼 분쟁처럼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 늘고 있다. 여기에 국경을 넘는 침해와 준거법의 문제,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교차하는 분쟁 구조까지 더해지면, 저작권 소송과 자문은 일반 민사 사건의 연장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전문 법률가 양성의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로스쿨 재학 중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로는 세 단계로 설계할 수 있고, 여기에 전문성 인증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더한다.

(1) 진입 단계: 저작권 특화 수습·채용 트랙의 확충이 필요하다. 로펌의 지식재산 부문, 콘텐츠 기업의 법무 부서,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저작권 업무를 전담하는 수습변호사 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 채용에서 로스쿨의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수강 이력과 관련 논문·활동 경력이 가산점으로 작동한다면, 로스쿨 단계의 수강을 견인하는 부수적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관련 산업계가 장학금 등의 유인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 인력의 저작권 분야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2) 심화 단계: 실무 중심의 전문 연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젊은 변호사가 저작권 사건의 소송 수행, 라이선스 계약의 설계, 침해 감정과 조정 실무를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와 연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조정 절차 참여 등 현장과 결합된 훈련이 병행될 때 효과가 커질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이 초년 법률가를 선발하여 실무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Barbara A. Ringer Copyright Honors Program은 이런 심화 연수의 좋은 모델이 된다. 아울러 실무와 함께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저작권 특화 디플로마 제도를 대학과 연계하여 설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반드시 석사과정이 아니라도 저작권에만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퀸메리대학(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이나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에서 제공하는 대학원 디플로마(Postgraduate Diploma) 과정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부설 CEIPI가 제공하는 유럽 변리사 자격 교육과 대학원 수준의 이론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유럽 지식재산 전문 직역의 양성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바, 산업재산권 중심으로 형성된 모델이지만 대학 연계형 저작권 전문 연수 기관 설계에 시사하는 점이 없지 않다.

(3) 유지 단계: 계속법학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 CLE)과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 기술과 판례가 빠르게 변하는 분야인 만큼 전문성은 한 번의 인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반영한 계속법학교육, WIPO 등 국제기구 연수와 해외 교류 기회가 뒷받침되어야 전문 법률가 층이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4) 제도적 기반: 전문화된 인력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의 실질성 부족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위 (2)의 연수 이수 실적을 등록 요건과 연계하여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변협과 문체부, 저작

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저작권 전문 인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3. 분야별 저작권 실무 전문가의 양성

오늘날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심도 있고 전문적인 저작권 지식이 요구된다. 방송사와 언론사, OTT·영상 플랫폼, 음반 제작·공연·노래방 기기를 아우르는 음악 산업, 게임, 웹툰과 출판, 광고·홍보, 연예 매니지먼트 같은 콘텐츠 산업이 우선 떠오르지만, 수요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미술관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와 서비스 과정에서, 대학과 학교는 수업 목적 이용과 원격수업에서, 소프트웨어·플랫폼 기업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이용자 게시물의 처리에서, 인공지능 기업은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판단에서,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에서 각각 고유한 저작권 문제와 씨름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체의 사용료 징수·분배 실무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다. 이들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 자기 직무에 밀착된 저작권 지식이다. 따라서 이 갈래의 핵심은, 각 분야에서 저작권법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다.

(1) 직무별 모듈형 커리큘럼: 방송 제작 담당자, 도서관 사서, 게임 개발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지식은 서로 다르다. 공통 기초 과정 위에 계약·라이선스 실무, 이용허락 처리, 침해 주장에 대한 초동 대응, 해당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직무별 모듈로 편성하여,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대학원 디플로마처럼 자신의 실무에 필요한 핵심 법 지식을 압축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학위 후 과정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입문-실무-전문의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수과 경력을 결합한 인증 체계를 갖추면 시장에서 전문성의 신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 주체와 전달 체계: 이미 지식재산 전문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202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된 “소단위 전공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석·박사 과정 외 더 다양한 전문화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 기능(원격교육 포함)을 확충하고, 산업별 협회·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과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 기업·기관에 저작권(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두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그 담당자층 자체가 이 갈래 교육의 안정적 수요 기반이 될 것이다.

4. 저작권법 학자의 양성

이 문제는 앞의 두 갈래보다 사정이 한층 어렵다. 저작권법만이 아니라 법학 연구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한 이후 법과대학이 축소·폐지되면서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공동화되었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로스쿨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활발하지 못하다. 실무로 진출하는 길에 비하여 학자의 길은 경제적 유인이 약하고 자리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작권법은 생성형 인

공지능, 플랫폼, 데이터 등 기술 변화로 이론적 규명을 요하는 쟁점이 폭증하는 분야이다. 연구 수요는 늘어나는데 연구자 공급은 줄어드는 이 간극을 시장이 스스로 메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자 양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공적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는 일반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석·박사 과정이라는 기존 경로를 유지·강화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과정 장학금과 연구비를 공적 기금으로 지원하고, 학위논문 연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장기 연구과제와 학술 생태계 지원: 현재의 정책연구는 단년도 용역 중심이어서 연구가 일회성 보고 서로 소비되고 이론적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공지능과 저작권, 데이터와 저작권 같은 의제에 관하여 3~5년 단위의 중장기 기초연구를 기획하고 신진연구자를 연구진으로 참여시킨다면, 연구비 지원과 훈련 기회 제공을 겸하는 효과적인 양성 장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 관련 학회와 학술지, 신진연구자 중심의 연구모임과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은 비용에 비하여 학문 공동체 유지 효과가 큰 투자이다.

(3) 연구 거점과 자리의 확충: 연구자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로를 전망할 수 있어야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교수 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작권 전공 교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학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부설 연구소와 공공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학위 취득 이후의 안정적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실무와 학계의 순환: 전문 법률가와 분야별 실무가가 학위 과정을 거쳐 학계로 진입하거나 겸임·산학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는 경로를 열어, 실무 경험이 연구로 환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자 공급의 부족을 보완하는 현실적 방안이기도 하다.

(5) 국제화: 해외 학위 취득과 국제 공동연구, WIPO 등 국제기구 연수를 통하여 국내 논의가 국제적 논의와 접점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쟁점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는 오늘날, 국제화는 학자 양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다.

5. 외국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비교 사례와 시사점

세 갈래 양성론이 관념적 구상에 그치지 않음은 외국의 사례가 보여준다. 주요국은 이미 로스쿨·학부 이후 단계에서, 관청·연구소·대학이 주도하고 채용·자격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문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1) 미국 Barbara A. Ringer Copyright Honors Program: 미국 저작권청은 로스쿨 졸업반 학생과 실무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변호사 가운데 지원자를 선발하여, 18~24개월간 유급 연방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정책·국제·등록 부서를 순환하며 선임 변호사들과 함께 실무를 익히게 한다. 1976년 저작

권법 제정을 주도한 제8대 저작권청장 바바라 링어의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2013년에 신설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에 이와 같은 저작권 펠로우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2) 독일 MIPLC: 2003년 설립된 뮌헨 지식재산법센터(MIPLC)는 막스플랑크 혁신·경쟁 연구소, 뮌헨공과대학, 아우크스부르크대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이 참여하는 4개 기관 연합체로, 1년 과정의 영어 LL.M.과정(지식재산·경쟁법)을 소수 정예로 운영한다. 세계적 연구소가 학위과정 운영의 축을 맡아 연구와 교육을 결합하고, 국내외 대학의 연합으로 국제성을 확보한 모델로서, 첫째 갈래의 심화 단계와 셋째 갈래의 학자 양성이 만나는 지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프랑스 CEIPI: 1963년 설립된 스트라스부르대학 부설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IPI)는 이공계 출신을 위한 특허·상표 디플로마 과정부터 법학도를 위한 석사과정, 유럽특허변리사 자격시험(EQE) 준비 과정과 각종 계속교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지역별 과정을 갖추고, 설립 이래 수천 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특히 법률가가 아닌 사람에게 수준별 디플로마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인증하는 구조는, 위 둘째 갈래에서 제안한 직무별 모듈형 과정과 이수·경력 결합형 인증의 선례라 할 수 있다.

(4) 유럽연합 EUIPO Pan-European Seal Program: EUIPO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유럽 각국의 대학들로부터 추천받은 졸업생을 유급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실무를 훈련하며, 유럽특허청(EPO)도 같은 틀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대학에서의 수학이 기관 채용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로스쿨 수강 이력이 채용 가산점으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앞서의 제안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참고할 수 있다.

(5) 한국 KDI School 외국인 공무원 석사과정 사례: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과 개발정책' 석사과정(약 1년, 3학기)을 운영하면서 외국 공무원 등 해외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공무원과 공공기관·콘텐츠 산업 종사자, 나아가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준하는 저작권 특화 학위·장학 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KDI School의 운영 경험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학이 연계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전문화는 로스쿨·학부 재학 중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에서, 관청·연구소·대학이라는 제도적 주체가 책임지고, 채용·자격·학위와 연계된 유인 구조 위에서 이루어진다. 세 갈래 양성론은 바로 이 구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옮기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차상욱 교수(경북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¹⁾

현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와 특허법원은 해마다 여름에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제가 특허 및 상표·디자인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즉 이 변론경연대회는 지식재산소송이라는 이름과 달리 산업재산권에 한정하여 변론경연대회를 10년 넘게 개최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저작권 소송 변론경연대회'를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저작권 소송에 관심 있는 로스쿨 학생들은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에 참가할 권리나 이익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선책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의 각 지재전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얻어, 이른바 '저작권 소송 변론경연대회'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로스쿨 입학 당시 저작권 소송에 대해 관심이 지대한 로스쿨 학생들이 1학년 때를 지나면 그 관심도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전공 수업 참여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신설되는 '저작권 소송 변론경연대회'는 각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 유지와 연대와 지지 및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제 법조인으로써 실무계에서 활동하면서 저작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첫째, 이른바 '국제저작권법연구센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별개의 센터로서 설립 및 운영하는 등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국(미국·EU·독일·프랑스·영국·중국·일본 등)의 법제와 판례를 상시 분석하는 국제 저작권법 비교연구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해외 대학·연구기관으로는, (i)미국의 경우, ① [저작권법·창작자·미디어 분야] Columbia Law School — Kernochan Center for Law, Media and the Arts,²³⁾[저작권법 연구에 강함], ② [공익·국제 IP·정책 분야]American University — Washington College of Law의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PIJIP),²⁴⁾[저작권 정책이나 국제 네트워크에 강함], ③ [AI·기술·IP 분야]UC Berkeley —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BCLT),²⁵⁾[산학협력 및 법조실무 협력에 강함], ④[혁신·경제학·IP 분야]NYU — Engelberg Center on Innov

23) <<https://kernochan.law.columbia.edu/>>.

24) <<https://www.american.edu/wcl/impact/initiatives-programs/pijip/>>.

25) <<https://www.law.berkeley.edu/research/bclt/>>.

ation Law & Policy,²⁶⁾[법경제학 및 실증연구에 강함], ⑤[공정이용·교육·정보 분야]Stanford — Copyright and Fair Use Center,²⁷⁾⑥[IP 실무·정부·기술 분야]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 IP Law Program,²⁸⁾등이다. 그리고 (ii)독일 뮌헨에 소재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막스 플랑크 혁신 및 경쟁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²⁹⁾, 및 (iii)일본 동경에 소재하는 ‘일반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교육재단 지적재산연구소’(一般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教育財団 知的財産研究所),³⁰⁾ 등이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한국저작권정책연구원’(가칭)이나 ‘저작권정책 및 법제 연구센터’(가칭)를 독립적 조직으로 설립할 필요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심화됨으로써, 기존 저작권법제도에 따른 법제 및 정책 수요와 별개로, 현재 AI 관련 늘어나는 법제나 법정정책 수요에 적합한지에 대해 기존 조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고 있다. 다만,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정책연구본부의 법제연구팀의 업무 및 역할과의 중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첫째, 국내외 학자들을 위한 연구협력 및 방문자 연구제도를 정착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국제저작권법연구센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별개의 연구센터로서 설립함으로써, 국내 학자 및 외국 학자를 초빙하여 연구협력 및 방문연구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저작권법연구센터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연구자료 공유 등 연구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정책연구본부의 국제협력팀의 업무 및 역할과의 중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 로스쿨이 시행하는 하계/동계 ‘실무수습/인턴’ 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인턴 파견 제도 형식으로 로스쿨생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제도 참가 기회를 부여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례·실무교육에 참가하게 하거나, 문체부 정책 프로젝트에 청년 실무가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를 유도할 수 있다.

즉, 로스쿨생이나 석·박사과정생 또는 신진연구자를 일정 기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인턴 파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25개 로스쿨 내에서 하계/동계 실무수습/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 로스쿨에 대한 홍보가 다소 약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래서, 전국 25개 각 로스쿨(원장단)과 MOU 등 형태로 업무 협의하여, 하계/동계 실무수습/인턴 제도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인턴 파견 제도를 참여 및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단계부터 저작권 실무 전문가 인력 양성제도 모델로 정착화 할 필요가 있다.

26) <<https://www.nyuengelberg.org/>>.

27) <<https://fairuse.stanford.edu/>>.

28) <<https://www.law.gwu.edu/intellectual-property-law>>.

29) <<https://www.ip.mpg.de/en/>>. 참고로, 이전에는 ‘막스 플랑크 지적 재산 및 경쟁법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로 알려졌다. 특히, 저작권, 경쟁법, 혁신 정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법학·경제학 연구기관이다.

30) <<https://www.iip.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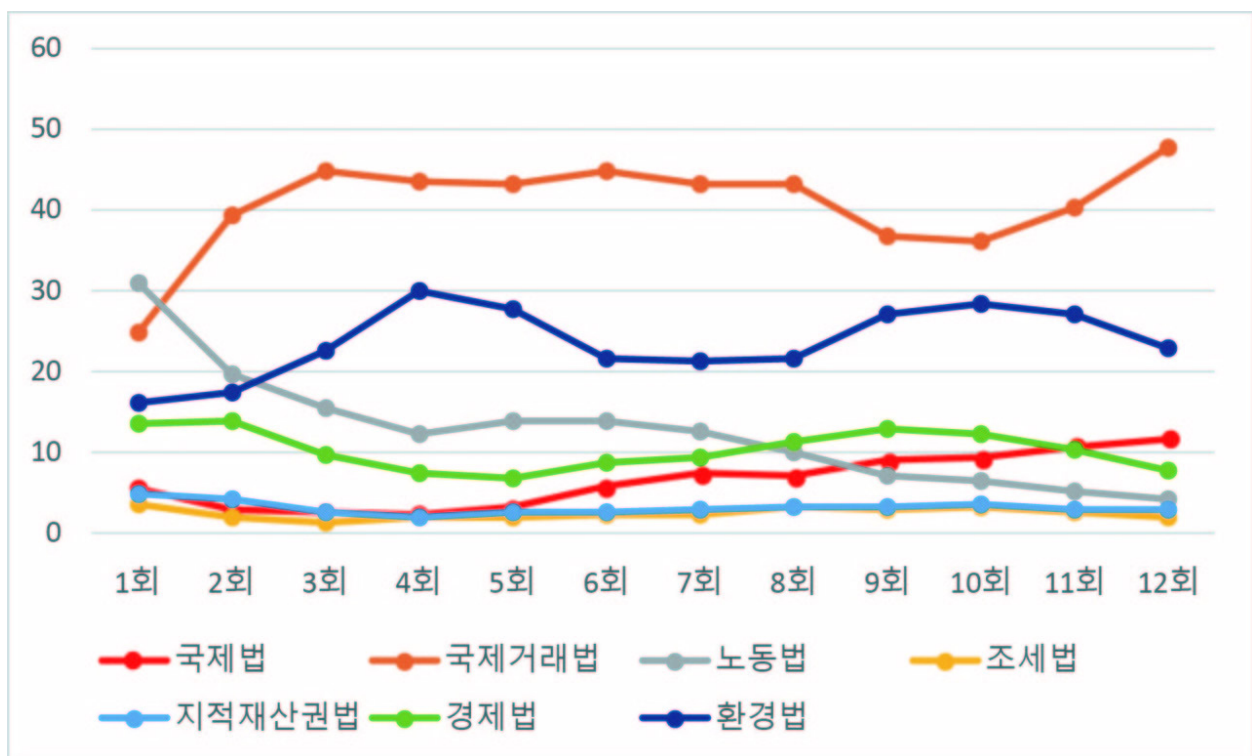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최상필 교수(동아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매우 적음

역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 비중 (자료: 법무부)⁶⁾



2) 법무부 및 국회에서 선택과목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법무부가 2026년 4월 23일 발표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는 '선택과목 개선 방안'으로 "시험과 교육 간의 연계 약화로 전문과목의 높은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교육과 무관한 특정 과목 쓸림 현상 문제가 심화하므로,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마련을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 평가제 도입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됨⁷⁾

6) 법조신문 2023년 9월 25일 인터넷판(<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663>)

7)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182/605775/artclView.do>

김준혁 의원안: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한 후 본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통과시키는 법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안: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과목 폐지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안: 선택과목 Pass/Fail

3) 소수과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학생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선택이 어렵게 됨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 9. 21., 2011. 12. 28.>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의 거듭제곱근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4)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법령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①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유인책 제시

-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하여 논문공모전 등을 통하여 스펙을 쌓을 기회를 제공
- 졸업 후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한 학생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채용 홍보
-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기관 연수 및 파견 기회 제공

② 저작권 대표 판례 선정 작업

변호사 시험에 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수의 판례를 선정하여 교수와 학생들에게 저작권 시험의 기준으로 삼게 함

2.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현행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는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저작권 실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됨.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 전공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학문후속세대는 사실상 단절될 수밖에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지식재산처와 학교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1) 입법의 필요성 제안: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Pass/Fail 혹은 선택과목이수제 등에 관하여 법무부 및 국회의원들에게 산학관 합동명의로 입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

2) 현행 제도에서의 협력방안: 학생들이 지재법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 범위임

-기존의 교과서들은 학생들이 선택하기에 다른 과목과의 형평상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분량으로 제작되었음

-지재법의 특성상 거의 매년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참조할 판례가 지나치게 많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지식재산처 및 학교가 협력하여 기초내용을 중심으로 한 표준교재를 개발할 필요성 있음

3) SJD과정 확대 운영

로스쿨에 개설된 법학전문박사과정을 기존의 변호사 이외에 일반법학석사, 비법학석사(문화콘텐츠 전공 혹은 공학 전공 등), 위원회 등 기관재직직원들에게도 개방하여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 간의 교류 및 연계를 도모함

[제2주제] 종합토론

전문인력 양성

좌장

홍승기 변호사 · 초빙교수(인하대학교)

토론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김광남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형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호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박유선 교수(강원대학교)

박준우 교수(서강대학교)

이유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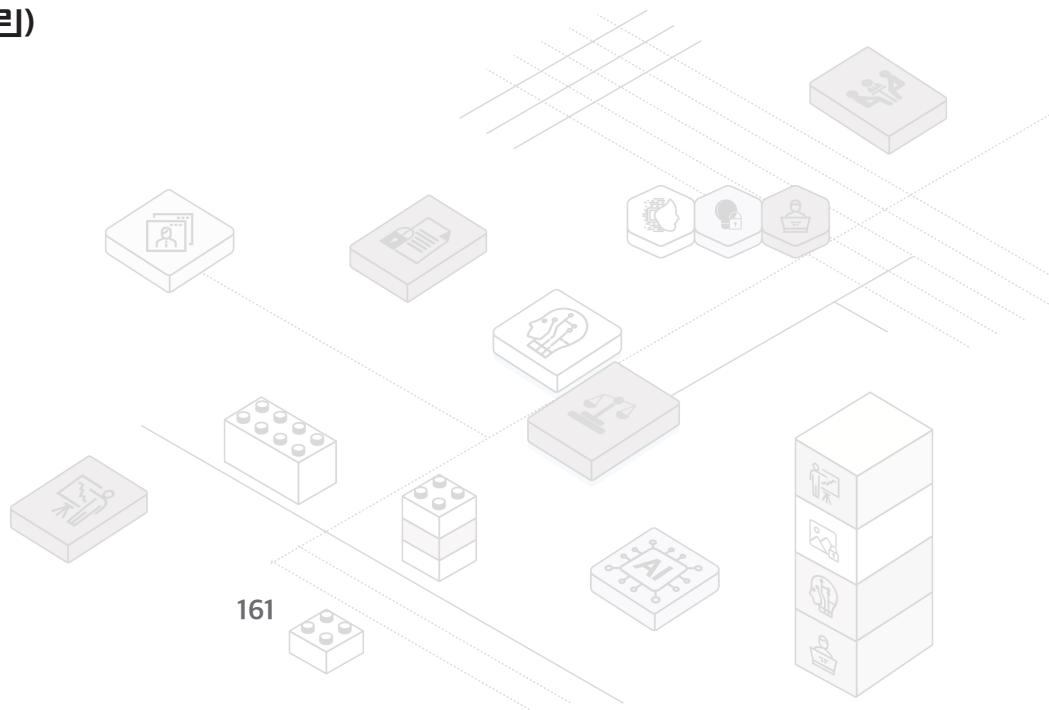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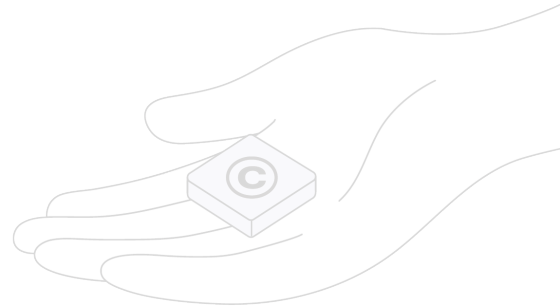
이일호 연구교수(연세대학교)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신진연구자 지원, 장기 연구과제 발굴,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신진연구자 지원, 장기 연구과제 발굴,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서로 분리된 정책과제라기보다 연구자의 성장과 연구생태계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호연계된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진연구자 지원은 단순히 개별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된다. 신진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주제를 발전시키고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학술대회와 연구모임, 중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과제, 해외 연구자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진연구자 지원은 나머지 정책과제를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은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자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신진연구자는 이러한 장을 통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선배 연구자와 동료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연구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사회적·정책적 수요를 축적하면, 이를 장기 연구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중장기 연구의제를 발굴하는 연구기획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장기 연구과제는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에서 형성된 논의를 체계적인 연구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 법제도 변화, 산업구조 및 국제규범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려면 다년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진연구자가 공동연구원이나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도록 하면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다.

장기과제는 연구성과의 생산뿐 아니라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발굴된 연구주제와 연구성과를 국제적 논의와 연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 공동세미나, 방문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환 등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은 다른 국가의 연구동향과 정책경험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국제적 지식과 네트워크는 다시 국내 연구모임과 장기 연구과제에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신진연구자에게 국제 발표와 공동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면, 개인의 연구역량뿐 아니라 국내 학술공동체의 국제적 위상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연구자 차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일회성 해외 방문에 그치기보다, 국제학술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공동세미나와 국제공동연구로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는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가 존재하므로, 각 행사의 특성과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는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RIP(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llectual Property), ALAI(Association litté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등이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행사로는 IPIRA(IP&Innovation Researchers of Asia Networks)와 중국이 주도하는 APCA(Asia Pacific Copyright Association)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저작권에 특화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는 ALAI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지역 기반의 행사로는 APCA가 있다.

이들 국제행사는 단순히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장을 넘어, 각국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및 산업계 전문가가 최신 쟁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APCA를 제외한 다수의 행사에는 WIPO, WTO, UNESCO 등 국제기구가 후원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거나, 그 관계자가 축사 또는 기조연설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참여는 학술적 논의가 국제정책 및 규범 형성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자 지원정책은 해외 학술행사 참가비를 단순히 보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후속 공동세미나, 방문연구, 공동논문, 국제공동연구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제학술행사 참가 이후 해외 연구자와의 후속 세미나를 지원하고, 우수한 공동연구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비를 제공하며, 그 성과를 다시 국내 학술행사와 정책연구에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연구자 차원의 국제교류는 개별 연구자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연구자가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연구자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공동연구와 국제적 연구성과로 발전시키는 연구생태계 조성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네 가지 정책과제는 각각 독립된 지원사업이 아니라, 연구자 발굴-연구공동체 형성-중장기 의제 개발-국제적 확산-후속 연구 발굴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구생태계 조성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순환구조가 형성될 때 단기적인 행사나 일회성 연구비 지원을 넘어, 신진연구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 연구역량의 축적, 국내 학술공동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AI, 저작권, 데이터, 콘텐츠 산업과 같이 기술과 법제, 정책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어느 한 기관의 교육만으로 충분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다. 학계는 이론과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산업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산업계는 최신 기술과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성·규범성·장기적 연구를 충분히 담당하기 어렵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정책과 제도 운영의 경험을 갖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기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 전문가 양성은 학계,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계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는 협력 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체계의 목표는 단순한 취업교육이 아니라, 이론적 이해와 현장 대응 능력, 정책적 판단, 국제적 감각을 함께 갖춘 융합형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

학계는 기초이론, 법제도, 연구방법론 및 비판적 사고를 교육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정규 교과과정, 전문대학원 과정, 단기 교육과정 및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전문성 형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상을 분석하여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고, 실무 경험을 학문적 지식으로 축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적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중장기 인재양성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인력양성 사업이 단기적인 행사나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규제정책, 산업육성정책과 인재양성정책이 서로 연계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학계와 정부정책,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책 집행과 분쟁조정, 권리관리, 조사·연구, 기업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사례와 데이터를 교육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턴십, 현장실습, 사례연구, 전문자격 과정 및 공동세미나를 운영하여 학습자가 실제 제도운영과 업무과정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계는 최신 기술, 사업모델, 계약관행 및 현장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현업 전문가를 강사나 멘토로 파견하고, 실제 사례와 익명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양성된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김광남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 원인 분석³⁾

●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과정: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선택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음. 지식재산권법의 경우 과목 분량이 상당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각 법에 따른 고유한 법리가 많으며, 처음 접하는 생소한 개념이 많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 점차 기피되고 있음.

● 특수 분야라는 선입견: 지식재산권하면 보통 특허법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고, 이공계 특히 변리사출신만 듣는 과목이라는 선입견이 존재. 변리사 출신이 아님에도 지식재산권 과목을 수강하면 막연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

● 취업 관련: 예전에 비하여 신규 지식재산 변호사 수요가 적음. 노동법, 자본시장법 등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으로서 인기가 적고, 특수 분야(노무사, 회계사)라는 선입견이 존재함에도 관련 취업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지식재산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많은 편이라고 함.

■ 개선방안

● 변호사시험에 확실한 장점을 가지는 시험 출제 필요: 법률과목을 줄이고, 리딩케이스를 정해주는 등 공부분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 과락이 적대로 나오지 않는 과목(예를 들면, 현재 국제법이 그렇다고 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안 등 지식재산권법이 선택과목으로서 독자적인 확실한 장점을 줄 수 있는 과목으로 대대적인 탈바꿈이 필요함.

● 인식 재고: 지식재산권법이 변리사 출신 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재고가 필요함. 특히 저작권법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과 같은 배경 지식에 대한 장애요소가 없음을 강조(다만, 일부 재판연구원의 경우 저작권법이 지식재산권법에 포함됨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 → 학부 교양과목 등에서 지식재산권법 학습이 필요함.

● 저작권 변론경연대회: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원에서 변론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상당수의 로스쿨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저작권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로스쿨생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제 교류: 법관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자체가 깔끔해서이지 만(사실인정보다는 법리 판단에 집중되는 사건이 다수), 실체법이 유사하여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점도 큰 동인이 되고 있음. 학생들에게 학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단기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예를 들면, IP 로 유명한 외국 로스쿨 세미나 참여 등).
- 기타: 미국로스쿨과 같이 전문 트랙 인증제도(IP Certificate) 시행, 저작권 관련 기관 실무수습 기 회 제공, 저작권 관련 리걸클리닉 등 창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 문제점

- 지식재산권법 교수 수요 감소: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재편성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법 수강인원이 적어짐에 따라 최근 로스쿨별 지식재산권법 교수인원수도 줄어들 고 있음.
- 순수 법학 연구자 감소: 로스쿨제도가 실무가 양성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순수하게 법학을 연구하 는 학자 즉, 전업 연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

■ 개선방안

-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장학금 제도: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을 희망하는 전업 연구자들에게 일부 장 학금 제공.
- 학술서 발간 지원: 지식재산권법 수강생이 적음에 따라 학술성이 매우 높고, 그 흐름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급변함에도 학술서를 발간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홍진기법률연구재단과 같이 매년 학술서 발간 지원(연구지원비 700만 원, 출간지원비 추가 지원 등) 제도를 시행.
- 연구원 정원 확대: 지식재산권 전공 교수 채용의 문이 좁아짐에 따라 박사과정을 마친 후의 공백을 해 소할 수 있는 단, 장기 등 여러 형태의 연구원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로스쿨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로스쿨과 협력하여 로스쿨생 및 학부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원회 소속 연구원들에게 출강 기회를 부여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수요와 이에 대한 연구 공급의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

3)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함

- 신진 연구자 지원 구체화: 연구용역 발주 시 신진 연구자 참여를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여 베테랑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 사이의 도제식 교육을 활성화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 협의체 창설: 저작권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및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각 기관별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수요 등을 조사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취업,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저작권법에 입문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예를 들면, 온, 오프라인 수요일 8주 과정),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게 된 법관, 검사, 경찰 등 실무가 집중 연수프로그램(오프라인 단기 2~3일 과정), 신탁관리단체 실무자, 콘텐츠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산업계 관계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다양한 강사진 제공: 저작권 사건은 한 업계의 전문가의 강의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 학계, 법조계, 실무계, 산업계의 다양한 강사진을 마련하여 실무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교류의 장을 마련: 매년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및 법조계가 패널로 또는 관객으로 만나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방대한 저작권법의 양에 대비해 변호사 시험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법을 일정 이상 이수하는 자만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석·박사 과정의 개설 및 지원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여러 시험 등 관련 자격증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무엇보다도 현대의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는 다학제적 융합 교육의 활성화라고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최근 저작권 전송 및 보호(보안) 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경제, 데이터 등 현대의 주요 산업들은 저작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저작권 정책연구자들은 저작권 분야뿐만 아니라 연계된 분야도 함께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분야만 따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유인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 분야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훨씬 많은 관심을 끌수 있어 보입니다. 연구자들을 많이 유인한다면, 넓어진 대상에 대한 교육의 집중으로 연구 역량 강화는 바로 따라올 수 있는 효과라 생각합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의 주기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재의 양성,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산업계에서의 활용 측면에서 각 필요한 부분 특히, 수준별·대상별 맞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 선택과목으로서 지식재산권법은 그 범위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광범위 한 바, 시험 범위를 제한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별개의 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 저작권 관련 유관학회 지원, 신진학자 과제 지원 등
-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회, TF 구성 운영 등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김형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신진연구자 감소의 원인

- 로스쿨 전환 이후 변호사시험 필수과목 중심의 커리큘럼이 자리잡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측면이 있기에,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권법의 이수 유인이 약화되었습니다. 선택과목 사이의 선호도도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이 이른바 '빅3'로 학업 부담이 적다고 알려져 해당 과목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제12회 변시 기준 '빅3' 과목 응시 비중이 80%를 초과하였습니다(변시 '빅3' 선택과목 국제거래·환경·국제법에 응시자 82.5% 편중, 법률신문, 2024. 4. 7.).

- 또한, 로스쿨은 학위논문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축소·폐지되어 학부에서 학업을 있게 되는 이전의 대학원과 달리 지적재산권법 전공 신진연구자가 석사 과정부터 구조적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2) 로스쿨에서의 저작권법 전공 활성화 방안

- 변호사시험 출제시 범위: 법무부는 지적재산권법의 출제 범위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허법과 저작권법에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학업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제 범위를 최대한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로스쿨 강의의 변호사시험과의 연계성 강화: 강의를 가급적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지적재산권법) 출제 범위와 연계하여 구성하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강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 강의 수강을 하면서 변호사시험 대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 리걸클리닉 확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등과 연계하여 상담·분쟁조정 클리닉 운영 및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고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반 민형사 사건에 비해 저작권 관련 사건은 친숙한 소재(음악, 콘텐츠 등)를 많이 다루게 되므로, 실제 사건 경험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흥미 유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 경로를 유지·강화 방안

- 로스쿨-일반대학원 연계 트랙: 로스쿨 이수 지적재산권법 과목의 박사과정 선이수 학점 인정 등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박사과정 진입 경로에 대해 조금 더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실무가 친화적 강의 형태 추가: COVID-19 유행 기간에 온라인(비대면) 강의를 활성화되면서 일반 대학원 지원율이 증가세였는데, 야간·온라인 원격 강의 병행 등의 유연한 운영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니다.

- 국제 교류: 해외 대학 복수학위·교환과정, WIPO 등 국제기구 연수 및 국내외 학술지 게재 지원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1) 신진연구자 지원

- 신진연구자 전용 과제: 박사수료생·신진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를 위한 단독 또는 2인 연구를 허용하고, 소액·다과제 방식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학위 논문 작성 지원: 저작권 정책·법제 관련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되, 위원회 연구위원과의 멘토링 및 중간 발표 기회를 결합하여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성과 활용 및 후속 연계: 지원 성과물의 위원회 학술지·정책자료 게재 경로를 마련하고, 우수 수행자를 자문위원 풀·후속 과제에 우선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경력 축적 경로로 기능하도록 운영해보면 좋겠습니다.

2) 연구 인프라 개방

- 저작권 분쟁의 다수가 조정·형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공판(公判) 판례만으로는 분쟁 실태 파악이 어려울 것이므로, 비공개 종결 사건의 비식별 처리 후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개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학회 및 학술대회 지원, 상시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우수논문 시상 및 게재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내 및 국제 교류

-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법제정비단과 같이, 최신 및 주요 이슈별 학계·법조계·산업계의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상호 교류 및 전문성 도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WIPO·해외 연구기관 파견, 국제 학술지 게재 및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도 도모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연구자 경력경로 확보

- 위원회 내 전임 연구직(연구위원) 확충 또는/ 및 다변화하는 방안입니다.

-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이력을 관리하는 등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실적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 저작권 분야는 법리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콘텐츠 및 각종 형태의 신규 플랫폼 등장 등으로 인하여 이

론만으로는 실무 대응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계의 이론적 기반,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경험,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상시적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1) 실무자 재교육 체계 구축

- 변호사·변리사·기업법무담당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이슈 (생성형 AI 저작권, 플랫폼 책임, 국경 간 라이선스 등) 중심의 특강·세미나 상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전문 연수과정 신설·확대

- 저작권 전문 특별 연수과정 등 실무자를 위한 심화 과정을 추가하고, 심화 트랙은 계약 실무·분쟁 해결·해외 법제 등 쟁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고려가 가능하겠습니다.
- 참여 유인: 수료 인증이 공공기관 저작권 담당자 자격 요건, 정부 자문위원 위촉 시 우대, 기업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연계하여 이수 유인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저작권청 등과의 교환연수 프로그램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공동연구 강화

- 문체부·저작권위원회와 대학 연구소 간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예산 매칭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 산업계(콘텐츠제작사, 플랫폼사, 신탁관리단체 등)가 실제 직면한 분쟁·정책 이슈를 연구 의제로 제안하는 현장 수요 기반 연구 트랙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산학관 협의체 상설 운영

-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계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작권 인력양성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입니다.
- 정기적 회의를 통한 인력 수급 현황 점검 및 커리큘럼 개선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박성호 명예교수(한양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지적재산권법 특히 저작권법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반이 저작권법 전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법학 중에서 사법(私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법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소유하는 유형의 물건과 인간이 제공하는 무형의 역무(役務)를 주된 보호 대상으로 다루고 연구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무형 자산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다룬다. 특히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인간의 사상·감정, 표현, 창작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을 “형이상학에 관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더욱이 법철학에 관한 지식은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초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행정저작권법’ 혹은 저작권에 관한 ‘특별행정법’(예전의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법 조문 중 문화행정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¹⁷⁾다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목적으로 마련된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허가·업무 감독 등에 관한 규정들(제105조~제111조)이다. 이들 규정은 저작권 등의 집중 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의 혐의가 있는 특정 사안들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권리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문체부장관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제133조), ② 문체부장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시정명령(제133조의2), ③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등과 관련한 ‘시정조치 권고’(제133조의3), ④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제133조의4) 등이다.¹⁸⁾저작권법, 그 가운데서도 특히 행정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가 폭넓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법에는 벌칙 규정들을 두고 있다. 매년 법원에서 선고하는 지적재산법 관련 형사사건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적재산권법 관련 형사사건들은 지적재산권법 쟁점의 복잡함 때문인지 지적재산권법과 교차(交叉)된 형사법 쟁점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형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가 깊어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되는 양상을 보

17)저작권법상 문화행정에 관한 규정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법정허락(compulsory license) 제도이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소위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제50조~제52조)이 있다.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으로 줄임)의 승인(행정처분)을 얻은 후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거나(제50조)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공탁(제51·52조)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행정처분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 강제된다는 점이다.

18)①은 행정상 즉시강제, 그중에서도 대물적(對物的) 강제에 해당한다. ②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하명(下命)이고, ③은 하명에 앞서 이루어지는 법률상 사전권고(事前勸告)로서 실무상 ‘시정 권고’라고 불리는 것이고, ④는 ①과 마찬가지로 행정상 즉시강제(특히 대물적 강제)에 해당한다.

이는 경우가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입체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저작권법 전공을 활성화하는 것은 겹겹이 쌓인 제도적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놓고 탁상공론을 벌이기보다는 저작권법과 밀접한 민법, 행정법, 형법, 헌법 전공자/전문가들과 이들 법률 과목에 관심이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저작권법 쪽으로 견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바로 앞의 토론 주제(1.)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법은 저작권 고유 쟁점 뿐 아니라 헌법, 민사법, 형법, 행정법 쟁점들과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저작권 정책·법제를 연구하는 '사람'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정책·법제를 '연구'하는 것 자체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법철학, 법제사 연구 문헌들을 세부 쟁점 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¹⁹⁾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부실한 분야로 부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부실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 정책·법제를 연구'('자'를 뺀 것임) 역량 강화 같은 토론 주제는 특정 쟁점마다 상시적으로 개별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두 번째 세부 주제로 토론하고 끝낼 논의가 아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언제나 일상적으로 '이러저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세부 쟁점이 무엇인지, 세부 쟁점마다 기존 연구 논의가 어떠한지, 그에 관한 연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국가기관, 공공단체, 그리고 개별 전문가 집단들 간에 논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인과 특정인 간에 개별적으로 소위 '알음알음'으로 연결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체계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개별 분야들, 예컨대 음악·미술·영화·건축·게임 등의 저작권 쟁점을 검색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의 쓴 길고 짧은 글들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들이 검색된다. 그러한 자료들의 작성자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개별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그 전문적 식견이 예상 밖으로 훌륭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덕후', 토론자가 자주하는 표현으로 '공부하는 인간(Homo Academicus)'과

19)별도 DB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부터 활용되어온 검색엔진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미 학습 완료된 AI 모델 등을 충실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잘 노는 인간(Homo Ludens)’이 합일/합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살펴볼 것은 주요 로펌에서 pdf 파일 형태로 공간하는 뉴스레터이다. 이들 뉴스레터에도 다수의 로펌 변호사들이 작성한 소논문 형태의 저작권법에 관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이러한 실무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다양한 개별 쟁점들마다 이들 실무 전문가들을 세미나 등지에 토론자, 발제자 등으로 초청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청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쟁점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질만한 개별 실무 전문가들의 명단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完]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박유선 교수(강원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현재 로스쿨 내 지식재산권법 교육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격차와 학습 분량이 전공 활성화에 가장 큰 부담이다. 선택과목 제도 자체의 개편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① 시험 부담과 분리된 전공 인증·자격 연계 인센티브를 통해 전공 선택의 유인을 별도로 창출하고, ② 실무 클리닉과 최신 AI·콘텐츠 환경을 반영한 공유형 교육모듈을 통해 전공의 실질적 매력과 실무 적합성을 높이며, ③ 로스쿨 진학 이전 단계의 체험형 AI-IP 교육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는 세 축을 병행하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생각된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단년도 용역 과제 중심의 발주 구조는 연구 성과의 축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대학원생이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통로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 연구과제를 운영하면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신진 연구자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축적한 조정·심의 사례와 통계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은 실증연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역시 대상을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연구성과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정책연구·협력사업의 통로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AI 포함 첨단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산업 전문가와 법학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정례 운영을 제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되, 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 내용에 반영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야별 계약 실무나 분쟁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산업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한다면, 현장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 대응 역량이 부족한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은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박준우 교수(서강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 로스쿨생 중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저작권법 전문가를 공급하기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합니다.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서강대는 매년 4-8명의 학생이 저작권법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는 입학정원의 10 - 20%에 해당합니다.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 2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2백 - 4백명이 됩니다.
- 다만, 수강을 원하지만, 90학점이 넘는 기본법 과목과 수업시간이 겹쳐 수강 못 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3시간 연강, 주말·야간 강의 등을 활성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수업운영방식 정보를 교류하면 좋습니다.
- 그리고 각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 검찰, 경찰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들도 참여하는 연구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면 좋을 듯합니다.
- 로스쿨과 일반대학원 저작권 교육 목표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과 연계한다면, 최소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조사·작성한 판결과 입법례 연구 결과물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이 필수 조건입니다.
 - 2차 자료(교과서, 논문 등)보다는 1차 자료(primary source. 한국 및 외국의 법률 규정과 조약, 판결문, 입법이유서 등의 원문)를 교재로 이용하여 실습함으로써, 학생들이 1차 자료 이용에 익숙해지도록 함.
 - 지도교수가 1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연구활용 등 연구 방법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실습시킴.
 - 특히, 과거 지도교수가 학생 시절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던 부분을 지도학생도 스스로 학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며, 질 낮은 학위논문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학습의 기초적인 부분을 교육과정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점수화하여 직접 확인하고 지도하는 방식이 필요함.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거나 예상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연구회 지원. 기존 연구자 역량, 특히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 다만,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연구성과물이 반복 생산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함.

→ 앞으로 연구회 주제를 주제별(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 등), 권리별 (저작권접권, DB권 등), 지역별(EU, 미국, 일본, 조약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거나, 문체부와 위원회 당면 과제를 연구하는 한시적인 특별 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개괄적 연구 단계를 넘어서는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특히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 시 학위논문과 일반 연구논문 주제 및 실무 경험등 해당 주제 분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 저작권 동향과 저작권 이슈리포트 등 위원회의 기초 자료 제공 사업. ①외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기초 자료에 관해 ②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실무자가 작성한 문서를 ③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증하여, ④ 해당 외국 자료 공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였음. →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더 보강하여 발행 속도와 빈도를 늘리면 기대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

● 대학 학부 저작권법 강좌 지원 사업. 학부생의 저작권 관심도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 참고로 (대학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2025학년도 서강대 학부의 '법과지식재산' 수강생 수는 약 8백 명임.

→ 다만, 대학이 예산 문제로 수강인원과 과목 개설을 제한함으로 인해 8백 명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는 경우 1천 명 이상이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법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예산 지원은 과목당 6백만 원 정도임(강사료 4월 분 + 특강료 + 수업조교 인건비)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 실무자가 참여하는 연구회 활성화함.

● 실무자와 대학이 연계하는 학위과정 운영하여, 실무자를 학위과정에 적극 유치함.

●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에서 지재권 업무에 가급적 저작권 전공자를 채용함.

● 정부, 공공기관이 저작권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저작권 전공자를 한시적으로 단기간 재택근무 방식으로 채용함.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이유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저작권법을 전공하는 신진연구자가 감소하는 현상 자체는 일정 부분 학문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법은 디지털과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법 분야였다. 이후 이러한 관심이 개인정보·데이터 분야로 이동하였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법제 연구로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법이 신생 분야라는 성격을 벗어나 하나의 법학 분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전공하는 학생 수의 확대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별 분야의 교육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전문트랙, 인증과정, 리걸클리닉 확대 등이 일정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초기 단계의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수논문상, 연구비 지원과 같은 제도가 도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 역시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논문상이나 연구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의 학위과정에 진입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설령 그러한 유인이 작용하더라도 그것이 해석학이라는 법학의 본질을 구현하는 양질의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결국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자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이다. 오랜 기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성을 축적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면, 해당 분야를 선택하는 후속세대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어떻게 더 많은 학생에게 저작권법을 공부하게 할 것인가'보다 '저작권 전공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신진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연구과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능한 범위에서 다년도 연구과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정책연구가 단기간의 현안 대응에 집중될 경우 연구자가 하나의 주제를 장기간 추적하면서 전문성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학술교류 역시 단발성 행사보다는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역량 강화를 특정 사업을 통해서 모색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

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저작권법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외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국제 기구의 논의자료, 국내의 입법 과정의 검토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작권 관련 정책·학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저작권도서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내부에 전문성을 축적하고 각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를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학계나 행정부·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저작권 전공자들의 연구 환경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법 전공자만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헌법·민법·형법·행정법 등 다양한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작권을 자신의 분야와 연결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적재산권과 뗄 수 없는 법경제학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학 전공자의 참여 등 유관 분야 연구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면, 저작권법 연구의 방법론이 더욱 성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서로에게 부족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자에게는 법률에 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기회가 필요하며, 반대로 실무자에게도 최신 법학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 연수과정과 같은 기회, 또는 실무자와 연구자가 실제 사례와 제도 운영을 검토하는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 산업 수요를 연계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인력양성 모델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현재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사한 인력양성 사업들에서 저작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문체부 산하의 교육기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이일호 연구교수(연세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비록 제가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고 로스쿨에서 강의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아니고, 현실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교원으로서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뉘etur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이 주제가 특별히 조심스럽고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진연구자를 위한 행사나 세션을 제안드린 적이 있고, 이 주제 선정도 이 점을 헤아려주신 덕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나 기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수님들과 여러 다른 전문가들의 식견과 해안이 더욱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본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대토론회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중에도 관련 발제와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논의를 주도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지식재산권법을 로스쿨 내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은 주요과목 중 하나로 편입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지인데, 이른바 선택과목이 처한 현실이 상이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법만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은데, 이런 구조하에서 지식재산권/저작권 과목이나 전공의 활성화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에서 주요과목과 선택과목 사이의 중요도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주요과목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은 나무랄 행동이 아니다. 대학원 졸업생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근본적인 개혁 없이 부수적인 수단만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아예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화되어 일반 변호사시험 외에 전문변호사시험까지 보도록 하고, 이 시험까지 합격한 전문변호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지식재산 전문변호사에게만 변리사 자격 부여), 어떤 대안도 “활성화”라는 목표에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선택과목의 ‘교양화’ 내지 P/NP제를 도입하여 도리어 지식재산권/저작권의 대중화를 추구할 수 있다. 재학 기간 변호사시험 준비와 선택과목의 이수가 단지 함께 넘어야 할 허들로만 인식된다면, 도리어 선택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과목 정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 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하도록 하거나, 아예 어떤 구별도 없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면 졸업요건을 간춘 것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변호사시험 준비라는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기존 평가방식을 벗어나 패스 또는 논패스로 평가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선택과목에 따라 이 안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릴 것이다.

셋째, 주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독일처럼 선택과목은 대학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거나,⁸⁾ 이를 응용하여

아예 선택과목 시험을 본래의 변호사시험과 분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둘째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도리어 선택과목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선택영역(Schwerpunktbereichsstudium) 제도를 통해 기초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전문분야를 공부하도록 하고,⁹⁾ 주 공통의 국가시험(Staatsexamen)과 구별하여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선택영역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강의는 물론, 세미나 등에도 참여해야 하고(12~14학점 이수 필수), 대학에서 치른다는 점(Juristische Universitätsprüfung)이 다를 뿐 원칙적으로 국가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봐야 하고,¹⁰⁾ 이 대학시험은 국가시험 종합성적에 반영된다(국가시험 70% + 대학시험 30%). 당연히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는 없고, 국내에서는 대학별 '저작권·문화산업법 선택과목 트랙'을 시범 운영하면서 세미나 논문, 클리닉, 공동연구, 현장실습 등을 묶어 모듈화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 및 산업계의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수 기준과 평가 항목은 전국 단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시험의 본시험은 기본 법률역량을 평가하고, 대학은 장기간의 탐구와 실무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인증하는 역할을 훈련하면서 역할분담이 가능해진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저작권을 전공하거나 실무에서 다루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분야가 세분화될수록 역사, 이론, 산업, 기술 등을 아우르는 공통의 기초지식이 약해질 수 있다. 전문성을 좁은 쟁점과 관련된 숙련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연구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저작권 기초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저작권의 정당화 이론, 저작자·저작물 개념, 계약과 집중관리, 제한과 예외, 국제조약, 산업경제와 기술 등을 연결하는 공통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연구자나 전문가 역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게 소규모 연구비, 자료 접근, 멘토링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판례, 학술연구 및 정책자료를 구조화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베이스도 기초연구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저작권은 국제조약, 외국 법제의 변화 및 외국 판례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외국법과 비교법 연구가 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의 최신 법제를 우리말로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번역·해설서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주요 개론서가 우리말로 번역되지 못했고, 심지어 미국 저작권법 교과서조차 우리말로 된 것이 없다. 이런 기초 없이 외국법의 '변화'에 주목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학회 및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주요국 개론서를 번역하고, 외국의 특징적인 제도들에 대한 심층연구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이 꾸준히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간헐적 사업이 아니라

8)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ergesetz: DRiG) 제5조 제1항 참조.

9)학생이 특정 선택영역에 몰리지 않도록 학년별 신청자를 제한함(주로 중간시험 성적순).

10)300분간 카르텔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 및 저작권법을 범위로 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함.

매년 예측 가능하게 개최되어야 한다. 정례 예산과 일정을 확보하고, 연구계획서 단계의 멘토링, 수상작의 학술지 게재 지원, 수상자·참가자의 후속 연구모임을 연계하면 단순한 공모전을 인재 발굴의 통로로 바꿀 수 있다. 저작권 저변 확대는 이미 형성된 전문가를 지원하는 일뿐 아니라 학생이 처음 연구에 진입할 기회를 끊기지 않게 만드는 데서도 촉진될 수 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저작권 전문인력은 교육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창작, 유통 및 투자 시장이 성장하고, 분쟁과 거래가 축적되어야만 전문적인 자문과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시장과 교육을 별개의 정책으로 취급하기보다 서로 순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첫째,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투자, 플랫폼 계약, 해외진출, AI 학습, 분쟁해결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송무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은 157조 4,021억 원, 수출은 141억 달러로 집계되었다.¹¹⁾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실제 사건과 거래가 전문가의 훈련장이 되고, 다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안정된 투자와 권리거래를 돕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추가 개발 및 세분화, 분쟁조정 사례의 비실명화 공개, 중소 창작자·기업의 자문 접근성 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둘째, 저작권 실무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법률가뿐 아니라 창작자, 제작자, 출판·방송·게임·공연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라이선싱 담당자, 공공기관 실무자 등도 각자의 위치에서 저작권을 다룬다. 이들을 위한 교육, 특히 저작권 e배움터의 콘텐츠를 초급 중심에서 직무·경력별 체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실무 경력자를 위한 계약협상, 국제적 협업, AI와 데이터, 분쟁예방 및 해결 등과 같은 심화과정, 최신 판례, 법개정 및 산업 동향을 반영한 정기 업데이트 콘텐츠, 이에 더해 사례형 평가와 이수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면 실무역량과 위원회의 위상이 함께 높아질 것이다.

셋째, 전문가 사이에서도 용어와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저작인접권을 넓은 의미의 저작권에 포함해 설명하기도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 역시 저작재산권이라 설명하기도 하는데, 설명의 전제와 범위를 밝히지 않으면 교육자에 따라 학습 내용에 편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법령-판례-통설에 기반한 '저작권법 표준 교과서'와 표준 커리큘럼을 만들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권리귀속과 이용허락, 제한과 예외, 구제수단, 국제조약, 데이터·AI 등을 공통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논쟁적인 쟁점까지 하나의 정답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공통기반과 복수의 견해를 구분해 서술하면서 정기적인 개정판과 강사용 사례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1)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 발표」, 2026. 2. 27.,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MenuCD=0302000000&pSeq=22266>.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지식재산권법(저작권법 포함)은 변호사시험의 7개 선택과목 중 하나이고, 지식재산권법 과목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이라는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등과 같은 제도의 시행 및 운영과도 깊이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면서 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거나 P/F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⁹⁾

이러한 방안 외에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종의 전공 제도를 만들어서 예컨대 몇 학점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졸업장에 전공분야를 지식재산권법으로 부기해주는 방식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로스쿨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수강할 유인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편 일반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석·박사 과정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이들이 졸업 후 진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유지·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법 연구자들이 학교 외에도 연구소 등에서 전업 전문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법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시장이 커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석사 혹은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전공으로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학하는 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대토론회와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관에 상응하는 외국 기관과의 국제교류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분야의 신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공모전과 같은 우수한 신진연구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실무전문가 양성은 해당 실무자 소속 기관의 관심(예컨대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에지원)

9)예컨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2208601호(2025. 2. 28.). 제422회 국회(임시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601/detailRP>.

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의 저작권법 실무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해당 실무자 소속 기관이 실무자 교육연수를 위탁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전웅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이후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는 신진연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로스쿨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시험 및 자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전공 과목의 수강 유인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선방안 역시 자격 제도·시험제도와 연계에서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일정한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자격 취득의 전제로 로스쿨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지식재산권법 교육 이수 및 시험 선택을 요구한다면, 로스쿨 내에서 지식재산권법 과목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관련 교과목의 개설도 활성화될 것이며, 그와 같이 형성된 수강생 저변에서 학문후속세대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의 지식재산권법 선택과목도 주요 법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택과목으로서의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 등을 포괄하고 있어 수험 부담이 과중하고, 이러한 부담이 오히려 지식재산권법의 선택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작권법, 특허법 등 주요 법률 단위로 과목을 세분화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험 부담이 완화되어 선택률이 제고되고, 위에서 제안한 변리사 자격 연계 방안과 결합하여 로스쿨 내 지식재산권법 전공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가장 필수적인 과제는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학문후속세대가 진입하지 않는 분야는 연구 역량의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구비 지원, 학위논문·학술논문 작성 지원, 공공기관 연구과제에의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저작권법 연구로 진입하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기 학술대회 외에 판례연구회, 신진연구자 세미나와 같은 소규모 연구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에게 국내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관행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저는 부상대 강명수 교수와 같이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IP) 전공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낸 일이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부담 완화 및 학점 구조 개편

현재 학생들이 IP 과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시험 응시 과목(공·형·민) 공부만으로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선택과목인 지식재산권법 시험에 대한 심리적·시간적 장벽을 낮춰 주어야 합니다. 전문법률과목(IP 선행/심화 과목 등)에 대해 상대평가 대신 Pass/Fail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학점 경쟁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어야 학생들이 변시 과목이 아님에도 흥미를 가지고 지식재산권법 총론이나 저작권법 수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IP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AI와 법', '데이터 규제 실무' 같은 융합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IP 전공 학점과 특별법 학점으로 동시 인정해 주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2. 로펌 및 산업계 연계 멘토링과 'IP 커리어 패스' 가시화를 통해서 IP 전공이 강력한 커리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1. 'AI-Tech' 중심의 실무 직결형 커리큘럼 혁신

"AI 학습 데이터 이용 계약서 검토", "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 및 IP 양도 계약 실무" 등 로펌이나 인하우스(사내 변호사)에 나갔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계약서 실습 과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로스쿨 내부 수업에만 갇히지 말고, 컴퓨터공학과나 미대·음대 등 실제 IP가 생성되는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과 연계 세미나를 개설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하우스 및 전문 로펌 연계 인턴십 쿼터제

AI 모델 개발사, 대형 콘텐츠 제작사, IT 기업의 법무팀 및 IP 전문 로펌과 MOU를 맺고, IP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Incentive)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한 코칭 시스템

학계 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이론 강의 위에, 필드에서 뛰고 있는 테크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겸임교수나 튜터로 초빙하여 최신 분쟁 트렌드를 수시로 접하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2주제 전문인력 양성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1.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¹⁾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권법의 교육이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폐강만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심정이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지식재산권법을 비롯한 전문과목의 활성화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율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합격율을 제고하지 않고는 오히려 갈수록 전문과목은 특정 과목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과목 이수제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과목으로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유도할 수 있고, 비록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이수제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채용과 전문과목 전체의 활성화 및 학생의 선택권이 100%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저작권 정책·법제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기존 저작권법 연구자 또는 실무가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나 전문가 세미나를 더욱 많이 개최하고 신진 학자나 전문가들이 학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 편 오히려 이 기회에 저작권 제도의 본질적인 영역을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입법사와 법이론의 발전을 다루는 법제사,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법철학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작권을 중심으로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제도의 헌법과의 연관성, 저작형법을 비롯한 형사법,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법,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국제조약법 등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작권 관련된 학문적 기초 마련과 저작권 기초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3. 실무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학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체계

저작권과 관련 실무 전문가는 이미 한국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물이 서말이라

도 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실무계와 정부 공무원, 학계, 산업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계에 계시는 학위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과 학술적인 내용의 발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저작권법학자대회와 같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특히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등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정도의 단기 심화과정 등의 개설도 좋을 듯 한데 아무래도 참여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